



2026. 7. 7.

국회에산정책처 | 사업평가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남명진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총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작성 | 남명진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지원 | 이연지 경제산업사업평가과 행정실무관
홍채원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02) 6788-3777 | eie@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2026.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6. 6.2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요 약 / 1

I. 개 요 / 1

-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
- 2. 평가의 구성 및 방법 6

II. 혁신제품 조달 제도 및 사업 현황 / 8

- 1. 혁신제품 조달 지원정책 및 관련 법령 8
 - 가. 주요 지원정책 8
 - 나. 관련 법령 19
- 2.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내용 20
 - 가. 혁신제품의 의의 20
 - 나. 혁신제품의 유형 22
 - 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 25
- 3. 혁신제품 조달 사업 현황 39
 - 가. 부처별 사업 결산 39
 - 나. 조달청 소관 사업 결산 42

Ⅲ. 주요 쟁점 분석 / 46

| | |
|----------------------------------|-----|
| 1.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 46 |
| 가. 혁신제품 지정 단계 | 46 |
| 나. 혁신제품 구매 및 사용 단계 | 65 |
| 다. 혁신제품 상용화 및 확산 단계 | 82 |
| 라. 사후관리 및 환류 단계 | 92 |
| 2.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123 |
| 가. 추진주체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 125 |
| 나. AI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강화 필요 | 129 |
|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내실화 필요 | 133 |
| 3.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분석 | 141 |
| 가. 정부 성과관리 개요 | 141 |
| 나.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 분석 | 144 |

Ⅳ. 결론 및 시사점 / 151

요 약

I. 개요

- 정부는 공공조달의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추진 중임
 - 그동안 기술 중소기업은 도전적인 기술혁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기 쉬운 부분 개량에 집중하는 등 기술혁신을 위한 기존 공공조달의 역할에 한계점 노정
 - 이에 정부(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합동)는 캐나다 등 조달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 중임
- 본 보고서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진단계별 성과, 부처별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의 세 축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추진단계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추천·지정단계, 구매·사용단계, 확산단계, 사후관리단계별로 지정·구매 실적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함
 - 부처별 추진체계에서는 기관별 지침의 일관성, AI 관련 사업의 연계추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 성과관리체계에서는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현행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분 | | 주요 분석 내용 |
|------------------------|-------------------------|---|
| I. 보고서 개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구성 및 방법 |
| II. 혁신제품 조달 제도 및 사업 현황 | 혁신제품 조달 지원정책 및 관련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원정책 • 관련법령 |
| |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의 정의 및 유형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 |
| | 혁신제품 조달 사업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사업 결산 총괄 • 조달청 소관 사업 현황 |
| III. 주요 쟁점 분석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단계별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지정단계, 구매·사용 단계, 확산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 분석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실적 등 점검 |
|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추진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혁신제품 지침의 일관성 - AI 관련 사업과 연계성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
|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른 성과달성 여부 점검 • 성과관리체계 분석 |
| IV. 결론 및 시사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현황

1. 혁신제품 개요

- (의의)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의미함
- (유형) 혁신제품은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구분되는데, [유형 1]은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 등 17개 부처가 추천하고, [유형 2]는 조달청에서 추천하며, 두 유형 모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됨
 - [유형 1] 중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각 부처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에서 추천하고,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은 신기술 인증·신제품 인증 제품과 같이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추천함
 - [유형 2]는 혁신시제품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운데 공급자제한형은 기업이 먼저 제안한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매칭하는 방식이고, 수요자제한형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도전과제를 공모하여 해당과제가 선정되면 기업이 사후에 제안하는 방식임

[혁신제품의 유형]

| 구분 (추천자) | 지정 대상 | 지정 |
|------------------|--|--------------|
| 유형 1 (17개 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정부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 NET(신기술 인증) · NEP(신제품 인증)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 유형 2 (조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공급자제한형, 수요자제한형으로 구분 |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주요 추진단계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통상 혁신제품 추천, 혁신제품 심사·지정, 조달청 시범구매 지원,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수요기관의 후속구매의 단계를 거침. 다만 모든 혁신 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주요 추진단계]

| | | | | | |
|----|------------|--------------------|--------|--------|----------------|
| 주체 | 각 부처 및 조달청 |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조달청 | 수요기관 | 수요기관 등 |
| 내용 | 혁신제품 추천 | 혁신제품 심사·지정 | (시범구매) | (시범사용) | 후속구매 등 구매확산 |
| 재원 | - | - | 조달청 예산 | - | 수요기관 자체예산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추천 단계) 각 부처 및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 모집을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공공조달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내부심의회에서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함
- (평가기준) 혁신제품으로 추천·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성(1차 평가) 및 혁신성(2차 평가)을 충족해야 하는데, 공공성은 공공적합성, 개발완성 수준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며, 혁신성은 혁신적합성, 시장성 등을 평가함
- (지정 단계) 각 부처 및 조달청이 추천한 제품은 재정경제부 소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지정기간은 통상 지정 후 3년간이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 (구매 단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의 지정기간 동안 계약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담당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각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각 수요기관은 이를 시범사용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또한 수요기관은 시범구매 후 자체예산으로 후속구매를 하거나 시범구매 없이 자체예산으로 혁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3. 혁신제품 조달 사업 현황

-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유형별 집행액은 [유형 1] 사업이 483억 6,500만원이고, [유형 2] 사업이 606억 2,400만원으로, 총 1,089억 8,900만원이 집행됨
- [유형 1] 제품의 경우 2025년말 기준으로 과기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경찰청, 산림청, 지재처, 기상청, 해경청, 소방청, 국방부, 우주청 등 1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음
 -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혁신제품 조달 관련 예산은 14개 부처에서 483억 6,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부처를 제외하면 대부분 혁신제품 조달 사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타 사업이나 기본경비 등에서 집행하였음

[2025년도 혁신제품 유형 1 사업 결산(17개 부처)]

(단위: 백만원)

| 부처명 | 집행액 | 부처명 | 집행액 | 부처명 | 집행액 |
|-----|--------|-----|--------|-----|--------|
| 과기부 | 300 | 국토부 | 26,531 | 기상청 | 257 |
| 행안부 | 11,084 | 해수부 | - | 해경청 | 2,241 |
| 농림부 | 555 | 중기부 | 460 | 소방청 | 1,585 |
| 산업부 | 1 | 경찰청 | 644 | 국방부 | - |
| 복지부 | 404 | 산림청 | 4,114 | 우주청 | - |
| 기후부 | 123 | 지재처 | 66 | 합계 | 48,365 |

주: 소방청은 2023년부터, 국방부와 우주청은 2025년 12월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조달청은 [유형 2] 제품 추천 및 시범구매 사업 등을 주관하는데, 2025년도에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자본) 사업 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해 490억 8,600만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내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69억 9,4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총 606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도 혁신제품 유형 2 사업 등 결산(조달청)]

(단위: 백만원)

| 구분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자본)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 공공혁신 수요기반 혁신제품(R&D) |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 합계 |
|------|---------------------|----------------|---------------------|-----------------|-----------------------------|--------|
| 사업내용 | 혁신제품 시범구매 |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등 | 연구개발비 등 | 해외실증 애로해소 | 필리핀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ODA) | 5개 사업 |
| 집행액 | 49,086 | 6,994 | 2,968 | 1,070 | 506 | 60,624 |

자료: 조달청

III. 주요 쟁점 분석

1.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가. 지정 단계

- **(지정실적 둔화, 부처간 지정실적 편차)** 정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2021~2022년 정점 이후 지정건수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조달청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유형 1] 제품 지정실적의 합계가 65.4%에 불과하며 부처 간 지정실적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각 참여 부처에서 신규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혁신제품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연도별·유형별 혁신제품 지정 현황]

(단위: 개, %)

| 지정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누계 | (비중) | |
|------------|-----------------------|---------|---------|--------|---------|--------|--------|---------|---------|--------|
| 유형1 | - | 186 | 458 | 414 | 172 | 282 | 303 | 1,815 | (65.4) | |
| 유형2 | 공급자제안형 | 66 | 86 | 132 | 149 | 66 | 79 | 121 | 699 | (25.2) |
| | 수요자제안형 | - | 7 | 29 | 19 | 15 | 24 | 15 | 109 | (3.9) |
| | 스카우터추천형 ¹⁾ | - | - | 4 | 24 | 31 | 37 | 55 | 151 | (5.5) |
| 합계 | 66 | 279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100.0) | |
| (전년대비 증감률) | (-) | (322.7) | (123.3) | (Δ2.7) | (Δ53.1) | (48.6) | (17.1) | - | - | |
| (누계 대비 비중) | (2.4) | (10.1) | (22.5) | (21.8) | (10.2) | (15.2) | (17.8) | (100.0) | - | |

주: 1) 스카우터 추천형은 공급자 제안형에 속하나, 여기서는 별도로 분류하였음

자료: 조달청

□ **(다수 부처 미참여)** [유형 1] 제품은 국가연구개발(R&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다수의 부처가 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되어 연구개발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미참여 기관들은 동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

□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 확충 필요)** 혁신제품 총 2,774개 중 사업 초기에 지정된 841개(30.3%)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일부 부처는 이를 보완할 신규 지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한 혁신제품의 비중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 지정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여 유효한 혁신제품의 풀(pool)을 확충해 나갈 필요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단위: 개, %)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 | | |
|------------|---------------|-----------------|-------------|------------------|
| | 기간만료 | 유효 | 취소 | 계 |
| 2019년 | 50 | 16 | - | 66 |
| 2020년 | 187 | 88 | 4 | 279 |
| 2021년 | 388 | 225 | 10 | 623 |
| 2022년 | 212 | 386 | 8 | 606 |
| 2023년 | 3 | 276 | 5 | 284 |
| 2024년 | 1 | 419 | 2 | 422 |
| 2025년 | - | 494 | - | 494 |
| 합계 (비중) | 841 (30.3) | 1,904 (68.6) | 29 (1.1) | 2,774 (100.0) |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 **(지정기간 연장률 감소)**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차·2차로 나누어 연장하고 있는데, 공공구매 실적 부재로 인하여 1차 연장률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연장 현황(유형 1 + 유형 2)]

(단위: 개, %)

| 지정연도 | 신규지정 (A) | 연장 | | | |
|-----------|-------------|------------------|--------------|------------------|--------------|
| | | 1차 연장 제품 수(C) | 연장률 (C/A) | 2차 연장 제품 수(D) | 연장률 (D/A) |
| 2019~2020 | 345 | 277 | 80.3 | 105 | 30.4 |
| 2021 | 623 | 445 | 71.4 | 225 | 36.1 |
| 2022 | 606 | 385 | 63.5 | - | - |
| 2023 | 284 | - | 0.0 | - | - |
| 2024 | 422 | - | 0.0 | - | - |
| 2025 | 494 | - | 0.0 | - | - |
| 합계 | 2,774 | 1,107 | 39.9 | 330 | 11.9 |

주: 2025년말 기준으로, 2022년 지정 제품의 2차연장 및 2023년 이후 지정 제품의 1차 연장은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0개임

자료: 조달청

- **(소극적인 지정 취소 관리)** 정부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한 혁신제품 중 지정 요건 미흡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29개(1.1%)에 불과하고, 지정 규모가 상당한 부처에서 취소가 전혀 없는 등 사후관리와 퇴출기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정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필요

[연도별 혁신제품 취소 현황]

(단위: 개, %)

| 지정연도 | 신규지정(A) | 취소 | |
|-----------|---------|-------|---------|
| | | 개수(B) | 비율(B/A) |
| 2019~2020 | 345 | 4 | 1.2 |
| 2021 | 623 | 10 | 1.6 |
| 2022 | 606 | 8 | 1.3 |
| 2023 | 284 | 5 | 1.8 |
| 2024 | 422 | 2 | 0.5 |
| 2025 | 494 | - | - |
| 합계 | 2,774 | 29 | 1.1 |

자료: 조달청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적기심의를 통한 지정 소요기간 단축 필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현재 18명이고 연간 회의개최 횟수는 4~6회 정도에 불과하여 편성된 회의경비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참여기업들이 혁신제품 신청 후 지정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불만이 있고, 향후 정부가 혁신제품 지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여 적기 심의를 통해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필요

[연도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 연도 | 계 | 본회의 | | | 분과위원회 | | |
|---------|----|-----|------|------|-------|------|------|
| | | 소계 | 대면회의 | 서면회의 | 소계 | 대면회의 | 서면회의 |
| 2020 | 1 | 1 | 1 | - | - | - | - |
| 2021 | 6 | 1 | 1 | - | 5 | 5 | - |
| 2022 | 4 | 2 | 2 | - | 2 | 2 | - |
| 2023 | 6 | - | - | - | 6 | 1 | 5 |
| 2024 | 5 | 4 | 3 | 1 | 1 | 1 | - |
| 2025 | 6 | 5 | 3 | 2 | 1 | - | 1 |
| 2026.5. | 1 | 1 | 1 | - | - | - | - |
| 합계 | 29 | 14 | 11 | 3 | 15 | 9 | 6 |

자료: 재정경제부

나. 구매 및 사용 단계

- **(적정수준의 시범구매 체결률 설정 필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2,774개 중 시범구매를 실시한 제품은 1,084개로 시범구매 체결률이 39.1%로 나타났는데, 조달청은 이러한 시범구매 체결률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범구매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범구매 체결률과 그에 따른 투입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 나갈 필요

[혁신제품 지정연도별 시범구매 실적(2019~2025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혁신제품 지정 수 | | 66 | 279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 시범 구매 | 계약건수 (제품 수) | 58 | 151 | 299 | 297 | 119 | 152 | 8 | 1,084 |
| | 금액 | 8,115 | 54,594 | 79,060 | 64,808 | 31,805 | 33,611 | 1,814 | 273,806 |

주: 1. 계약 건수와 금액은 혁신제품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는데, 해당연도에 지정된 제품이 2019~2025년(7년간) 계약된 건수와 금액을 나타낸 것임. 이에 따라 계약건수와 금액은 연도 단위와 일치하지 않음

2. 1개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했다라도 계약건수(제품 수)는 1개로 계산하여 중복을 제거함

자료: 조달청

-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율 향상 필요)** 시범구매를 실시한 혁신제품 중 수요기관의 후속구매로 이어진 제품의 비중이 69.3%로 나타났는데, 후속구매율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후속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후속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혁신제품 시범구매 이후 후속구매 계약 실적]

(단위: 개, 억원, %)

| 구분 | 시범구매 (‘19년~’24년) | |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19년~’25년 12월) | | | | |
|------|---------------------|--------|--------------------------------|---------|--------|---------|-------|
| | 제품수(A) | 구매액(B) | 제품수(C) | 비율(C/A) | 구매액(D) | 비율(D/B) | |
| 유형 1 | 428 | 995 | 301 | 70.3 | 5,073 | 509.8 | |
| 유형 2 | 공급자 | 418 | 1,044 | 283 | 67.7 | 5,543 | 530.9 |
| | 수요자 | 61 | 171 | 45 | 73.8 | 1,566 | 915.8 |
| 계 | 907 | 2,209 | 629 | 69.3 | 12,182 | 551.5 | |

주: 2019~2024년까지 시범구매가 실시된 혁신제품에 대한 2025년말 기준 후속구매 실적임

자료: 조달청

- **(내실 있는 지정을 통한 후속구매율 제고 필요)** 후속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속구매 단계에서의 사후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과 각 부처는 후속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제품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지정단계에서 진입통제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미실시 사유]

(단위: 개, %)

| 구분 | 계 | 추가 구매 예산 부족 | 시범구매를 통한 수요 충족 | 제품 가격 만족도 부족 | 제품 성능 만족도 부족 | 제품 유지관리 만족도 부족 | 기타 |
|------|-------|-------------|----------------|--------------|--------------|----------------|-----|
| 제품 수 | 330 | 143 | 85 | 37 | 26 | 19 | 20 |
| 비율 | 100.0 | 43.3 | 25.8 | 11.2 | 7.9 | 5.8 | 6.0 |

주: 2025.12.31.기준임
자료: 조달청

- **(공공구매 실적이 전무한 제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774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었으나 공공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이 892개(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구매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

[혁신제품 지정 후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유형별)]

(단위: 개, %)

| 유형 | |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A) | 구매실적이 있는 제품 수(B) |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 수 | 구매율 (B/A) |
|-----|---------|-----------------|------------------|---------------|-----------|
| 유형1 | | 1,815 | 1,165 | 650 | 64.2 |
| 유형2 | 공급자 제안형 | 850 | 636 | 214 | 74.8 |
| | 수요자 제안형 | 109 | 81 | 28 | 74.3 |
| 합계 | | 2,774 | 1,882 | 892 | 67.8 |

주: 1. 2019~2025년 누계 기준임
2. 시범구매 또는 본구매 중 1회 이상 구매한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자료: 조달청

- **(구매목표제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총 구매목표액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달성 여부를 기관별로 보면 절반 정도의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관 유형별 편차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달성 기관을 중심으로 구매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달성기관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 대상기관 | 달성기관 | 달성률 | 대상기관 | 달성기관 | 달성률 | 대상기관 | 달성기관 | 달성률 |
| 중앙부처 | 47 | 26 | 55.3 | 47 | 27 | 57.4 | 48 | 27 | 56.3 |
| 지방자치단체 | 294 | 227 | 77.2 | 295 | 188 | 63.7 | 295 | 201 | 68.1 |
| 공공기관 | 356 | 125 | 35.1 | 356 | 126 | 35.4 | 353 | 119 | 33.7 |
| 지방공기업 | 151 | 107 | 70.9 | 158 | 126 | 79.7 | 158 | 120 | 75.9 |
| 계 | 848 | 485 | 57.2 | 856 | 467 | 54.6 | 854 | 467 | 54.7 |

자료: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상용화 및 확산 단계

- **(공공성 강화 필요)** 혁신제품은 지정 단계에서 공공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데, 공공성이 우수한 제품들도 있지만 일부 제품들은 실증 결과 공공성이 미흡하여 공공구매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따라서 조달청과 각 부처는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
- **(혁신성 강화 필요)** 기 지정된 혁신제품 중에는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들이 있는 반면, 실제 실증 결과 성능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활용범위가 특정 현장에 한정되는 등의 사유로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조달청과 각 부처는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혁신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 혁신제품 지정 시 혁신성 심사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라. 사후관리 및 환류 단계

-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및 미제출)**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한 기관은 시범사용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결과보고서가 적기 공개되어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건, %)

| 구분 ¹⁾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결과보고서 제출대상(a) | 16 | 307 | 96 | 391 | 466 | 464 | 474 | 2,214 |
| 기한 내 제출(b) | 16 | 307 | 96 | 391 | 455 | 367 | 323 | 1,955 |
| 기한 후 제출 | - | - | - | - | 11 | 97 | 133 | 241 |
| 미제출 | - | - | - | - | - | - | 18 | 18 |
| 기한 내 제출 비율(b/a) | 100.0 | 100.0 | 100.0 | 100.0 | 97.6 | 79.1 | 68.1 | 88.3 |

주: 1) 시범사용결과보고서 제출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함

1. 2025년 12월말 기준

2.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다수일 수 있으므로 제품수와 시범사용 기관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조달청

- **(혁신제품 지정 유지 요건 관리 강화 필요)** 일부 부처는 지정된 혁신제품이 특허권 소멸·이전·양도 또는 해당업체의 휴업·폐업 등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해도 이에 대한 점검이 부재하여,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의계약 납품 등 혁신제품 자격을 상당기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혁신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기술권리 유지여부, 기업존속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을 요청할 필요
- **(혁신제품 가격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조달청은 공급업체가 혁신장터에 등록된 혁신제품 희망가격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별도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다수 공급자계약 제품의 경우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향후 혁신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 구매한 혁신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공공부문에 기 보급된 일부 혁신제품은 잦은 고장,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투입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는바, 혁신제품 구매 이후 사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또한 조달청의 시범구매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으므로, 조달청은 이러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필요

[시범구매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 연도 | 실태점검 결과 |
|------|---|
| 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여부) 사용 335건(86.3%), 미사용 53건(13.7%) •(평가등급) 우수 305건(78.6%), 보통 72건(18.6%), 미흡 11건(2.8%) |
| 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여부) 사용 136건(92.5%), 미사용 10건(6.8%), 점검불가¹⁾ 1건(0.7%) •(평가등급) 우수 123건(84.2%), 보통 23건(15.8%), 미흡 0건(0%) |

주: 1) 해외 시범사업 건입(KOTRA)
 자료: 조달청

- **(혁신조달 참여기업의 성장효과 검증 필요)** 공공혁신조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공공부문 납품과 기술혁신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기존 연구들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조건부로 효과가 존재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효과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조달청은 2025년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기업의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연구는 연구주체, 데이터, 연구방법, 연구범위 등에 있어 한계점이 있어 그 결과를 동 사업의 정책효과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달청은 향후 체계적인 추가연구를 통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

2. 범부처 추진체계 분석

- **(기관별 혁신제품 지칭 일관성 제고 필요)** [유형 1]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 기관에서 기존 상용제품(우수조달물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별 혁신제품 지칭 등에 혁신제품 지정제의 요건이 부재하기 때문인바, 각 참여기관은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부처별 지칭 정비 현황을 점검할 필요
- **(AI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강화 필요)** 2026년부터 10개 부처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 중 공공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필요

[2026년 부처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

(단위: 억원, 개)

| 부처명 | 예산액 | 과제 수 | 부처명 | 예산액 | 과제 수 |
|-------|-------|------|------|-----|------|
| 산업부 | 1,300 | 50 | 농식품부 | 400 | 25 |
| 중기부 | 645 | 36 | 해수부 | 250 | 20 |
| 과기정통부 | 405 | 17 | 기후부 | 305 | 17 |
| 복지부 | 330 | 26 | 국방부 | 350 | 20 |
| 식약처 | 150 | 10 | 국토부 | 600 | 25 |

자료: 관계부처 합동,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 202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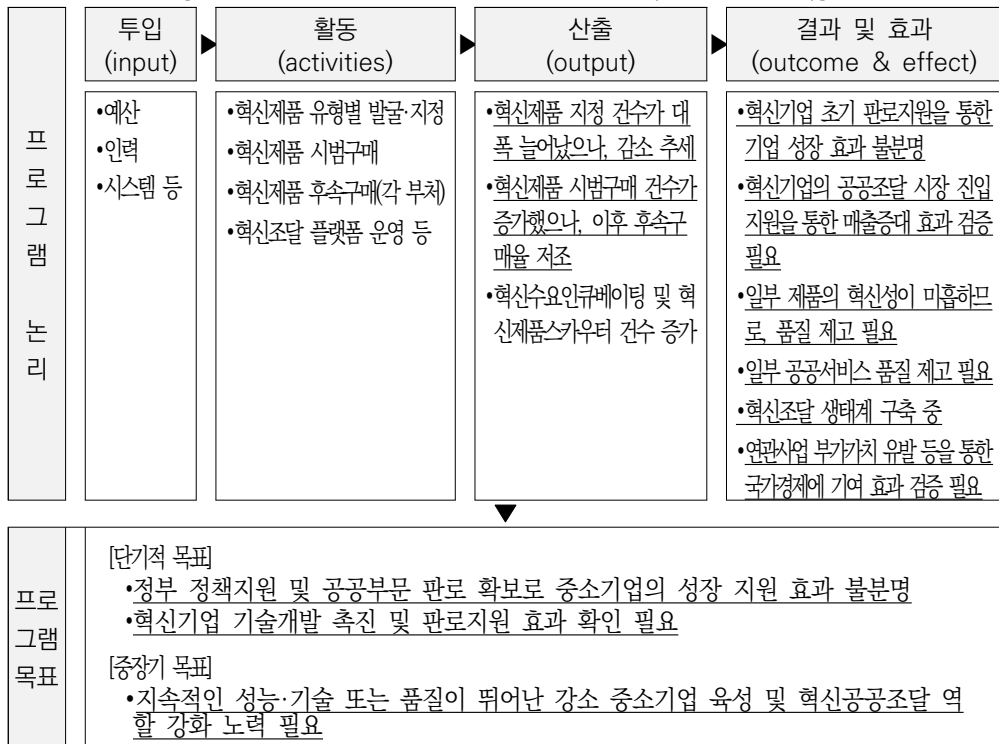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내실화 필요)** 한국조달연구원은 법정 전문기관으로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 구매, 교육·홍보,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혁신제품 지정 규모의 확대, AX-Sprint 사업과의 연계 본격화,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동 연구원이 증가하는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조직·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필요

- 아울러 한국조달연구원은 2025년부터는 법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최소 3년간 독점적 업무수행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갈 필요

3. 성과관리체계 분석

- (프로그램 논리모형상 정책목표 달성 노력 필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운영결과를 논리모형에 대입한 결과, 투입·활동은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나 산출 단계에서 혁신제품 지정실적이 둔화되고, 시범구매에 이은 후속구매 실적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결과·효과 단계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조달청 조달사업운영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실제 운영결과)]



주: 1. 밑줄 친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성과가 미흡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조달청은 성과계획서상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지표로 ‘혁신제품 매출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 지표는 혁신제품 지정건수 및 각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순수한 정책의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를 보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혁신제품 조달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025목표치 산출근거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혁신제품 매출액 (억원) | 목표 | 2,452 | 4,285 | 7,394 | 10,000 | 12,000 | '24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 조달청 통계 시스템 및 수기 실적 |
| | 실적 | 4,157 | 7,394 | 9,755 | 10,447 | - | | |
| | 달성도 | 169.5 | 172.6 | 131.9 | 104.5 | - | | |

자료: 조달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조달청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논리모형상 단순 산출지표(output)의 달성여부 보다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포착할 수 있는 결과지표(outcome, effect)로 개선할 필요
-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혁신제품 지정 건수를 누적 5,000개까지 달성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을 2조원 이상(2조원 + α) 확대할 계획임. 정부는 향후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

IV. 결론 및 시사점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후속구매를 거쳐 공공 및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데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각 추진단계별 성과, 범부처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혁신제품의 안정적·지속적 발굴과 함께 적기 지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정 단계의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
 - 각 참여 부처는 신규 지정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고 기 지정 제품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효한 혁신제품 풀(pool)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
 - 둘째, 시범구매에서 후속구매로의 전환율을 제고하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
 - 시범구매 체결률은 39.1%, 후속구매 전환율은 69.3%에 그치고 공공구매 실적 이 전무한 제품도 32.2%에 달하는바, 조달청과 각 부처는 이러한 구매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
 - 구매목표제가 총액기준으로는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대상기관별로는 절반 정도가 미달성 상태이므로 기관별로 달성도를 모니터링할 필요
 - 셋째, 혁신제품의 공공성·혁신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투입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
 - 혁신제품 실증 결과 공공성 또는 혁신성이 미흡하여 시범구매 결과 실패로 판정되거나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혁신제품 지정기준을 조정할 필요
 -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기한 후 제출·미제출, 특허권 소멸·휴폐업 등에 따른 지정 취소 등 미조치, 공공부문 보급 후 방치 사례, 혁신장터 등록가격에 대한 적정성 점검 부재 등의 문제도 개선할 필요

- 넷째,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
 - [유형 1]에서 기존 우수조달물품이 혁신제품으로 중복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바, 조달청과 각 부처는 지정 제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정비할 필요
 - 현행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매출액’은 산출지표(output)로서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조달청은 궁극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outcome)를 추가·보완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한 눈에 보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 | | | |
|---|--|---|--|
| 지정 |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건수] (단위: 건) <p>자료: 조달청</p> | [유형별 지정 비중] (2019~2025년) <p>자료: 조달청</p> | [지정 후 1차 연장률] (2019~2022년 지정 제품) <p>자료: 조달청</p> |
| | [지정 후 시범구매율] (2019~2025년) <p>자료: 조달청</p> |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율] (2019~2024년 시범구매 제품) <p>자료: 조달청</p> | [구매목표제 달성률] (2025년 기준) <p>자료: 조달청</p> |
| 구 매 | [공공성 우수·미흡 사례]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조달청) 포터블 엑스레이(중기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통과형 공기정화시스템 (조달청) 고속철도 분석시스템 (국토부) <p>자료: 혁신장터 제품정보 등</p> | [혁신성 우수·미흡 사례]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식 자가세정 보안용 카메라 (과기부)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용 보조기기 Dot Pad (조달청)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조달청) 수중 예인 케이블 (해수부) <p>자료: 혁신장터 제품정보 등</p> |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 (2019~2025년) <p>자료: 조달청</p> |
| |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2019~2025년) <p>자료: 조달청</p> | [사후관리 미흡사례] 사이클론 집진 방식의 신발 바닥 청소기 <p>자료: 제조업체 누리집 등</p> | [등록가격 모니터링 필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보안인정기술, 한글OCR, AIOCR문자추출, 1Server 99,000,000 원 <p>자료: 혁신장터</p> |
| 성 과 평 가 (총 합) | [지정 실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건수 둔화 - ('21)623개 → ('25)494개, 21%p ↓ 기간연장률 감소 - ('20)80.3% → ('22)63.5%, 16.8%p ↓ | [구매율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구매율 미흡 - 2019~2024년 지정 제품 : 69.3% 기관별 구매목표제 미달성 - 2025년 기준 54.7%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제품 공공성·혁신성 미흡 -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함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필요 - 부처별 혁신제품 지침 일관성 제고 필요 SI 사업 간 유기적 연계추진 필요 |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을 실시한다.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민간부문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공조달의 목적은 조달주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는데 있다.¹⁾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공조달 구매액은 2019년 160조원에서 2024년 225조원²⁾으로 약 1.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정부 총지출 대비 34.2%,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공공조달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019년 106조원에서 2024년 142조원으로 증가하여, 공공조달 구매액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의 핵심 판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연도별 공공조달 규모]

(단위: 조원,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공공조달 구매액(a) ¹⁾ | 160 | 176 | 184 | 196 | 209 | 225 |
|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 106 | 115 | 119 | 125 | 135 | 142 |
| 정부 총지출(b) | 470 | 512 | 558 | 608 | 639 | 657 |
| a/b | 34.0 | 34.4 | 33.0 | 32.2 | 32.7 | 34.2 |
| GDP(c) | 2,041 | 2,058 | 2,222 | 2,324 | 2,409 | 2,557 |
| a/c | 7.8 | 8.6 | 8.3 | 8.4 | 8.7 | 8.8 |

주: 1) 공공조달 구매액은 「공공조달통계연보」에서 공공조달 계약규모로 표현하며, 이는 나라장터 계약 건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별도 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건을 합한 것임

1.2025년도 통계는 최종 산출되지 아니하여, 2024년도까지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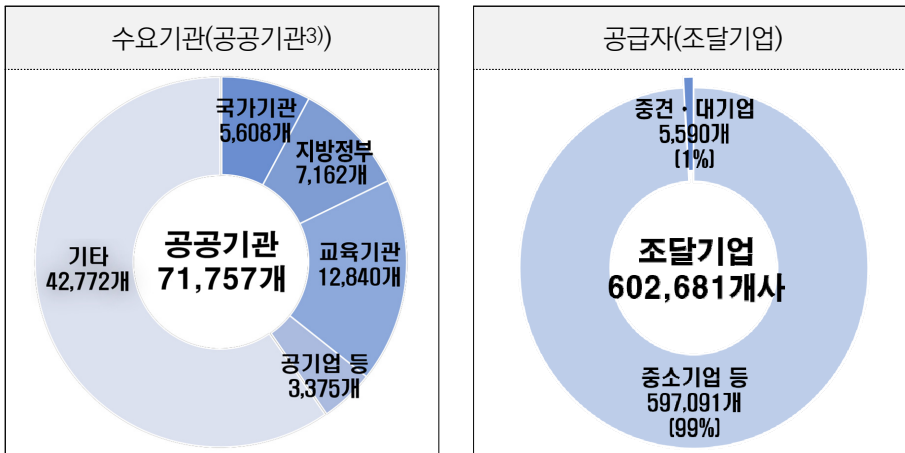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분야별 주제검색」, 2026. 3. 26. 접속

2) 2024년 기준으로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총 225조원이며, 이 중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한 규모는 145조원(64.5%)이고, 방위사업청,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별도 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80조원(35.5%)이다.

또한 공공조달 시장 참여주체를 살펴보면, 2024년말 기준 조달 수요기관은 총 71,757개로 이 중 국가기관이 5,608개, 지방정부 7,162개, 교육기관 12,840개, 공기업 등 3,375개, 기타 42,772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달기업은 총 602,681개사이며, 이 중 중소기업 등이 597,091개사로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중견·대기업은 5,590개사(1%)이다.

[공공조달 참여 주체]



주: 1. 2024년말 기준
 2. 위 그래프의 수요기관 중 '기타'가 42,772개인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농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가 전체 GDP의 약 9%에 육박하고 수요기관 및 조달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공공조달 정책의 방향성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과 국민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3)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다.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와 같은 공공조달의 규모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에 필요한 물품, 용역, 시설 등의 자원을 적시 확보하고자 하는 1차적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조달에 투입되는 재원은 주로 세금을 통해 조성되므로 국가, 지자체 등은 공공조달에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여 양질의 제품이나 시설 등을 조달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공조달은 이러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경제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조달청은 우수물품제도를 통해 기술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여성 기업 등이 제조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경제·사회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공공조달은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성,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을 위한 합법성 등에 주로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도 정부는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조달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기관 등은 구매목표비율 달성이 쉬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기술 중소기업은 도전적인 기술혁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증을 취득하기 쉬운 부분 개량에 집중하는 등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에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구 기획재정부, 조달청 관계부처 합동)는 캐나다 등 조달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9년에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시범도입하였다. 정부는 공공조달의 대규모 공공 구매력을 산업, 혁신 등 국가 주요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당시 발표된 동 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혁신성 평가를 통해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하고, ②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및 범부처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③ 도전적인 수요기반 혁신제품 발굴, ④ 혁신지향 조달행정에 대한 징계 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이다.

한편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예산 규모와 제도적 외연은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이 주축이 되어 각 부처별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 사업인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경우 구매액이 2019년 23억원에서 2025년 529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

으며,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 건수도 2019년 66건에서 2025년말 기준 누적 2,774건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혁신제품이 확산되었고, 공공조달이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실적(연도별 누계)]

(단위: 개)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 ¹⁾ | 66 | 345 | 968 | 1,574 | 1,858 | 2,280 | 2,774 |

주: 1) 각 연도 말 기준 누계임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고,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후속구매를 거쳐 공공 및 민간, 나아가 해외시장까지 확산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제품을 사용한 이후 자체 재원으로 후속구매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혁신기업이 동 사업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향상되고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혁신제품이 혁신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추진체계 측면에서 보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조달청이 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17개 부처가 혁신제품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는 다부처 추진사업이다.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을 비롯한 각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이 필수적이나, 각 부처의 혁

신제품 추천 실적이 미흡한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협업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면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혁신제품 매출액'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혁신제품 구매 확산을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 국가경제 기여,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성과지표는 단순 산출지표(output)에 불과하여 성과(outcome) 또는 효과(effect) 수준의 지표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혁신제품 조달 제도는 2019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으로 출범한 이래 올해로 도입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건수가 누적 2,774건에 이르고 있는데, 혁신제품의 최대 지정기간이 6년⁴⁾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초기에 지정된 혁신제품들은 이미 지정기간이 종료되어 제도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혁신제품 조달 사업(유형 1 + 유형 2)의 집행액이 2019년도에 약 29억원으로 시작하여 2025년도에는 약 1,090억원에 이르러 약 38배 확대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혁신제품을 누적 5,000개까지 지정하고, 공공조달구매실적도 2조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지정건수 및 사업비가 양적으로 확대된 만큼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진 단계별 성과, 범부처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의 세 축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동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4)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나, 연장요건을 갖출 경우 최대 3년(1년 +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8년차에 접어든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현황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특히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온 과정에서 추진단계별 성과,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7개 부처 및 한국조달연구원 등에게 자료요청을 하였고, 조달청 관계자 등과 대면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존 보고서, 정부·공공기관 연구용역보고서 및 관련 학술 자료 등을 대상으로 문헌조사를 진행하였다.

보고서 제1장에서는 평가의 배경 및 목적, 평가의 구성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연혁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혁신제품의 정의 및 유형,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각 부처의 혁신제품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주요 쟁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추진단계별로 살펴 보면, 추천·지정단계에서 혁신제품 추천·지정 실적, 구매·사용 단계에서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 실적, 상용화·확산단계에서의 제품의 공공성·혁신성 충족 여부,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혁신제품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추진체계 분석에서는 현행 부처별 추진체계를 살펴보고, 기관별 혁신제품 지침 일관성, AI 관련 사업과 연계성,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체계 분석에서는 현행 성과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성과관리체계 분석을 통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의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분 | | 주요 분석 내용 |
|------------------------|--------------------------|--|
| I. 보고서 개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평가의 구성 및 방법 |
| II. 혁신제품 조달 제도 및 사업 현황 | 혁신제품 조달 지원정책 및 관련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지원정책 • 관련법령 |
| |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의 정의 및 유형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 |
| | 혁신제품 조달 사업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사업 결산 총괄 • 조달청 소관 사업 현황 |
| III. 주요 쟁점 분석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 단계별 성과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단계별 성과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지정단계 / 구매·사용 단계 / 상용화·확산 단계 / 사후관리 단계별 분석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실적 등 점검 |
|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 체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부처 추진체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혁신제품 지침의 일관성 - AI 관련 사업과 연계성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
| |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 관리체계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따른 성과달성 점검 • 성과관리체계 분석 |
| IV. 결론 및 시사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혁신제품 조달 지원정책 및 관련 법령

가. 주요 지원정책

(1) 공공조달 혁신 추진경과

공공조달 혁신 정책은 2015년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2017년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2018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잇따라 발표되면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R&D) 결과물 등을 공공구매에 연계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혁신조달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 예산에 혁신제품 조달 시범사업을 12억원 규모로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24억원으로 증액하였다. 같은 해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관계부처합동)이 발표되면서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2020년에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정규사업으로 전환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이 29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제품에서 혁신제품으로 제도가 정식화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21년 8월에는 혁신조달전문지원단 운영이 시작되고 스카우터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2년 12월에는 2019년 발표를 보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관계부처합동)이 발표되었다. 2023년에는 조달청에 혁신조달 R&D 사업이 신설되고 한국조달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1월에는 혁신제품지원센터가 법정화되었다.

최근에는 사업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데, 2025년 1월 혁신제품 임차·해외실증 사업이 신규편성되었고, 6월에는 공공혁신조달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35번)로 채택되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공조달 개혁방안」(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되어 혁신제품 누적 5,000개 확보, 공공구매 2.5조원 달성 등의 중장기 목표가 제시되었다.

[공공조달 혁신 관련 주요 추진경과]

- '15.09. :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17.12. :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18.11.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19.07.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혁신제품 조달 시범사업 도입(12억→추경 24억)
- '20.10. : 정규사업 전환 및 추경 증액(293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혁신시제품→혁신제품 제도 정식화, 조달정책심의
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출범)
- '21.08. : 혁신조달전문지원단 운영 시작, 스카우터 제도 도입
- **'22.12. : 공공조달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 '23.01. : R&D 사업 신규 편성, 한국조달연구원 전문기관 지정
- '24.01. : 혁신제품 지원센터 법정화
- '25.01. : 혁신제품 입차·해외실증 사업 신규 편성
- **'25.06. : 현 정부 국정과제(35번)로 혁신조달 채택**
- **'25.11. : 공공조달 개혁방안(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및 각 연도 정부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에서는 정부가 2019년, 2022년, 202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각 연도 혁신조달 지원정책과 2025년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혁신조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2)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2019. 7.)

2019년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 전에도 2015년 9월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2017년 12월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2018년 11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적이 있으나, 실제로 혁신제품 제도가 도입된 계기가 된 것은 20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었다.

2019년 정부는 혁신조달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기존 공공조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공공조달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구매목표비율 달성이 쉬운 제품을 선호하였고, 중소기업도 인증 취득이 용이한 부분개량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도전적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기능이 미흡하였다. 공공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정책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연구개발 성과가 실증이나 시범구매로 이어지는 경로가 부족하였으며, 수요기관과 공급기업 간 정보 비대칭이 크고 부처 간 협업체계도 미흡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합니다"를 비전으로 하여 4대 추진전략 아래 10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전략으로 기존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성을 강화하고,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며, 국가 R&D 결과물(패스트트랙 I) 및 상용화 전 시제품(패스트트랙 II)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전략으로 수요·공급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하고, 범부처 혁신조달 협업체계(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③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전략으로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도전적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경쟁적 대화)을 활성화하며, 맞춤형 R&D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④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전략으로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징계면책을 법제화하고,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 개요(2019.7.)]

비전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합니다!

| 4대 추진전략 | 10개 과제 |
|---|--|
| <p>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p> | <p>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 (기재부·중기부, 조달청)</p> <p>② 혁신성 평가를 통한 구매 활성화 (기재부·산업부·인사처·조달청)</p> <p>③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기재부·조달청, 산업부)</p> |
| <p>국가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p> | <p>①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 (조달청, 중기부·과기부·특허청)</p> <p>② 범부처 및 민관 합동 혁신조달 협업체계 마련 (기재부·조달청, 관계부처)</p> |
| <p>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p> | <p>① 도전적 수요 기반의 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 (기재부·산업부·과기부, 조달청 등)</p> <p>②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활성화 (기재부·조달청·행안부)</p> <p>③ 맞춤형 R&D 지원 강화 (산업부·과기부·행안부·중기부)</p> |
| <p>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p> | <p>① 혁신지향 조달행정 징계면책 및 인센티브 강화 (기재부·인사처·행안부·조달청, 감사원)</p> <p>② 적극 조달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기재부·행안부·조달청·특허청, 인사처)</p> |

자료: 관계부처 합동,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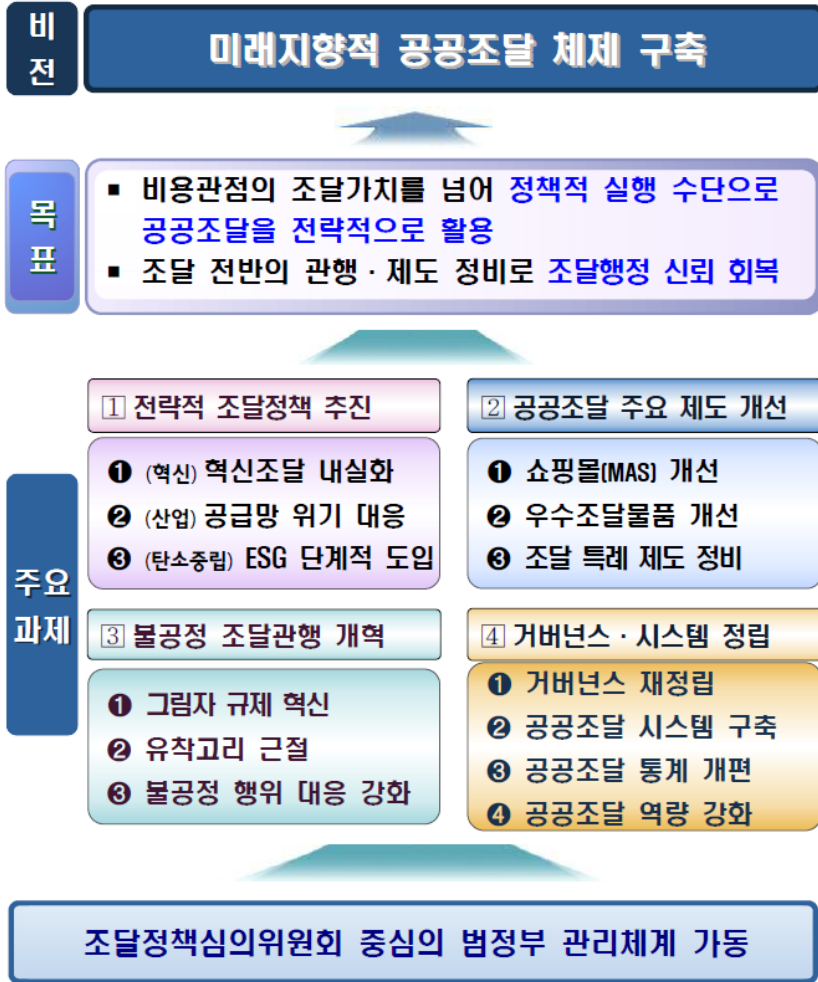
(3) 공공조달 혁신방안 (2022.12.)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2022년 12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조달 지원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선진국이 공공조달을 국가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적 조달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한 혁신조달 제도의 실질적 체감 효과가 미흡한 등 전략적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정부는 조달행정의 혁신·전략적 활용을 통해 공공조달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목표 달성과 재정투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으로 혁신조달의 내실화, 공급망 위기 대응, ESG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② 공공조달 주요 제도 개선으로 조달 쇼핑몰 개선, 우수조달 물품 개선, 조달 특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③ 불공정 조달관행 개혁으로 그림자 규제 혁신, 유착고리 근절,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를 추진한다. ④ 거버넌스·시스템 정립으로 거버넌스 재정립,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공공조달 통계 개편, 공공조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과제의 추진 기반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관리체계 가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19년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신설을 추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범정부 조달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 혁신방안」, 2022.12.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4대 주요 과제 중 ‘전략적 조달정책 추진’의 첫 번째 세부과제인 ‘혁신조달 내실화’에서는 혁신제품 지정, 평가방식, 지원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① 혁신제품 지정체계를 단순화하였다. 기존에는 패스트트랙 I(국가 R&D 결과물, 부처 심사), 패스트트랙 II(상용화 전 시제품, 조달청 심사), 패스트트랙 III(기존 인증제·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부처→조달청 2차 심사)의 3개 트랙으로 운영되던 지정체계를 유형 I(부처발굴형, 부처·조달청 심사)과 유형 II(시제품형, 조달청 심사)

의 2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은 제품(수의·우선구매 기적용 등 8종)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정 후 혁신장터 등록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심사 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하여 수요 기관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생명·안전 등 정부 역점 정책과 연계 가능한 제품은 유형 I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였다.

[혁신조달 지정체계(유형) 변경]

| 변경 전(2019~2022) | | 변경 후(2023~) | |
|-----------------|---|-------------------------|----------------------|
| FT I | 국가 R&D 결과물(부처 심사) | 유형 1 (종전 FT I + III) | 부처발굴형 (부처·조달청 심사) |
| FT II | 상용화 전 시제품(조달청 심사) | | 시제품형 (조달청 심사) |
| FT III | 기존 인증제, 주요정책 연계형 제품 등(1차 부처 → 2차 (구)기재부·조달청 심사) | 유형 2 (종전 FT II) | |

주: FT은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의미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 혁신방안」, 2022.12.

②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혁신구매 목표제가 물품구매액 대비 일정 비율의 정량적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 성장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질적 성과평가가 미흡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구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혁신지향 공공구매 활동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③ 혁신제품 지정 기간 연장 등 지원방식을 개선하였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검토, 서비스 개선 효과·지원 필요성·성장 가능성을 종합 고려한 '전략적 시범구매제' 운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단가계약 방식의 판매 지원, 해외조달시장 실증기회 제공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4)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35번)

현 정부는 국정과제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의 네 번째 실천과제로 '글로벌 시장 개척과 지속성장의 교두보, 공공조달 혁신'을 설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동 주관, 전 부처가 협조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있다. 동 과제는 혁신제품 조달과 관련하여 크게 여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①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기관을 약 50% 확대하여 공공조달시장 규모를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혁신제품 구매를 반영한다.

②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의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외산 위장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한다.

③ 공공기관을 통해 검증된 제품의 민수시장 전환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④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⑤ AI 융복합·재난안전·탈탄소 전환 등 미래 대비 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제품 발굴·지정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지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19~2024년간 연평균 380개이던 지정 건수를 연 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규제특례 실증제품 및 정부 R&D 결과물의 적극 유입, 민간투자 연계 혁신제품 지정 등을 추진한다.

⑥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구매면책제도 활용을 통한 구매담당자 부담 완화, 조달청 시범구매 규모 확대(2025년 389억원 → 2030년 1,800억원),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관별 구매목표 설정(2025년 기준 중앙 1.0%, 지자체 1.5%, 공공기관 1.7%, 지방공기업 1.2%), 혁신제품 평가·사후관리 체계 강화 및 스케일업 R&D 지원, 해외실증 사업(2025년 140억원 → 2030년 350억원)을 통한 수출기업화 촉진 등을 추진한다.

[‘35-4. 글로벌 시장 개척과 지속성장의 교두보, 공공조달 혁신’의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목표 |
|-------|--|--|
| 시장확대 |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기관 약 50% 확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 | 공공조달시장 130→170조원 |
| 시장혁신 |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지정기준 강화·성과 모니터링, 외산 위장 등 교란행위 차단 | 직접생산 실태조사원 500→1,000명, AI 모니터링 구축 |
| 新시장진출 | 공공→민간 전환형 사업화 지원 도입,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 |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
| 정책기반 | 공공구매종합 정보망 고도화, 「판로지원법」 전면 개정 | 데이터 기반 수요 발굴·매칭 |
| 혁신제품 | AI 융복합·재난안전·탈탄소 등 미래 대비 제품 중심 발굴·지정 확대, 규제특례 실증제품·R&D 결과물 유입, 민간투자 연계 지정 | '19~'24년 누적 2,280개(연 380개) → '30년 5,000개(연 500개) |
| 혁신조달 | 구매면책제도 활용, 시범구매 규모 확대, 구매목표제 운영, 평가·사후관리 강화, 해외실증 사업 확대 | '30년까지 구매실적 2조원+ α |

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35-4번의 혁신조달 관련 내용을 요약

(5) 공공조달 개혁방안 (2025. 11.)

정부는 2019년, 2022년에 혁신조달 지원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혁신조달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입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대폭 확대이다. 제품 발굴 측면에서는 AI·기후테크 등 테마형 발굴행사 개최, 스카우터의 전문기관 확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의 지정심사 생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혁신제품 누적 5,000개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매 확산 측면에서는 의무구매 기관을 현행 846개에서 1,200개로 확대하고,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하며,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을 2025년 529억원에서 2026년 839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구매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②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혁신기업의 스케일업(scale up)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성능 개선 피드백을 제공하고, R&D 지원을 2025년 30억원에서 2026년 100억원으로 확대하며, 성능 미흡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해외 진출 측면에서는 해외실증사업 예산을 2025년 140억원에서 2026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ODA 사업과 혁신제품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

③ AI 주도권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을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 AI 로봇 서비스 등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공급하고, AI 적용 제품에 대한 구매면책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체계 전문화와 조달행정 전반의 AI 전환(공공AX5)⁵⁾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5) AX(AI+X, AI Transformation)란 특정분야에 한정된 인공지능 활용을 넘어,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의미한다.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2025.11.19.)]

| 구분 | | 주요 내용 | 목표 |
|--|--------------|---|--|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 제품발굴 | AI·기후테크 등 테마형 혁신제품 발굴행사 개최 | 2026~2027년, 연 3회 |
| | | 스카우터를 전문기관까지 확대, 지역 유망기업 추천 강화 | - |
| |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 지정심사 생략, R&D 결과물·민간투자 유치 제품 적극 유입 | 2030년 누적 5,000개 (2024년 2,280개) |
| | 구매확산 | 의무구매 기관 확대 | 846개 → 1,200개 |
| | | 구매 목표 비율 상향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설정) | 중앙 1.0%, 지방 1.5%, 공공기관 1.7%, 지방공기업 1.2% |
| | |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 확대, 구매면책 활용 | 529억원('25)→839억원('26) |
|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 | 성장지원 | 혁신제품 평가·사후관리 강화, 성능 개선 피드백 및 R&D 지원 확대 | 30억원('25)→100억원('26) |
| | | 성능 미흡 제품에 전문가 컨설팅 통한 재 도전 기회 부여 | - |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정~사후 관리~후속구매 통합 지원) | - |
| | 글로벌 도약 | 해외실증 사업 확대, ODA 연계 활성화 | 140억원('25)→200억원('26) |
| 공공구매력 활용 시산업 육성 | 진입·판로 |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AI 로봇 등 나라장터 등록, AI 제품 입찰 우대·수의 계약, 구매면책 도입 추진 | - |
| | 계약·평가 전문화 | 기술능력 중심 평가(최대 90점), AI 전문 평가제 도입, 우수제품 지정심사 AI 분야 신설 | - |
| | 조달행정 AX |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 수립 | - |
| 가격조사, 공사원가 검토, 제안서 평가, 분쟁대응 등 10개 분야 AI 도입 |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 개혁방안」(2025.11.19.)의 혁신조달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

나. 관련 법령

혁신제품 조달은 국가기관이 민간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조달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조달 물품과 마찬가지로 법령들이 정하는 계약 원칙과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⁶⁾

먼저 혁신제품 조달 제도와 관련된 법률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등 3개가 있고,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공조달의 기본 틀을 규율하고 있다. 주요 소관부처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이다.

행정규칙으로는 재정경제부 훈령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이 혁신제품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신청·지정·구매·지정취소, 지원센터, 지원체계, 혁신제품 플랫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침으로는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과 각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 지침」이 있으며,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이 있다.

[혁신제품 조달 관련 주요 법령 등]

| 구분 | 명칭 | 주요 소관부처 |
|----|--------------------------------|----------|
|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재경부, 조달청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재경부, 조달청 |
| |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행안부, 조달청 |
| 훈령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에 관한 규정 | 재경부 |
| 고시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조달청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 조달청 |
| | 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 조달청 |
| | 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 조달청 |
| 지침 |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
| | 혁신제품 지정 지침 | 각 부처 |
| 공고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 5.

6) 예를 들어, 혁신제품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지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계약금액 산정·대금 지급 시에도 동 법령체계를 따라야 한다.

가. 혁신제품의 의의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⁷⁾을 말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 제도를 도입하기 전 2016년도 「공공혁신조달(PPI)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 혁신의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혁신 변화속도가 높고 사회적·안보적 필요성이 큰 분야에서 정부가 선도적 수요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간보다 강력한 기술개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주기 초기에 민간이 부담하기 어려운 높은 투자비용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투자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기술 발전과의 연관성이 낮을 경우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의 공공조달은 각 부처·기관의 수요를 망라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초기 신기술 확산에 필요한 수요의 임계치를 확보하고 시장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기술 분야의 조달 규모를 일정 부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민간부문 기술확산의 촉매제로 작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용하는 신호효과를 갖는다.

또한 R&D 보조금이 기술개발 역량의 확산에 그치는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구매는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까지 확산시켜 준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넘어 생산역량까지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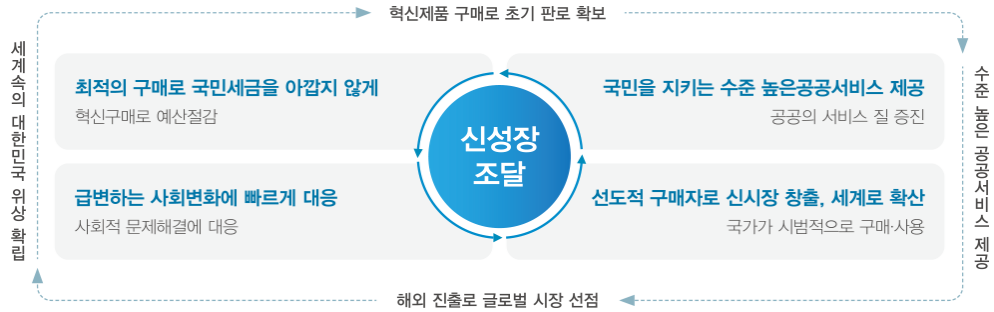
[공공 혁신조달 정책의 특징]

| 구분 | 특징 |
|-----------------|--|
| 기술개발에 대한 강력한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 지향적 공공조달은 대부분 기술혁신 변화속도가 높고 기술개발 투자가 높은 미래 신기술이나 사회적·안보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행 - 공공적 성격이나 미래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공공조달은 공공부문의 기술개발 요구나 선도적 수요자로서 성격이 민간부문보다 강력 |
| 높은 초기투자 비용의 감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며 정치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분야에서 정부는 기술혁신주기의 초기에 민간보다 높은 초기투자비용 감당에 적합 - 공공조달 대상인 혁신 기술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미래 기술 발전과의 연관성이 낮다면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쉬운 단점이 존재 |
| 정부구매에서 규모의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공공조달은 각 부처기관들을 망라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신기술이 수요의 임계치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 - 초기 신기술은 기술확산을 위해서 수요의 임계치를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해주면 시장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
| 민간부문에 대한 신호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신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은 규모를 일정부분 확보한다는 점 외에 민간에 신뢰성을 주어 민간부문에서의 기술확산에 중요 촉매제로 작용 |
| 민간의 생산능력 확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보조금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확산시키는 데 그치는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구매는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능력을 확산시켜 준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을 넘어 생산역량까지도 담보 |

자료: 조달청, 「공공혁신조달(PPI) 도입방안 연구」, 2016. 1.

동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가의 혁신조달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2019년에 혁신제품 조달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경제부,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혁신제품 공공조달을 통해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며, 기업의 혁신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통해 미래선도기술을 적용한 신성장 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후속 구매확산을 지원하여 혁신제품이 국내·외 최초·최고 제품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장조달 개요]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혁신제품의 유형

혁신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8)에 근거하여 ① 국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② 혁신시제품 ③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를 다시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과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을 [유형 1]로, 혁신시제품을 [유형 2]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형 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은 각 부처 등에서 혁신제품을 제안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확정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9)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신청 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을 제외한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제품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7조(공고 및 추천) ① 제6조제1항 각 호를 주관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하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한다)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신청 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필요한 제품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된다. [유형 2](혁신시제품)의 경우,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제안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혁신제품의 유형]

| 구분 (추천자) | 지정 대상 | 지정 |
|----------------|--|-----------------|
| 유형 1 (각 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정부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 NET(신기술 인증)¹⁰⁾ · NEP(신제품 인증)¹¹⁾ 등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 유형 2 (조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 공급자제안형(스카우터 추천형 포함),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 |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유형 1] 중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가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¹²⁾이다.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하 유형에서 동일함)이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 도입 기술 포함)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

10) 신기술 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한다.

11) 신제품 인증(NEP, New Excellent Product)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역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한다. NET는 '기술' 그 자체의 우수성을 인증하며, NEP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어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한다.

12)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심의대상) ① 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혁신제품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¹³⁾을 말한다.

[유형 1]의 또 다른 종류인 '기타 기술인정 혁신제품'은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혁신시제품 외에 각 부처가 추천한 NET(신기술 인증)·NEP(신제품 인증) 제품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¹⁴⁾이란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커서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신산업·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형 2]에 속하는 '혁신시제품'은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 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기술개발단계 7 이상¹⁵⁾)으로 혁신성 평가 등을 통과한 제품으로,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한다. 혁신시제품은 다시 공급자 제안형과 수요자 제안형으로 구분되는데, 공급자 제안형은 혁신기업이 조달청이 공고한 분야에 적합한 기술혁신제품을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고, 수요자 제안형은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혁신수요를 제안한 다음 혁신기업이 해당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제시하게 된다.

13)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또는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1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15)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또는 기술개발단계)란 특정 기술이 얼마나 개발·성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해당 기술이 아이디어·기초연구 수준인지, 아니면 실증을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단계별로 보여준다. 1단계부터 9단계로 구분하며, 단계가 높을수록 기술이 성숙되어 상용화에 가까워진다. 통상 TRL 1~3단계가 기초연구·개념검증 단계, TRL 4~6 단계는 실험실이나 유사환경에서 모델 검증 단계, TRL 7~9단계는 실제 운용 환경에서 시제품 검증을 통해 실증·상용화가 가능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

혁신제품의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혁신제품 추천, 혁신제품 지정, 조달청 시범구매 지원,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수요기관의 후속구매의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¹⁶⁾ 먼저 각 부처(유형 1) 및 조달청(유형 2)이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재정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한다. 지정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고,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시범사용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시범사용 결과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서 수요가 있고 상용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본 구매(후속구매)를 하여 혁신제품이 공공 및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단계를 거친다. 물론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시범구매 절차 없이 타 기관의 시범사용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예산으로 바로 본 구매를 통해 혁신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주요 추진단계]

| | | | | | |
|----|------------|--------------------|--------|--------|----------------|
| 주체 | 각 부처 및 조달청 |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조달청 | 수요기관 | 수요기관 등 |
| 내용 | 혁신제품 추천 | 혁신제품 심사·지정 | (시범구매) | (시범사용) | 후속구매 등 구매확산 |
| 재원 | - | - | 조달청 예산 | - | 수요기관 자체예산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의 추천 절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유형1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경우 각 부처에서 수행한 연구개발(R&D) 결과물이나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해당 부처의 장이 추천한다. 즉 유형1은 혁신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각 부처별 평가기관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16)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각 참여부처에 공급하는 것인데, 모든 혁신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수요기관이 필요한 경우 시범구매 없이 자체예산으로 바로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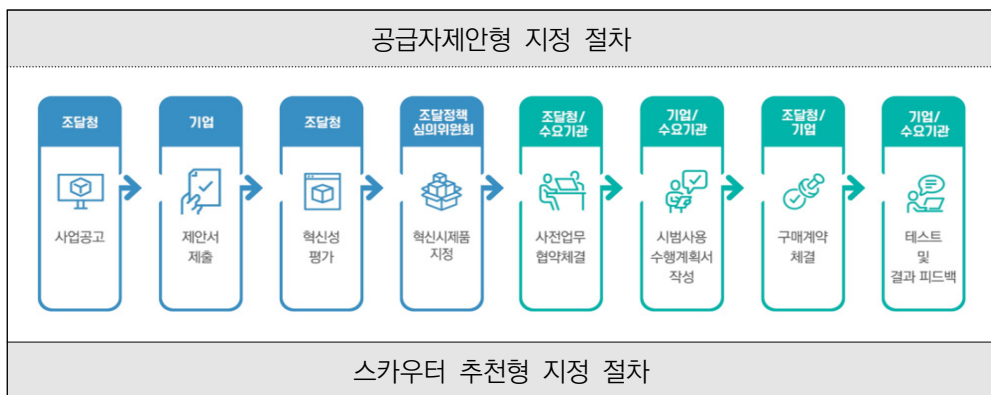
부처별 추천심사위원회에서 혁신제품으로 추천하게 된다. 각 부처가 추천한 제품은 유형2와 마찬가지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유형2는 '혁신시제품'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형은 조달청이 상용화 직전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범구매·시범사용과 연계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혁신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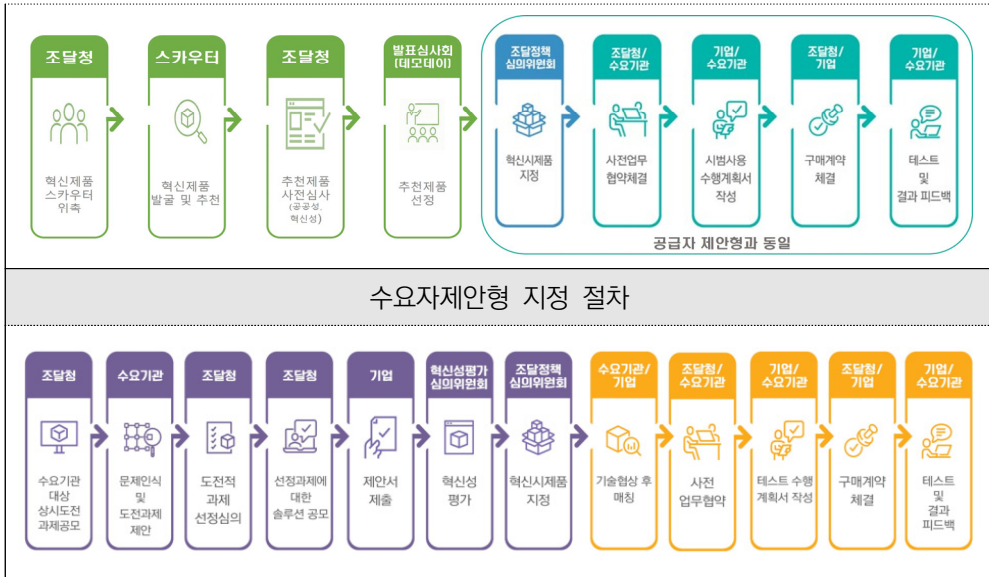
혁신시제품은 다시 공급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형¹⁷⁾, 수요자 제안형으로 구분된다. 공급자 제안형은 조달청이 사업을 공고하면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한 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공급자 제안형의 일종인 스카우터 추천형은 민간시장과 접촉면이 넓은 전문가(스카우터)를 위촉하여 기존 조달시장 밖의 유망 제품·기업을 발굴·추천하는 방식이다. 지정 이후에는 조달청과 수요기관 간 사전업무협약 체결, 기업과 수요기관 간 시범사용수행계획서 작성, 조달청과 기업 간 구매계약 체결을 거쳐 수요기관에서 테스트 및 결과 피드백을 수행하게 된다.

수요자 제안형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도전과제를 공모하고, 문제인식 및 도전과제 선정심의를 거친 후 선정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공모하여 기업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혁신성 평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며, 지정 이후의 기술협상·매칭, 사전업무협약, 테스트 수행, 구매계약 체결, 테스트 및 피드백 절차는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하다.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17) 스카우터 추천형은 원칙적으로 공급자 제안형에 포함되나, 필요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자료: 조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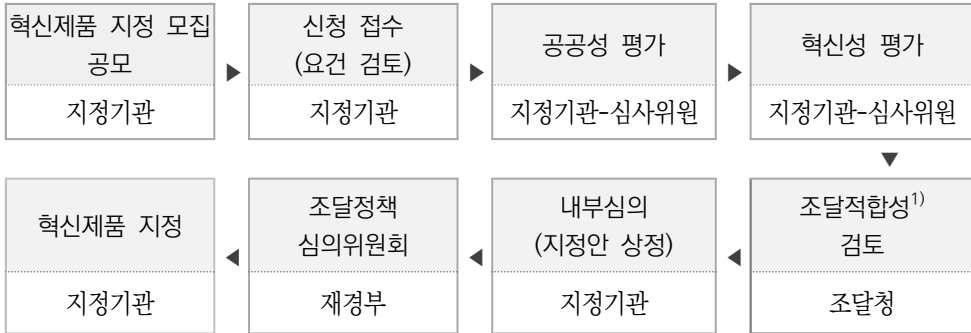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는 혁신제품 추천 → 심사 및 지정 → 시범구매 및 시범사용 → 후속구매(본 구매)로 요약된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혁신제품 추천 및 지정

① 주요 절차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혁신제품을 심사하고 지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혁신제품 지정 공모로부터 혁신제품 지정까지 8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지정기관이 혁신제품 지정 모집을 공모하고 신청을 받은 후 공공조달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지정기관의 심사위원이 공공성 심사와 혁신성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공공성·혁신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조달적합성을 검토하고, 각 지정기관이 내부심의를 거쳐 지정안을 상정하며,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혁신제품 추천·지정 추진절차]



주: 1) 부정당제재 여부, 법적인증요건 충족 등 공공조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8)

또한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②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혁신제품 중 [유형2]에 해당하는 혁신제품(혁신시제품)을 지정할 때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¹⁹⁾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성 심사와 혁신성 심사의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먼저 공공성 심사는 공공적합성과 개발완성수준의 두 영역으로 나뉘며,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적합 여부만을 판정하는 관문형(gate-keeping) 평가로서 공공성 평가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인 혁신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공급자제안형의 경우 공공적합성 영역에서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구매의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의 4개 항목을 심사하며, 수요자제안형의 경우에는 분야적합성, 공공구매의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대신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심사한다. 개발완성수준 영역에서는 TRL(기술완성수준), 안전성, 규제 해소 여부를 공통으로 평가한다.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 평가기준]

| 심사구분 | 평가항목 (평가배점)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
| 공급자 제안형 | 공공적합성 (적합여부) |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
| |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
| | | 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
| | |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 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1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심사구분 | 평가항목 (평가배점)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
| | 개발완성 수준 (적합여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
| | | 안전성 |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 | |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 해소를 충족했거나, 규제 해소 방안을 적절히 제시했는지 여부 |
| 수요자 제안형 | 공공적합성 (적합여부) |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급자제안형과 동일함 |
| | 개발완성 수준 (적합여부) | TRL | 공급자제안형과 동일함 |
| | 안전성 규제 | |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성 심사는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혁신적합성(50점), 시장성(30점),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의 3개 영역,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혁신적합성은 제품의 신규성(20점), 제품의 탁월성(20점),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으로 세분되고, 시장성은 시장규모(15점)와 파급성(15점)으로 나뉜다.

[혁신제품 지정 시 혁신성 평가기준]

| 심사구분 | 평가항목 (평가배점)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
| 공급자 제안형 및 수요자 제안형 | 혁신적합성 (50점) | 제품의 신규성 (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 | | 제품의 탁월성 (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 심사구분 | 평가항목 (평가배점)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
| | 시장성 (30점) | 시장규모 (15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 | 파급성 (1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 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 시범사용 수행역량 (20점) | 수행역량 (2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주: 혁신성 평가기준은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이 동일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차 관문인 공공성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공공성 평가에 합격하여 2차 평가인 혁신성 정도를 심사받게 된다. 혁신성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합격처리 된다.

다음으로, [유형 1]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²⁰⁾에 근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을 제외한 각 참여기관들을 “○○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지정하여 지침 내에 혁신제품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각 부처의 경우 평가기준은 조달청의 [유형 2]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과 유사하며, 기관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설정한 경우도 있다.²¹⁾

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1) 예를 들어, 경찰청은 자체 지침내에 혁신성 평가기준으로 '치안문제 해결 가능성과 효과'를, 국방부는 공공성 평가기준으로 '장병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정하고 있다.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²²⁾에 근거하여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부 행정위원회로 주관부처는 재정경제부이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는 조달청과 각 참여부처에서 추천한 혁신제품 후보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당연직)이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위원 수는 총 17명(위원장 제외)으로,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경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기획처 차관, 조달청장 등 총 7명이고,²³⁾ 민간위

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중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5의2. 기획예산처차관
6. 조달청장
7.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원은 교육, 경제 분야 등 전문가 총 10명이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구분 | | 내용 |
|---------|------------|---|
| 명칭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 소속 및 주관 | | 재정경제부 |
| 성격 | | 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
| 설치근거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 설치목적 | | 조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
| 기능 | |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구성 | 위원장 (임명권자) | 재정경제부장관 (당연직) |
| | 위원 | 공무원(7명) : 재경부·과기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기획처 차관, 조달청장(위원장 제외), 민간위원(10명) : 교육인 4명, 경제·기업인 3명, 전문직업인 3명 |

주: 2026년 4월말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④ 혁신제품 인증서 등 교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을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²⁴⁾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아래 그림)를 교부하여야 한다.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에만 지정증서를 교부

24)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8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신청에 대한 혁신제품평가 및 혁신제품 지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공지 한다. 이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②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의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서를 교부한다.

1. 신청자가 협업체인 경우 지정 인증서는 추진 기업에게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2. 신청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에게 [별지 제8호의3 서식]의 지정 인증서를 교부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전부에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다만, 구성원 각자의 지정 효력은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따른 분담내용에 한한다.

하며, 지정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해서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지정증서 교부 후에는 혁신시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혁신제품 인증마크’는 혁신조달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근간으로 하여, KIP(혁신조달·혁신제품) 영문 초성을 입체적으로 배열하여 큐브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한민국(Korea)의 이니셜 K, 두 번째는 사업의 핵심 키워드 '혁신(Innovation, Innovative)'의 이니셜 I, 마지막으로 '조달(Procurement)', '제품(Product)'의 이니셜 P이다.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예시)]

| 〈인증서〉 | 〈인증마크〉 |
|-------|--|
| |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혁신제품</p> |

자료: 조달청

(2) 혁신제품 구매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서 구매 단계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제품의 추천, 심사·지정 단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지정 자체가 시장 확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달청 예산을 활용한 시범구매를 통해 수요기관의 실증경험을 창출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기관이 자체예산에 의한 후속구매(본 구매)를 실시함으로써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확산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제품 조달 제도는 단순히 혁신제품의 지정에만 그치지 않고, 시범구매 등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통해 수요기관의 후속구매가 이어지고 공공·민간부문에 혁신제품이 활발하게 사용될 때 실질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제도는 혁신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혁신제품 구매촉진 제도]

| 구분 | 내용 | 비고 |
|-------|---|--|
| 수의계약 | 혁신제품 지정기간(최대 6년) 내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① |
| 시범구매 | 조달청 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현장에 혁신제품 사용·테스트 기회 제공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⑥ |
| 구매면책 | 구매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혁신제품 구매에 대한 면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7④ |
| 구매목표제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기관별 구매목표 설정, 목표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 | 중앙부처 1.4%, 지자체 1.9%, 공공기관 2.2%, 지방공기업 2.8%(26년 기준)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²⁵⁾에 따라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공급,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방법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지원

2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수 있고,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²⁶⁾

관계 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위한 제도는 크게 ① 지정기간 (최대 6년) 내 수의계약 가능, ② 조달청 시범구매 지원, ③ 구매면책 운영, ④ 혁신 제품 구매목표제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수의계약 가능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의 지정기간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달상 특례를 두고 있다.

② 시범구매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공공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 자체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이를 수요기관에 제공하여 시범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²⁷⁾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각 중앙관서의

26)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구매 증대)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실적 점검) 재정경제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으로 하여금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²⁸⁾ 이러한 시범구매는 조달청 예산으로 초기 수요를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후속구매는 정책적 개입 없이도 시장에서 수요가 지속되는 자생적 확산 단계를 각각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제한하되, 수요자제안형 공모제품 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범구매 제외대상에는 이미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된 제품과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 우수조달물품·다수공급자계약 제품,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품 등이 포함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외 대상]

| 연번 | 시범구매 제외 |
|----|---|
| 1 | 이미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된 제품 |
| 2 |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이 되지 않은 제품 |
| 3 | 이미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된 제품과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 |
| 4 |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 다수공급자계약, 혁신제품 단가계약, 카탈로그 계약 제품 * 예외 : 혁신제품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은 대상에 포함 |
| 5 | 혁신제품이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품 (납품 3건이상이면서 10억원 이상) |
| 6 | 지정기업의 사정으로 시범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7 | 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 |
| 8 | 그 밖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업무심의회에서 시범구매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료: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제1항을 요약함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⑥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제5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주무기관의 장이 공급하는 경우
2. 위원회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시범구매 계약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혁신제품 시범구매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혁신기업이 기본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달청이 제품을 선별한 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기관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조달청이 수요매칭을 수행하고, 혁신기업이 제품을 납품한다. 이후 수요기관이 시범사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조달청이 시범사용 결과를 판정하게 된다.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수요 매칭을 할 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및 수출 증대 등 정책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우선순위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하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를 통해 시범구매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시범구매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절차]



자료: 조달청

③ 구매 담당자 면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에 근거하여 구매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혁신제품 구매 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수요기관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④ 기관별 구매목표제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기관유형별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목표율은 중앙부처 1.4%, 지자체 1.9%, 공공기관 2.2%, 지방공기업 2.8%로 설정되어 있다.

가. 부처별 사업 결산

2019년부터 시작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조달청 및 각 참여부처에서 혁신제품 구매 및 제도운영(추천위원회 개최 등) 등의 용도로 예산이 집행되었다. 다음 표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각 부처에서 혁신제품 관련 용도로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수와 집행액을 나타낸 것이다.²⁹⁾ 혁신제품 조달 사업 용도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혁신제품 구매 등의 용도로 집행한 경우 이를 포함하였다.

[부처별 혁신조달 사업 집행 현황(2019~2026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소관기관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 사업수 | 집행액 | 사업수 | 집행액 | 사업수 | 집행액 | 사업수 | 집행액 |
| 유형1 | 과기부 | - | - | - | - | 1 | 4,533 | 1 | 2,449 |
| | 행안부 | - | - | 5 | 46 | 32 | 7,420 | 16 | 4,134 |
| | 농림부 | - | - | 4 | 29 | 14 | 409 | 9 | 88 |
| | 산업부 | 1 | 1,996 | 1 | 11,167 | 12 | 17,676 | 9 | 12,514 |
| | 복지부 | - | - | 1 | 2 | 7 | 171 | 7 | 31 |
| | 기후부 | - | - | - | - | 1 | 1,995 | 1 | 1,922 |
| | 국토부 | - | - | 3 | 376 | 13 | 1,663 | 12 | 2,848 |
| | 해수부 | - | - | - | - | 1 | 1,470 | 1 | 1,475 |
| | 중기부 | - | - | 6 | 161 | 16 | 1,663 | 16 | 1,158 |
| | 경찰청 | - | - | - | - | - | - | - | - |
| | 산림청 | - | - | 6 | 525 | 41 | 242 | 33 | 440 |
| | 지재처 | - | - | - | - | 3 | 75 | 14 | 118 |
| | 기상청 | - | - | - | - | - | - | - | - |
| | 해경청 | - | - | 2 | 15 | 9 | 475 | 14 | 1,157 |
| | 소방청 | - | - | - | - | 1 | 44 | 1 | 30 |
| |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우주청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 | 1,996 | 28 | 12,321 | 151 | 37,836 | 134 |
| 유형2 | 조달청 | 2 | 858 | 2 | 30,482 | 2 | 44,771 | 2 | 47,550 |
| | 합계 | 3 | 2,854 | 30 | 42,803 | 153 | 82,607 | 136 | 75,914 |

29) 2026년의 경우 집행액이 아닌 예산현액을 표시하였다.

| 구분 | 소관기관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
| | | 사업수 | 집행액 | 사업수 | 집행액 | 사업수 | 집행액 | 사업수 | 예산현액 ²⁾ |
| 유형1 | 과기부 | 1 | 2,300 | 1 | 300 | 1 | 300 | 1 | 270 |
| | 행안부 | 10 | 14,906 | 11 | 9,738 | 9 | 11,084 | 2 | 515 |
| | 농림부 | 7 | 672 | 8 | 394 | 6 | 555 | 4 | 103 |
| | 산업부 | 6 | 10,106 | 5 | 3,080 | 1 | 1 | - | - |
| | 복지부 | 4 | 38 | 4 | 30 | 3 | 404 | 1 | 356 |
| | 기후부 | 1 | 1,713 | 1 | 123 | 1 | 123 | 1 | 123 |
| | 국토부 | 12 | 12,544 | 13 | 16,950 | 14 | 26,531 | 5 | 3,081 |
| | 해수부 | 1 | 382 | - | - | - | - | - | - |
| | 중기부 | 6 | 1,249 | 14 | 516 | 15 | 460 | 4 | 404 |
| | 경찰청 | - | - | 1 | 688 | 1 | 644 | 1 | 745 |
| | 산림청 | 47 | 1,715 | 54 | 3,622 | 48 | 4,114 | 4 | 4,539 |
| | 지재처 | 2 | 318 | 3 | 333 | 1 | 66 | 1 | 3 |
| | 기상청 | - | - | - | - | 2 | 257 | - | - |
| | 해경청 | 17 | 1,888 | 18 | 3,920 | 17 | 2,241 | 12 | 528 |
| | 소방청 | 1 | 1 | 6 | 550 | 7 | 1,585 | - | - |
| |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우주청 | - | - | - | - | - | - | - | - |
| 소계 | 115 | 47,832 | 139 | 40,244 | 126 | 48,365 | 36 | 10,667 | |
| 유형2 | 조달청 | 3 | 53,280 | 3 | 59,755 | 5 | 60,624 | 4 | 98,068 |
| 합계 | | 118 | 101,112 | 142 | 99,999 | 131 | 108,989 | 40 | 108,735 |

주: 1) [유형 1] 사업의 2026년도 예산현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적은 것은 다수 참여부처가 당초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이며, 타 사업 예산잔액 등을 활용하여 연말 기준 집행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1. 소방청은 2023년부터, 국방부와 우주청은 2025년 12월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함
 2. 사업수는 세부사업수 기준이며, 당초 예산에 혁신제품 구매 또는 제도운영 등의 용도로 편성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집행액이 있는 경우 사업수에 포함하였음
 3. 부처명은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형1] 혁신제품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총 17개 부처가 참여하며,³⁰⁾³¹⁾ [유형2] 제품은 조달청이 주관한다. 조달청 및 17개 참여부처

30) 본 보고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 부처가 [유형 1]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1. 각 부처의 [유형 1] 혁신제품 지정실적이 있는 경우
2. 각 부처의 [유형 1]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자체 지침을 제정한 경우
3. 각 부처가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에 [유형 1] 사업에 대하여 참여의사를 밝히고, 관계자가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등

31) 다만, 2025년 12월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한 국방부와 우주청은 예산 집행액은 없으므로,

의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집행액 규모는 2019년 28억 5,400만원에서 2025년 1,089억 8,900만원으로 약 38배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조달 청 사업(유형 2)에 집중되어 있다.

연도별 집행액 규모는 시기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데, 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8억 5,400만원, 428억 300만원, 826억 700만원으로 사업 출범 직후 급증한 도입·확산기에 해당하고, ②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각각 759억 1,400만원, 1,011억 1,200만원, 999억 9,900만원으로 1,000억원 안팎에서 정체된 횡보기를 형성하며, ③ 2025년에는 1,089억 8,900만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도별 집행액 규모의 추이는 앞에서 살펴본 혁신제품 지정 규모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혁신제품 지정건수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급증(66건→623건)하다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감소 추세(606건→422건)를 보였으며, 2025년 494건으로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유형 1] 사업의 연도별 집행액 추이를 부처별로 비교해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일부 부처(국토부·행안부·산업부 등)에서 예산집행이 집중된 반면, 늦게 참여한 국방부와 우주청을 제외하면 복지부·해수부·농림부·기후부 등 다수 부처는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산업통상부의 경우 2020~2023년에는 매년 100억원 안팎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2024년 약 31억원, 2025년 100만원으로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해양수산부도 2023년 약 4억원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등 사업 참여부처별로 집행시기가 시기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5년도를 기준으로 유형별·부처별 집행액 규모를 살펴보면, [유형 1] 사업의 경우 17개 참여기관 중 14개 기관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 규모는 483억 6,500만원으로 2025년 모든 유형의 집행액 합계 1,089억 8,900만원의 44.4%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 집행액이 265억 3,100만원으로 [유형 1]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행정안전부 110억 8,400만원, 산림청 41억 1,400만원 순이다.³²⁾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집행액이 존재하는 부처의 수는 15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방부와 우주청이 집행실적은 없으나 혁신조달 사업 참여 부처에 포함하여 17개로 간주하기로 한다.

32) 각 부처가 주관하는 [유형 1]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부처가 혁신제품 조달 용도로 편성된 세부사업(또는 내역사업)을 편성하지 않아 타 사업의 잔액 등을 활용하여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는 연도별로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각 부처의 [유형 1] 사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았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형 2] 사업의 집행액은 606억 2,400만원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여, 조달청 1개 기관의 집행액이 나머지 14개 기관 집행액 합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조달청이 주관하는 시범구매 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조달청 소관 사업 결산

(1) 연도별 집행 현황

조달청은 혁신제품 유형 중 [유형 2]에 해당하는 혁신시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하며,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각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달청이 혁신제품 조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사업 수와 집행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을 착수한 2019년도 사업 수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세부사업 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과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내 혁신제품 운영비 등 2개 사업이고 집행액 합계는 8억 5,800만원이었다. 그 이후 해마다 사업 수 및 집행액이 증가하여 2025년 집행액은 606억 2,400만원으로 2019년 집행액 대비 약 71배 증가하였고, 2026년 예산액은 980억 6,800만원으로 약 114배 확대되었다.

연도별 집행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에서 혁신제품 조달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다.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과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내 혁신제품 사업 운영비는 조달청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동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관련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 가운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혁신제품 지정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2019년 7억 8,800만원에서 2024년 547억 6,100만원으로 집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도에 집행액이 490억 8,6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6년 예산에 827억 1,400만원이 편성되면서 집행액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혁신제품 임차 사업(내역사업)은 2025년에, 공공혁신수요기반혁신제품(R&D) 사업은 2023년에 각각 신설되었고, 2026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다. 반면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 내 수출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과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 내 필리핀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ODA) 사업은 2025년에 신설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폐지되었다.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사업 내 혁신장터 고도화 사업이 2026년에 신규 편성되었다.

[연도별 혁신제품 조달 사업 집행현황(조달청 소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집행액 ¹⁾ | | | |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예산액) |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 혁신제품 시범구매 | 788 | 29,678 | 43,264 | 45,494 | 48,759 | 54,761 | 49,086 | 82,714 |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등 ²⁾ | 70 | 804 | 1,507 | 2,056 | 2,989 | 2,994 | 3,631 | 4,402 |
| | 혁신제품 임차 | - | - | - | - | - | - | 3,363 | 1,637 |
|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R&D) | 연구개발비 및 기평비 | - | - | - | - | 1,532 | 2,000 | 2,968 | 8,000 |
|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 수출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 - | - | - | - | - | - | 1,070 | - |
|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 필리핀 혁신기술 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ODA) | - | - | - | - | - | - | 506 | - |
|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 혁신장터 고도화 | - | - | - | - | - | - | - | 1,315 |
| 합 계 | | 858 | 30,482 | 44,771 | 47,550 | 53,280 | 59,755 | 60,624 | 98,068 |

주: 1) 2019~2025년은 집행액이고, 2026년은 예산액임

2)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혁신제품 선정 및 관리비, 경진대회 및 홍보·운영비, 지역기반 혁신제품 구매확산 등에 집행됨

자료: 조달청

(2) 주요 사업 내용

혁신제품 조달사업은 [유형 1]은 각 참여부처에서, [유형 2]는 조달청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에서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재정경제부와 함께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주무기관으로서 [유형 2] 혁신제품 발굴·추천, 시범구매사업, 혁신조달 제도 운영 등 혁신제품의 지정에서부터 구매, 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조달몰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사업 내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본 제도의 핵심 사업으로,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공공현장에서 시범사용·실증하는 등 정부가 첫 구매자(First Buy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용은 품질·성능을 검증하는 국내실증과, 해외 공공부문 기관의 시범사용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초기 실적(Track-Record)을 형성하는 해외실증으로 구분된다.

조달몰자 계약 및 관리 사업 내 ‘임차 시범구매’ 사업은 혁신제품의 가격이 높거나 장기간 또는 많은 기관(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며,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의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구매하는 대신 임차방식으로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일시 구매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혁신제품의 지정·발굴 단계부터 시범구매, 단가계약 등 판로지원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동 센터는 혁신제품 조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법정화된 기관으로, 혁신제품 지정·발굴부터 시범구매 및 단가계약과 같은 판로지원 업무 등 혁신제품의 지정에서부터 확산·성과평가 등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 확대에 따라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은 전기차 화재와 같은 공공현안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부처의 R&D 결과물에 대하여 성능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scale up) 등을 통해 혁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사업 중 해외실증 참여기업에게 해외실증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해외실증 애로해소’ 내역사업과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ODA’ 내역사업은 2026년에 폐지되었다.

[조달청 소관 혁신제품 조달 주요사업(2025년 기준)]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 혁신제품 시범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실증) 상용화 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공공현장 시범사용 및 실증 → 품질·성능 검증 및 첫 구매자 역할 ○ (해외실증) 해외 공공부문 기관이 시범사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공신력 있는 초기 실적(track-record)을 형성 |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 임차 시범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장비, 장기간 또는 많은 기관(환경)에서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있는 제품에 대해 임차 시범구매 ○ 효율적 예산 사용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 확대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지정·발굴부터 시범구매 및 단가계약과 같은 판로지원 업무 등 혁신제품 제도 전반을 통합 지원 ○ 혁신적 조달기업 맞춤형 컨설팅, 해외실증 지원, 단가계약 원가적정성 검토 확대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 확대에 따른 역할 확대 |
|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R&D) | 혁신수요 R&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화재 등 공공현안문제를 수요로 기술개발, 그 외 기존 혁신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R&D 결과물을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구매 확산하는 구매연계형 R&D로, 시범구매로 연계하거나 기존 제품은 스케일업 지원 |
|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 해외실증 애로해소 (‘26년 폐지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실증 참여기업에 대해 해외실증 전반에 소요되는 해외인증 취득비, 통관·물류비 등 맞춤형 통합 지원 ○ 확대되는 해외실증 참여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 |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ODA (‘26년 폐지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포터블 엑스레이, 영상판독 솔루션, 방사선 보호가운)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필리핀의 열악한 결핵진단 관리체계 개선 ○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의 마중물 효과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가. 혁신제품 지정 단계

(1) 유형별 지정 규모

① [유형 1] 참여기관 간 지정실적 편차 문제

정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등 혁신제품 지정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2021~2022년 정점 이후 지정 건수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달청을 제외한 17개 부처의 지정 실적의 합계가 65.4%에 불과하며, 부처 간 지정실적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참여 부처에서 신규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혁신제품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 지정 추이를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19년 66개에서 2020년 279개로 증가한 후, 2021년 623개, 2022년 606개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 두 해에만 전체 누적 건수의 44.3%가 집중되었다. 이후 2023년부터 신규 혁신제품 지정 시 2단계 평가(공공성 평가 후 혁신성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2023년에 284개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4년 422개, 2025년 494개로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혁신제품 지정은 초기 확대기를 거친 뒤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형1]이 1,815개(65.4%)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유형 2는 959개(34.6%)이다. [유형1]은 2020년 186개를 시작으로 2021년 458개까지 급증한 후 2023년 172개로 감소하였다가, 2024~2025년 다시 280~300개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유형2] 내에서는 공급자제안형이 699개(2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스카우터추천형 151개(5.5%), 수요자제안형 109개(3.9%)로, 전체 유형 중 수요자

제안형의 비중이 가장 적다. 스카우터추천형은 2021년 4개에서 2025년 55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지정 누계에서의 비중은 5.5%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유형별 혁신제품 지정 현황]

(단위: 개, %)

| 지정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누계 | (비중) | |
|-------------------|------------------------|---------|---------|--------|---------|--------|--------|---------|---------|--------|
| 유형1 ¹⁾ | - | 186 | 458 | 414 | 172 | 282 | 303 | 1,815 | (65.4) | |
| 유형2 | 공급자 제안형 | 66 | 86 | 132 | 149 | 66 | 79 | 121 | 699 | (25.2) |
| | 수요자 제안형 | - | 7 | 29 | 19 | 15 | 24 | 15 | 109 | (3.9) |
| | 스카우터 추천형 ²⁾ | - | - | 4 | 24 | 31 | 37 | 55 | 151 | (5.5) |
| 합계 | 66 | 279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100.0) | |
| (전년대비 증감률) | (-) | (322.7) | (123.3) | (△2.7) | (△53.1) | (48.6) | (17.1) | - | - | |
| (누계 대비 비중) | (2.4) | (10.1) | (22.5) | (21.8) | (10.2) | (15.2) | (17.8) | (100.0) | - | |

주: 1) 2019~2022년의 경우, 유형1 = FT I + FT III입

2) 스카우터 추천형은 공급자 제안형에 속하나, 여기서는 스카우터 추천형의 지정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도로 분류하였음

자료: 조달청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 지정 현황을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유형2]를 담당하는 조달청을 포함하여 [유형1]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등 18개 부처·청이 참여하고 있다.³³⁾

지정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유형2]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있는 조달청이 959건으로 가장 많다. [유형1]에서 혁신제품 지정 건수 상위 3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591개, 21.3%), 산업통상부(368개, 13.3%), 지식재산처(205개, 7.4%)로, 이들 3개 기관이 전체 지정 건수의 42.0%를 차지한다.

반면 [유형1] 혁신제품을 주관하는 일부 부처들은 지정실적이 전혀 없거나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말에 혁신제품 조달 사

33) 2025년말 기준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는 총 18개이다. 다만, 국방부 및 우주항공공청은 2025년 12월에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2025년말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없다.

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을 제외하면, 소방청(0개), 보건복지부(10개, 0.4%), 산림청(12개, 0.4%), 기상청(2개, 0.1%), 해양경찰청(1개, 0.0%) 등은 지정 실적이 미미하며, 특정 연도에만 산발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방청의 경우 2023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해 왔으나, 2025년말까지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전혀 없다. 소방청과 유사하게 국민안전·치안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경찰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있는데 이들 기관은 혁신제품을 각각 12건, 12건, 1건 지정한 반면, 소방청은 혁신제품을 지정하지 않았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³⁴⁾이라는 자체 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 성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는데도 혁신제품 지정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2023년에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소방청 고시)을 제정하였고, 2026년도에 혁신제품 지정 공고 결과 4개 제품³⁵⁾이 신청이 들어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일부 경제부처에 편중되어 있고, 다수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의 영역이 상이하고 분야별로 상응하는 기업군의 규모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특히 [유형1]의 경우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바탕으로 혁신제품이 지정되므로, 그동안 연구개발 사업의 규모가 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일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산업기술 관련 부처 외에 국민안전 분야(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 국민건강과 복지 분야(보건복지부), 농수산업 분야(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지정건수가 적은 분야에서도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혁신제품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정책, 소방기술, 장비선진화 연구 등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으로, 1991년 중앙소방학교 부속 소방연구실로 설립된 후 2019년 소방청 직속 국립소방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

35)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4개 제품은 공기호흡기 중량 감소 기술, 지능형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배터리용 자동소화설비, XR 기반 소방훈련 프로그램이다.

[부처별 혁신제품 지정 현황]

(단위: 개, %)

| 구분 (기관 수)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계 | (비중) |
|--------------|------|------|------|------|------|------|------|-------|---------|
| | 경찰청 | - | - | - | - | - | 9 | 3 | 1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9 | 42 | 28 | 6 | 29 | 43 | 157 | (5.7) |
|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 - | 25 | 56 | 48 | 10 | 20 | 31 | 190 | (6.8) |
| 기상청 | - | - | - | - | - | 1 | 1 | 2 | (0.1)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12 | 27 | 30 | 15 | 18 | 14 | 116 | (4.2) |
| 농림축산식품부 | - | 3 | 15 | 23 | 12 | 13 | 8 | 74 | (2.7) |
| 보건복지부 | - | 1 | 8 | 1 | - | - | - | 10 | (0.4) |
| 산림청 | - | 1 | | 2 | 3 | 3 | 3 | 12 | (0.4) |
| 산업통상부 | - | 48 | 86 | 100 | 36 | 43 | 55 | 368 | (13.3) |
| 소방청 | - | - | - | - | - | - | - | - | (-) |
| 우주항공청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44 | 160 | 98 | 79 | 115 | 95 | 591 | (21.3) |
| 지식재산처 | - | 30 | 48 | 57 | - | 22 | 48 | 205 | (7.4) |
| 해양경찰청 | - | - | - | - | 1 | - | - | 1 | (0.0) |
| 해양수산부 | - | 10 | 7 | 10 | 3 | 6 | 1 | 37 | (1.3) |
| 행정안전부 | - | 3 | 9 | 17 | 7 | 3 | 1 | 40 | (1.4) |
| 소계 | - | 186 | 458 | 414 | 172 | 282 | 303 | 1,815 | (65.4) |
| 유형2 (1개) | | | | | | | | | |
| 조달청 | 66 | 93 | 165 | 192 | 112 | 140 | 191 | 959 | (34.6) |
| 합계 | 66 | 279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100.0) |

주: 1. 2025년 12월말 기준

2. 부처명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통일함

3. 국방부 및 우주항공청은 2025년 12월에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2025년말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없음

자료: 조달청

② 다수 부처의 [유형 1] 미참여 문제

[유형 1] 제품은 국가연구개발(R&D)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다수의 부처가 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되어 연구개발 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미참여 기관들은 동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형 1] 혁신제품의 경우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경찰청 등 17개 부처가 혁

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2025년 12월에 동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아직까지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없는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을 포함한 것이다. [유형 1] 혁신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³⁶⁾이므로, 연구개발 예산이 편성된 부처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³⁷⁾ [유형 1]에 지정되는 후보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부처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안이 편성된 중앙행정기관 중 17개 부처는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2025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 실적]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실적 있음 | 혁신제품 지정 실적 없음 |
|------|--|--|
| 부처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산림청, 행정안전부, 특허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방위사업청, 교육부,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유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무부, 관세청, 대통령경호처, 국방부, 우주항공청, 소방청 |
| 부처 수 | 14개 | 17개 |

주: 1. 이 표는 202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부처명은 2024년 10월 기준임

3. [유형 2] 사업을 주관하는 조달청은 제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2024.10.) 61쪽을 바탕으로 재작성

3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7) 다만, 연구개발 예산이 최근에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연구개발 사업의 성격상 연구개발 결과물이 없는 부처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조달청을 제외한 각 부처(중앙관서)의 장이 연구개발 제품 중 혁신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법령상 강행규정은 아니고³⁸⁾ 연구개발 결과물이 있더라도 이들 모두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유형 1] 사업에 각 부처가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처 소관의 연구개발 결과물이 혁신제품 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하여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정책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각 부처가 개발한 연구개발 제품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공부문 등에 확산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정리하면, 2019년도에 시작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8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연구개발 사업 결과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유형 1] 혁신제품 지정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부처의 관심도가 낮고 참여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소관 부처의 혁신조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사유로 많은 분야의 현장수요가 혁신제품 지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바, 각 부처는 혁신 수요 발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혁신제품을 발굴·추천하는 등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①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제품 확충 필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된 혁신제품 2,774개 중 사업 초기연도에 지정된 841개(30.3%)는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일부 부처는 이를 보완할 신규 지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한 혁신제품의 비중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 지정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여 유효한 혁신제품의 풀(pool)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3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기간연장은 1차 연장(+1년)과 2차 연장(+2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19년부터 혁신제품 지정이 이루어져 2025년말 기준으로 최대 연장기간인 6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초창기에 지정된 혁신제품들은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혁신제품 지정 연도별로 지정 유효여부를 살펴보면, 2025년말 기준 전체 2,774개 중 지정이 유효한 제품은 1,904개(68.6%), 지정기간이 만료된 제품은 841개(30.3%),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29개(1.1%)로 나타났다.

지정연도가 이룰수록 만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2019년 지정분은 66개 중 50개(75.8%)가 만료되어 지정이 유효한 제품은 16개(24.2%)이며, 2020년 지정분도 279개 중 187개(67.0%)가 만료되었다. 2021년 지정분은 623개 중 388개(62.3%), 2022년 지정분은 606개 중 212개(35.0%)가 만료되어, 제도 초기 4개년(2019~2022년) 지정분의 만료가 전체 만료 건수(841개)의 대부분인 837개(99.5%)를 차지한다. 이는 혁신제품의 지정 유효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이며 최대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6년인 점을 고려할 때, 최초 지정기간 3년 경과 후 기간연장을 하지 않거나 최대 연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한 제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단위: 개, %)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 | | |
|-------|--------------|--------|-------|---------|
| | 기간만료 | 유효 | 취소 | 계 |
| 2019년 | 50 | 16 | - | 66 |
| 2020년 | 187 | 88 | 4 | 279 |
| 2021년 | 388 | 225 | 10 | 623 |
| 2022년 | 212 | 386 | 8 | 606 |
| 2023년 | 3 | 276 | 5 | 284 |
| 2024년 | 1 | 419 | 2 | 422 |
| 2025년 | - | 494 | - | 494 |
| 합계 | 841 | 1,904 | 29 | 2,774 |
| (비중) | (30.3) | (68.6) | (1.1) | (100.0) |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2025년말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 누계 2,774개의 지정 유효여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1(1,815개) 중 유효 상태인 제품은 1,251개(동일 유형 중 68.9%)이며, 기간 만료 553개(30.5%), 지정 취소 11개(0.6%)이다.

유형2 내에서는 하위 유형별로 지정유효 비중에 차이가 나타난다. 스카우터추천형의 경우 2021년 8월에 도입된 비교적 최근의 유형으로 아직 지정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지정이 유효한 비중이 94.7%(143개/151개)로 가장 높은 반면, 공급자제안형은 62.4%(436개/699개), 수요자제안형은 67.9%(74개/109개)로 상대적으로 낮다.

지정기간 만료 비율은 공급자제안형이 35.5%(248개)로 가장 높고, 수요자제안형 31.2%(34개), 유형1 30.5%(553개) 순으로, 제도 초기부터 지정이 이루어진 유형일수록 만료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유형별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단위: 개, %)

| 구분 | |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 제품 수 | |
|-----|----------|--------------|-------|-----------|
| | | | | (유형 내 비중) |
| 유형1 | | 기간 만료 | 553 | (30.5) |
| | | 유효 | 1,251 | (68.9) |
| | | 지정 취소 | 11 | (0.6) |
| | | 소계 | 1,815 | (100.0) |
| 유형2 | 공급자 제안형 | 기간 만료 | 248 | (35.5) |
| | | 유효 | 436 | (62.4) |
| | | 지정 취소 | 15 | (2.1) |
| | | 소계 | 699 | (100.0) |
| | 수요자 제안형 | 기간 만료 | 34 | (31.2) |
| | | 유효 | 74 | (67.9) |
| | | 지정 취소 | 1 | (0.9) |
| | | 소계 | 109 | (100.0) |
| | 스카우터 추천형 | 기간 만료 | 6 | (4.0) |
| | | 유효 | 143 | (94.7) |
| | | 지정 취소 | 2 | (1.3) |
| | | 소계 | 151 | (100.0) |
| 합계 | | | 2,774 | - |

주: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를 각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간만료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10개 중 8개(80.0%)가 만료되어 유효 상태는 2개(20.0%)에 불과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정 활동이 2019~2022년 초기에 집중된 후 2023년부터는 혁신제품 지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43.2%), 지식재산처(35.1%), 국토교통부(33.7%), 행정안전부(32.5%) 등도 만료 비율이 30%를 상회하여 전체 평균(30.3%)보다 높다. 반면, 경찰청·산림청·기상청·해양경찰청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제품이 없는데, 이는 해당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이 대부분 2022년 이후에야 시작되어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말 기준으로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제품을 제외하고 유효한 혁신제품의 비율이 70% 미만인 부처는 국토교통부 65.8%, 보건복지부 20.0%, 산업통상부 69.6%, 지식재산처 62.4%, 해양수산부 56.8%, 행정안전부 67.5%이다.

이들 부처는 초기에 지정된 혁신제품의 기간만료가 누적된 반면, 이를 상쇄할 신규 지정 또는 기간연장이 충분하지 않아 유효한 지정 비율이 7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다. 각 부처가 보유한 혁신제품의 풀(pool)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처 소관 분야의 기술혁신이 지체되고 관련 분야 기업의 성장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한 비중이 낮은 부처는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지정 후보를 발굴하도록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등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단위: 개, %)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 | | |
|-----------|--------------|---------------|------------|----------------|
| | 기간만료 | 유효 | 취소 | 계 |
| 경찰청 | - (-) | 12 (100.0) | - (-) | 12 (100.0)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4 (28.0) | 113 (72.0) | - (-) | 157 (100.0) |
| 국토교통부 | 64 (33.7) | 125 (65.8) | 1 (0.5) | 190 (100.0) |
| 기상청 | - (-) | 2 (100.0) | - (-) | 2 (100.0) |

(단위: 개, %)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유효여부 | | | |
|----------|---------------|-----------------|-------------|------------------|
| | 기간만료 | 유효 | 취소 | 계 |
| 기후에너지환경부 | 33 (28.4) | 83 (71.6) | - (-) | 116 (100.0) |
| 농림축산식품부 | 20 (27.0) | 54 (73.0) | - (-) | 74 (100.0) |
| 보건복지부 | 8 (80.0) | 2 (20.0) | - (-) | 10 (100.0) |
| 산림청 | - (-) | 12 (100.0) | - (-) | 12 (100.0) |
| 산업통상부 | 111 (30.2) | 256 (69.6) | 1 (0.3) | 368 (100.0) |
| 조달청 | 288 (30.0) | 653 (68.1) | 18 (1.9) | 959 (100.0) |
| 중소벤처기업부 | 172 (29.1) | 415 (70.2) | 4 (0.7) | 591 (100.0) |
| 지식재산처 | 72 (35.1) | 128 (62.4) | 5 (2.4) | 205 (100.0) |
| 해양경찰청 | - (-) | 1 (100.0) | - (-) | 1 (100.0) |
| 해양수산부 | 16 (43.2) | 21 (56.8) | - (-) | 37 (100.0) |
| 행정안전부 | 13 (32.5) | 27 (67.5) | - (-) | 40 (100.0) |
| 합계 | 841 (30.3) | 1,904 (68.6) | 29 (1.1) | 2,774 (100.0) |

주: 1. 2025년 12월말 기준

2. 부처명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통일함

3. 괄호안의 수치는 각 부처 내 기간만료, 유효, 취소 비중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② 지정기간 연장 감소 문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차·2차로 나누어 연장하고 있는데, 1차 연장률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나,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³⁹⁾

지정기간 연장은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대상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거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등이다. 2차 연장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연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연장이 불가하다.⁴⁰⁾

39)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기간 및 연장)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나. 공공조달 매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다.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 등은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0)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지정기간 및 연장)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음은 연도별로 지정된 혁신제품의 1차 및 2차 연장 현황을 2025년말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2,774개 제품 중 1차 연장된 제품 수는 1,107개(39.9%⁴¹)이고, 2차 연장된 제품은 330개(11.9%)이다. 여기서 2022년에 지정된 제품의 2차연장과 2023년 이후 지정 제품의 1차 연장의 경우 2025년말 기준으로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지정된 제품 위주로 지정 연장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연장 현황(유형 1 + 유형 2)]

(단위: 개, %)

| 지정연도 | 신규지정 (A) | 연장 | | | |
|-----------|-------------|------------------|--------------------|------------------|--------------|
| | | 1차 연장 제품 수(C) | 연장률 (C/A) | 2차 연장 제품 수(D) | 연장률 (D/A) |
| 2019~2020 | 345 | 277 | 80.3 | 105 | 30.4 |
| 2021 | 623 | 445 | 71.4 | 225 | 36.1 |
| 2022 | 606 | 385 | 63.5 | - | - |
| 2023 | 284 | - | 0.0 | - | - |
| 2024 | 422 | - | 0.0 | - | - |
| 2025 | 494 | - | 0.0 | - | - |
| 합계 | 2,774 | 1,107 | 39.9 ¹⁾ | 330 | 11.9 |

주: 2025년말 기준으로, 2022년 지정 제품의 2차 연장 및 2023년 이후 지정 제품의 1차 연장은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0개임

자료: 조달청

지정연도별로 보면, 2019~2020년 지정 제품의 1차 연장률은 80.3%(345개 중 277개), 2021년 71.4%(623개 중 445개), 2022년 63.5%(606개 중 385개)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연장의 경우 2019~2020년 지정 제품은 30.4%(105개), 2021년 지정 제품은 36.1%(225개)의 연장률을 기록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연장률의 경우 해마다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연장률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차 연장을 하지 않은 제품 중에는 기본 지정기간(3년) 내에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가 활발하게 이어져 공공시장에 안착함

41) 다만, 만료기간이 도래한 2019~2022년도 제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정 제품 수 대비 1차 연장 제품 수의 비율(1차 연장률)은 70.3%이다.

에 따라 참여기업이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혁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1차 연장의 핵심 요건이 시범구매나 자체구매 등 해당 제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므로, 1차 연장률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은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하여 지정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해당업체가 공공구매 실적이 없는 등의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형 2] 혁신제품의 경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1차 연장한 제품의 연장 사유 중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가 전체 연장사유 중 97.1%를 차지하고 있어, 1차 연장을 위해서는 시범구매 또는 자체구매 실적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1차 연장한 유형 2 혁신제품의 연장사유]

(단위: 개, %)

| 구분 (연장 사유) | 제품 수 | 비중 |
|----------------------|------|-------|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365 | 97.1 |
| 공공기관과 매출 계약 체결 후 미납품 | 3 | 0.8 |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2 | 0.5 |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제시 | 6 | 1.6 |
| 합계 | 376 | 100.0 |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조달청

참고로 2차 연장률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의 2차 연장률이 2020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은 해당 혁신제품이 최소 4년(기본 3년 + 1차연장 1년) 이상 공공성과 혁신성을 유지했다고 인정받은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형2] 제품의 경우 2차 연장된 제품은 총 95개인데, 공공성 요건에서는 연장 사유로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가 6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제시’로 비중은 24.2%였다. 혁신성 요건에서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유사기술이 없는 경우’가 67.4%, ‘기술력이 탁월한 경우’가 32.6%를 차지하였다.

[2차 연장한 유형 2 혁신제품의 연장사유]

(단위: 개, %)

| 구분 | 연장 사유 | 제품 수 | 비중 |
|-----------|-----------------------|------|-------|
| 공공성 요건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61 | 64.2 |
| | 공공기관과 매출 계약 체결 후 미납품 | 8 | 8.4 |
|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3 | 3.2 |
|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 제시 | 23 | 24.2 |
| | 계 | 95 | 100.0 |
| 혁신성 요건 | 혁신제품에 적용된 유사기술이 없는 경우 | 64 | 67.4 |
|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력이 탁월한 경우 | 31 | 32.6 |
| | 계 | 95 | 100.0 |

주: 2025년말 기준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유형별로 1차 연장률이 하락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향후 1차 연장률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1차 연장률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③ 소극적인 지정 취소 관리

정부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한 혁신제품 중 지정 요건 미흡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29개(1.1%)에 불과하고, 지정 규모가 상당한 부처에서 취소가 전혀 없는 등 사후관리와 퇴출기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지정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지정 취소는 전체 혁신제품 지정 누계 2,774개 중 29개(1.1%)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지정 취소는 2019~2020년에 4개, 2021년 10개, 2022년 8개, 2023년 5개, 2024년 2개 제품이며, 2025년 지정분 중에서는 지정 취소된 제품이 없다.

[연도별 혁신제품 취소 현황]

(단위: 개, %)

| 지정연도 | 신규지정(A) | 취소 | |
|-----------|---------|-------|---------|
| | | 개수(B) | 비율(B/A) |
| 2019~2020 | 345 | 4 | 1.2 |
| 2021 | 623 | 10 | 1.6 |
| 2022 | 606 | 8 | 1.3 |
| 2023 | 284 | 5 | 1.8 |
| 2024 | 422 | 2 | 0.5 |
| 2025 | 494 | - | - |
| 합계 | 2,774 | 29 | 1.1 |

자료: 조달청

앞에서 살펴본 자료에서 혁신제품 지정 취소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공급자제 안형 15개(2.1%), 유형1 11개(0.6%), 스카우터추천형 2개(1.3%), 수요자제안형 1개(0.9%)이다. 혁신제품 지정이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취소율은 전 유형에 걸쳐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 혁신제품이 최초심사 및 연장심사를 거치면서 장기간 혁신성·공공성 등 지정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되나,⁴²⁾ 최대 6년의 지정기간 중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사유로 한 사후적 퇴출 기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부처별로 살펴 보면, 지정 취소는 16개 부처 중 6개 부처에서만 발생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조달청 18개(취소율 1.9%), 지식재산처 5개(2.4%), 중소벤처기업부 4개(0.7%),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각 1개(0.5%, 0.3%) 순이다. 지식재산처는 누적 지정 205개 중 5개가 취소되어 취소율이 2.4%로 가장 높다. 나머지 10개 부처는 취소 건수가 0건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적 퇴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지정건수 116개), 농림축산식품부(7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7개) 등 지정 규모가 적지 않은 부처에서도 취소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 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혁신제품 지정에 집중한 나머지 취소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정 부처 차원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혁신제품 지정 누계 건수 대비 지정 취소 건수가 낮은 것에 대하여 조달청은 혁신제품 최초심사 및 연장심사 시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적기심의를 통한 지정 소요기간 단축 필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현재 18명이고 연간 회의개최 횟수는 4~6회 정도에 불과하여 편성된 회의경비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참여기업들이 혁신제품 신청 후 지정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불만이 있고, 향후 정부가 혁신제품 지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 수를 늘리는 한편 위원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여 적기심의를 통해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등에 따라 [유형 1] 및 [유형 2]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을 최종적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조달 관련 정책·제도 마련,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의결기구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6년(5월 기준)까지 구성된 실제 위원 수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3명이었던가 2022년에 15명으로 늘어났고, 2024년 17명, 2026년 1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위원 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난 것은 혁신제품 지정 건수 증가에 따라 혁신제품 신규 지정 등 심의안건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도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5. |
|--------|--------|------|------|------|------|------|---------|
| 구성 인원수 | 13 | 13 | 15 | 15 | 17 | 17 | 18 |
| 법정인원수 | 20명 이내 | | | | | | |

주: 인원 수는 각 연도말 기준임. 2026년은 5월말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동 위원회의 연도별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혁신제품 지정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6년 5월말까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개최실적은 총 14회(대면회의 11회, 서면회의 3회), 분과위원회 실적은 총 15회(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6회)에 불과하다. 연간 회의개최 건수는 1건(2020년), 4건(2022년), 5건(2024년), 6건(2021, 2023, 2025년)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 연도 | 계 | 본회의 | | | 분과위원회 | | |
|---------|----|-----|------|------|-------|------|------|
| | | 계 | 대면회의 | 서면회의 | 계 | 대면회의 | 서면회의 |
| 2020 | 1 | 1 | 1 | - | - | - | - |
| 2021 | 6 | 1 | 1 | - | 5 | 5 | - |
| 2022 | 4 | 2 | 2 | - | 2 | 2 | - |
| 2023 | 6 | - | - | - | 6 | 1 | 5 |
| 2024 | 5 | 4 | 3 | 1 | 1 | 1 | - |
| 2025 | 6 | 5 | 3 | 2 | 1 | - | 1 |
| 2026.5. | 1 | 1 | 1 | - | - | - | - |
| 합계 | 29 | 14 | 11 | 3 | 15 | 9 | 6 |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같이 연간 회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경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또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00만원에서 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같은 기간 5년간 평균집행률은 50.7%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⁴³⁾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회의개최 경비임에도 절반 이상이 미집행된 것은 당초 계획된 회의가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43) 2026년도 편성예산은 2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증액편성되었다.

[연도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

| 연도 | 예산액(A) | 집행액(B) | 집행률 (B/A) |
|------|---------|--------|--------------|
| | 회의경비 등 | 회의경비 등 | |
| 2021 | 35,000 | 19,113 | 54.6 |
| 2022 | 31,000 | 16,608 | 53.6 |
| 2023 | 18,200 | 8,269 | 45.4 |
| 2024 | 17,600 | 8,400 | 47.7 |
| 2025 | 17,600 | 8,138 | 46.2 |
| 합계 | 119,400 | 60,528 | 50.7 |

주: 2020년에는 예산 미편성.

자료: 재정경제부

이와 같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평균 분기당 1회의 빈도로 개최될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절차의 병목(bottleneck)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한 후 기술검증·수요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심의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연 5회 정도로 그친다면 대기 기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조달청이 실시한 「2025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참여기업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후 기술검증을 통해 혁신제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수요조사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등 다른 절차로 인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달청은 향후 지정 건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보다 자주 개최하여 연간 개최횟수를 늘려 지정기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동 위원회 위원 수가 18명인데, 관련 법률에 따라 20인 이내까지 가능하므로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의를 위해 위원 수 또한 늘릴 필요가 있다.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㉔ 신청서류 준비 부담정도 3.76 68.99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참여기업의 만족도]

| 조사항목 | 표준편차 | 평균값 ²⁾ | 환산(100) |
|--------------------------|------|-------------------|---------|
| ① 정보 획득 용이성 | 0.90 | 3.79 | 69.87 |
| ② 신청서류 준비 부담정도 | 0.86 | 3.76 | 68.99 |
| ③ 지정 소요 기간 ¹⁾ | 0.83 | 3.57 | 64.18 |
| ④ 지정관련 문의사항 대응도 | 0.89 | 4.05 | 76.25 |
| ⑤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 역할 | 0.94 | 3.90 | 72.41 |
| ⑥ 평가운영의 전문성 | 0.85 | 4.02 | 75.54 |
| ⑦ 평가운영의 공정성 | 0.82 | 4.17 | 79.22 |
| ⑧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 0.86 | 4.04 | 76.00 |
| 종합 만족도 | 0.87 | 3.91 | 72.81 |

주: 1) 구체적으로, 참여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부터 지정까지 소요 기간이 과다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2)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임

자료: 조달청, 「2025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25.11.

나. 혁신제품 구매 및 사용 단계

(1) 적정수준의 시범구매 체결률 설정 필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2,774개 중 시범구매를 실시한 제품은 1,084개로 시범구매 체결률이 39.1%로 나타났는데, 조달청은 이러한 시범구매 체결률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시범구매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시범구매 체결률과 그에 따른 투입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규모는 사업 초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여 양적으로는 뚜렷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2020년 4,716억원에서 2021년 6,223억원, 2022년 8,327억 원, 2023년 9,22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1조 22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조 976억원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공공구매액은 총 4조 9,69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혁신제품 공공구매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9~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공공구매액 | 4,716 | 6,223 | 8,327 | 9,229 | 10,220 | 10,976 | 49,691 |

자료: 조달청

상기 공공구매 추이 표는 공공부문의 시범구매와 후속구매를 포함한 것인데,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 실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혁신제품 지정 후 시범구매를 실시한 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2,774개 제품 중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가 실시된 제품 수는 1,084개로, 시범구매 실시 비율은 39.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시범구매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2,738억 600만원이다.

[혁신제품 지정연도별 시범구매 실적(2019~2025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혁신제품 지정 수 | | 66 | 279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 시범 구매 | 계약건수 (제품 수) | 58 | 151 | 299 | 297 | 119 | 152 | 8 | 1,084 |
| | 금액 | 8,115 | 54,594 | 79,060 | 64,808 | 31,805 | 33,611 | 1,814 | 273,806 |

주: 1. 계약 건수와 금액은 혁신제품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였는데, 해당연도에 지정된 제품이 2019~2025년(7년간) 계약된 건수와 금액을 나타낸 것임. 이에 따라 계약건수와 금액은 연도 단위와 일치하지 않음

2. 1개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했다라도 계약건수(제품 수)는 1개로 계산하여 중복을 제거함

자료: 조달청

다음은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 중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한 제품 수의 비율(이하 '체결률')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혁신제품의 체결률은 사업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합계 체결률을 보면, 2019년에 지정된 혁신제품 중 87.9%가 시범구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0년 지정 제품은 54.1%를 기록한 후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시범구매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제품이 절반 이상에 달하며, 지정된 제품수가 증가하면서 시범구매에 선정되지 못하는 비율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상세 실적(2019~2025년)]

(단위: 건, %)

| 구분 | | 혁신제품 지정연도 | | | | | | |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유형1 | 지정(A) | - | 186 | 458 | 414 | 172 | 282 | 303 | 1,815 |
| | 계약(B) | - | 72 | 166 | 161 | 49 | 71 | 1 | 520 |
| | 체결률(B/A) | - | 38.7 | 36.2 | 38.9 | 28.5 | 25.2 | 0.3 | 28.7 |
| 유형2 (공급자) | 지정(A) | 66 | 86 | 132 | 149 | 66 | 79 | 121 | 699 |
| | 계약(B) | 58 | 73 | 109 | 101 | 33 | 44 | 2 | 420 |
| | 체결률(B/A) | 87.9 | 84.9 | 82.6 | 67.8 | 50.0 | 55.7 | 1.7 | 60.1 |
| 유형2 (수요자) | 지정(A) | - | 7 | 29 | 19 | 15 | 24 | 15 | 109 |
| | 계약(B) | - | 6 | 21 | 15 | 13 | 16 | 1 | 72 |
| | 체결률(B/A) | - | 85.7 | 72.4 | 78.9 | 86.7 | 66.7 | 6.7 | 66.1 |

(단위: 건, %)

| 구분 | | 혁신제품 지정연도 | | | | | | | 합계 |
|---------------------|----------|-----------|------|------|------|------|------|------|-------|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유형2 (스카우터 추천) | 지정(A) | - | 0 | 4 | 24 | 31 | 37 | 55 | 151 |
| | 계약(B) | - | 0 | 3 | 20 | 24 | 21 | 4 | 72 |
| | 체결률(B/A) | - | - | 75.0 | 83.3 | 77.4 | 56.8 | 7.3 | 47.7 |
| 합계 | 지정(A) | 66 | 279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 | 계약(B) | 58 | 151 | 299 | 297 | 119 | 152 | 8 | 1,084 |
| | 체결률(B/A) | 87.9 | 54.1 | 48.0 | 49.0 | 41.9 | 36.0 | 1.6 | 39.1 |

주: 1. 각 연도말 기준

2. 지정 건수 및 계약 건수는 혁신제품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자료: 조달청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1의 체결률이 가장 저조한데, 2020년 38.7%에서 2024년 25.2%로 하락하여 7개년 평균 체결률은 28.7%이다. 유형2(공급자 제안형)는 사업 초기에는 체결률이 87.9%(2019년)~84.9%(2020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55.7%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2(수요자 제안형)의 체결률은 2020년 85.7%, 2023년 86.7%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24년에는 66.7%로 하락하였다. 유형2(스카우터추천형) 역시 2021년 및 2022년에 각각 75.0%, 83.3%였다가 2024년에 56.8%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체결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가 사업 초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범구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편성된 예산으로 모든 혁신제품을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전체 유형의 7개년간 합계 체결률이 39.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범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조달청 예산)이 투입되므로, 지정된 모든 혁신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범구매를 실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효과가 큰 제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9년에 도입된 혁신조달 제도가 7년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 지정 제품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시범구매를 실시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에

대한 분석이나 기준 설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체결률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지정된 혁신제품이 초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적극적인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혁신제품 확산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즉 39.1%라는 체결률이 재정상황과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만일 체결률 수준이 과도하게 낮게 나타난 것이라면, 그 이유가 온전히 예산상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수요기관의 구매 유인 부족이나 매칭 기능의 미흡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청은 2026년 이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를 해마다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의 경우 2026년도말 누계 3,280개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6,280개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범구매 건수 및 소요예산 또한 확대할 계획인데, 2026년도 213건을 시범구매하기 위해 639억원이 편성되었고, 2032년에는 800건을 시범구매하기 위해 2,40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계획(2026~2032년)]

(단위: 백만원, 개)

| 구분 |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
| 혁신제품 지정 수 ¹⁾ | | 3,280 | 3,780 | 4,280 | 4,780 | 5,280 | 5,780 | 6,280 |
| 시범구매 ²⁾ | 소요예산 | 63,900 | 90,000 | 120,000 | 150,000 | 180,000 | 210,000 | 240,000 |
| | 건수 (제품 수) | 213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주: 1) 각 연도 말 기준 누계임

2) 시범구매 금액은 해외 시범구매 예산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조달청

따라서 조달청은 2019년부터 시작한 시범구매 사업의 시범구매 실시기준, 구매건수, 체결률, 구매 미실시 사유,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시범구매 대상범위 및 체결률을 설정하고 이를 향후 사업추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율 향상 필요

첫째, 시범구매를 실시한 혁신제품 중 수요기관의 후속구매로 이어진 제품의 비중이 69.3%로 나타났는데, 후속구매율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조달청은 후속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후속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2025년 기간 동안 혁신제품 유형별로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7년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총 2,774개 가운데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한 제품 수를 연도별로 합산하면 1,209개⁴⁴⁾로 전체 혁신제품 중 43.6%가 시범구매로 이어졌다. 또한 시범구매가 실시된 1,209개 제품 중에서 수요기관이 자체예산으로 후속구매를 한 제품의 종류는 663개로 시범구매 대비 54.8%에 그치고 있다. 즉, 시범구매가 이루어진 제품의 약 절반(546개)은 수요기관의 자체예산에 의한 본 구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된 제품 중 [유형 1]에서 시범구매 제품 수 589개 중 317개(53.8%)만이 후속구매로 이어져 후속구매로의 전환율이 가장 낮았다. [유형 2] 공급자제안형은 543개 중 301개(55.4%), [유형 2] 수요자제안형은 77개 중 45개(58.4%)가 후속구매로 연결되었다. 세 유형 모두 전환율이 50%대에 머물러 있어 혁신제품의 유형과 거의 무관하게 시범구매에서 후속구매로의 전환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기관수별로 살펴보면, 후속구매 기관수는 시범구매 기관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 공공기관별로 혁신제품 의무 구매비율이 설정되어 있어, 조달청으로부터 시범구매 지원을 받지 못한 수요기관에서도 혁신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 혁신제품에 대하여 복수의 기관이 구매하기 때문에 후속구매 기관수는 시범구매에 비해 많아진다. 그런데 유형별 기관수를 보면, [유형 1]의 경우 1,248개에서 8,680개(약 7.0배), [유형2] 공급자제안형은 1,266개에서 7,779개(약 6.1배), [유형2] 수요자제안형은 122개에서 5,082개(약 41.7배)로 증가하여, 수요자 제안형의 후속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44)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제품에 대한 중복구매를 제외하고 시범구매가 이루어진 혁신제품의 수는 1,084개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연도별 시범구매 건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집계함에 따라 동일 제품을 여러 연도에 걸쳐 중복구매한 경우 이를 모두 별도의 제품 수로 중복산정함에 따라 1,209개로 집계되었다. 제품 수를 1,084개로 볼 경우 전체 제품수 대비 시범구매 제품 수의 비율은 39.1%이다.

[유형별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후속구매 비교(2019~2025)]

(단위: 개)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수 | 시범구매(A) | | 후속구매(B) | | B-A | |
|----------|--------------|---------------------|-------|---------|--------|---------|--------|
| | | 제품 종류 수 | 기관 수 | 제품 종류 수 | 기관 수 | 제품 종류 수 | 기관 수 |
| 유형1 | 1,815 | 589 | 1,248 | 317 | 8,680 | △272 | 7,432 |
| 유형2(공급자) | 850 | 543 | 1,266 | 301 | 7,779 | △242 | 6,513 |
| 유형2(수요자) | 109 | 77 | 122 | 45 | 5,082 | △32 | 4,960 |
| 합계 | 2,774 | 1,209 ¹⁾ | 2,636 | 663 | 21,541 | △546 | 18,905 |

주: 1) 시범구매한 제품 수는 총 1,084개이나, 이 표에서는 동일 제품을 여러 연도에 걸쳐 구매한 경우 이를 모두 제품 수로 중복산정함에 따라 1,209개로 집계됨

1. 2026년 2월말 기준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여기서 시범구매 제품 수 대비 후속구매 제품 수를 비교할 때, 2025년에 시범구매가 실시된 제품들을 제외하고 후속구매율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통상 시범구매 사용기간이 1년이므로, 2025년에 시범구매한 제품들은 시범사용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수요기관들이 후속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아직 후속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5년 시범구매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구매가 이루어진 제품들로 한정하여 시범구매 실적 대비 후속구매 실적을 비교해 보면, 시범구매 제품수 907개 중 후속구매로 이어진 제품수는 629개로 후속구매 비율은 69.3%로 나타나, 2025년을 포함하였을 때의 후속구매 비율 54.8%보다 14.5%p 높게 나타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이후 후속구매 계약 실적]

(단위: 개, 억원, %)

| 구분 | 시범구매 (‘19년~’24년) | |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19년~’25년 12월) | | | | |
|------|---------------------|--------|--------------------------------|---------|--------|---------|-------|
| | 제품수(A) | 구매액(B) | 제품수(C) | 비율(C/A) | 구매액(D) | 비율(D/B) | |
| 유형 1 | 428 | 995 | 301 | 70.3 | 5,073 | 509.8 | |
| 유형 2 | 공급자 | 418 | 1,044 | 283 | 67.7 | 5,543 | 530.9 |
| | 수요자 | 61 | 171 | 45 | 73.8 | 1,566 | 915.8 |
| 계 | 907 | 2,209 | 629 | 69.3 | 12,182 | 551.5 | |

주: 2019~2024년까지 시범구매가 실시된 혁신제품에 대한 2025년말 기준 후속구매 실적임
자료: 조달청

시범구매한 제품 중 후속구매가 이루어진 제품의 비율을 69.3%로 보더라도 여전히 후속구매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이 30.7% 존재하므로, 시범구매를 하였음에도 수요기관이 자체예산으로 후속구매를 하지 않는 사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이 2025년에 혁신제품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를 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사된 제품 330개 중 후속구매를 위한 예산 부족이 143개(43.3%) 제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범구매를 통해 이미 수요가 충족되었다는 응답이 85개 제품(25.8%), 가격 불만족 37개(11.2%), 제품 성능 불만족 26개(7.9%), 유지관리 불만족 19개(5.8%) 등이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미실시 사유]

(단위: 개, %)

| 구분 | 계 | 추가 구매 예산 부족 | 시범구매를 통한 수요 충족 | 제품 가격 만족도 부족 | 제품 성능 만족도 부족 | 제품 유지관리 만족도 부족 | 기타 |
|------|-------|-------------|----------------|--------------|--------------|----------------|-----|
| 제품 수 | 330 | 143 | 85 | 37 | 26 | 19 | 20 |
| 비율 | 100.0 | 43.3 | 25.8 | 11.2 | 7.9 | 5.8 | 6.0 |

주: 2025.12.31.기준임
자료: 조달청

한편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시범구매 금액의 경우 2019년 약 23억원에서 시작하여 2020년 280억원, 2021년 441억원, 2022년 460억원, 2023년 479억원, 2024년 526억원, 2025년 529억원으로 7년간 누계 2,73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비한 후속구매 금액은 2019년 366억원에서 2021년 3,711억원, 2023년 3,173억원이며, 7년간 누계는 1조 3,020억원으로 시범구매 대비 약 4.8배이다.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후속계약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시범구매 연도 | 유형 | 지정건수 | 시범구매 | | | 후속구매 ¹⁾ (시범구매 제외) | | |
|---------|----------|------|------|-----|-------|------------------------------|-----|--------|
| | | | 제품수 | 기관수 | 금액 | 제품수 | 기관수 | 금액 |
| '19 | 유형1 | - | - | - | - | - | - | - |
| | 유형2(공급자) | 66 | 28 | 35 | 2,284 | 22 | 791 | 36,648 |
| | 유형2(수요자) | - | - | - | - | - | - | - |
| | 소계 | 66 | 28 | 35 | 2,284 | 22 | 791 | 36,648 |

(단위: 개, 백만원)

| 시범 구매 연도 | 유형 | 지정건수 | 시범구매 | | | 후속구매 ¹⁾ (시범구매 제외) | | |
|----------------|----------|-------|---------------------|-------|---------|------------------------------|--------|-----------|
| | | | 제품수 | 기관수 | 금액 | 제품수 | 기관수 | 금액 |
| '20 | 유형1 | 186 | 14 | 87 | 8,604 | 14 | 427 | 37,940 |
| | 유형2(공급자) | 86 | 52 | 203 | 19,431 | 45 | 2,106 | 129,210 |
| | 유형2(수요자) | 7 | - | - | - | - | - | - |
| | 소계 | 279 | 66 | 290 | 28,035 | 59 | 2,533 | 167,150 |
| '21 | 유형1 | 458 | 69 | 154 | 18,998 | 57 | 2,155 | 165,894 |
| | 유형2(공급자) | 136 | 79 | 209 | 19,695 | 53 | 1,478 | 105,957 |
| | 유형2(수요자) | 29 | 18 | 29 | 5,369 | 14 | 4,271 | 99,200 |
| | 소계 | 623 | 166 | 392 | 44,062 | 124 | 7,904 | 371,051 |
| '22 | 유형1 | 414 | 83 | 236 | 21,371 | 73 | 3,139 | 106,856 |
| | 유형2(공급자) | 173 | 75 | 188 | 22,625 | 59 | 1,809 | 154,743 |
| | 유형2(수요자) | 19 | 8 | 12 | 2,053 | 8 | 77 | 9,504 |
| | 소계 | 606 | 166 | 436 | 46,049 | 140 | 5,025 | 271,103 |
| '23 | 유형1 | 172 | 143 | 261 | 23,060 | 106 | 2,234 | 180,244 |
| | 유형2(공급자) | 97 | 84 | 192 | 20,694 | 55 | 787 | 95,131 |
| | 유형2(수요자) | 15 | 18 | 25 | 4,106 | 13 | 617 | 41,904 |
| | 소계 | 284 | 245 | 478 | 47,860 | 174 | 3,638 | 317,279 |
| '24 | 유형1 | 282 | 119 | 217 | 27,439 | 59 | 563 | 30,844 |
| | 유형2(공급자) | 116 | 100 | 211 | 19,641 | 49 | 500 | 48,194 |
| | 유형2(수요자) | 24 | 17 | 28 | 5,537 | 10 | 85 | 9,613 |
| | 소계 | 422 | 236 | 456 | 52,617 | 118 | 1,148 | 88,651 |
| '25 | 유형1 | 303 | 161 | 293 | 26,236 | 8 | 162 | 14,163 |
| | 유형2(공급자) | 176 | 125 | 228 | 21,819 | 18 | 308 | 30,502 |
| | 유형2(수요자) | 15 | 16 | 28 | 4,845 | 8 | 32 | 5,448 |
| | 소계 | 494 | 302 | 549 | 52,900 | 34 | 502 | 50,113 |
| 합계 | | 2,774 | 1,209 ²⁾ | 2,636 | 273,807 | 671 | 21,541 | 1,301,995 |

주: 1) 후속구매 현황은 2026년 2월말 기준임

2) 시범구매한 제품 수는 총 1,084개이나, 이 표에서는 동일 제품을 여러 연도에 걸쳐 구매한 경우 이를 모두 제품 수로 중복산정함에 따라 1,209개로 집계됨

1. 후속계약 자료는 나라장터시스템상 등록된 전자계약 체결 건을 집계한 자료로, ① 계약서 작성 생략, ② 수기계약서 작성, ③ 나라장터 외 자체 계약업무시스템 계약체결 등의 사유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회 불가능한 자료는 미반영

2. 스카우터 추천형은 유형2(공급자)에 포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여기서 후속구매 금액이 시범구매 대비 4.8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시범구매의 마중물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즉,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제품 의무구매 목표 비율이 설정되어 있어 동일 혁신제품에 대해 복수의 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의 기관이 대규모로 구매하는 사례도 있어, 다양한 종류의 혁신제품이 다수의 기

관에서 고르게 구매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⁵⁾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경우 후속구매율 수준이 적정한지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사업을 찾기 어려워 후속구매율 69.3%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인증제도⁴⁶⁾와 같이 인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제품으로 인증(지정)된 제품이 공공구매로의 연계를 통해 초기시장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단순히 혁신제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정된 제품이 실제 구매와 사용으로 이어져야만 정책적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여부는 동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시범구매에서 후속구매로의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사업의 정책효과는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효과가 사라지는 한계를 갖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시범구매를 통해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한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후속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시범구매 계약 체결 시 수요기관이 반드시 후속구매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후속구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시범구매 수요조사 시 후속구매 의사를 명시한 기관의 경우 시범구매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구매한 제품의 본구매 전환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달청은 시범구매가 후속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5) 여기서 후속구매 금액의 상당 부분은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제품에 대한 신뢰 형성과 확산의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기관별 혁신제품 의무구매목표를 달성에 따른 강제적 수요의 결과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6)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CCM) 등은 해당 제품 또는 기업이 정부가 정한 인증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공시하는 것으로, 정부인증 여부 자체가 목적이다.

[시범사용 시 후속구매 우대 현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 시 우대

1. 조달청 시범구매 수량과 함께 기관이 자체 구매할 수량을 명시한 경우
* 시범구매와 함께 자체 구매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구매계획서 등 증빙자료 제출)
2. 시범사용 후 품질·성능 '충족'시 추가 구매 의사를 명시(확약)한 경우
* 시범구매(시범사용) 이후 추가 구매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관련 내용 명시)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후속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속구매 단계에서의 사후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과 각 부처는 후속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제품이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지정단계에서 진입통제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시범구매 이후 후속구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요기관의 구매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애초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공공현장의 문제 해결 수요, 기존 제품 대비 차별성, 가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계속 구매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기술적으로는 새롭더라도 수요기관의 실제 업무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존 제품에 비해 성능·안전성·편의성·경제성 측면의 비교우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범구매를 통해 일회성 사용 기회가 제공되더라도 후속구매로 전환되기 어렵다.

특히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조달청 예산에 의한 시범구매 단계와 달리 후속구매 단계에서는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제품의 필요성, 가격 적정성, 유지관리 부담,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구매를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구매율이 낮은 제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시범구매 이후 단계의 관리 미흡뿐만 아니라 지정 심사 단계에서 공공성, 혁신성, 시장성 및 구매 적합성을 충분히 선별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를 하지 않은 사유 가운데 예산 부족과 시범구매를 통한 수요충족을 제외하면, 가격 불만족(11.2%), 제품 성능 불만족(7.9%), 유지관리 만족도 부족(5.8%) 등이 전체의 약 24.9%를 차지하였다. 이는 후속구매로 전환되지 못하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후속구매 단계의 유인 부족이 아니라, 지정 단계에서 시장성·품질·가격경쟁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제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미실시 사유]

(단위: 개, %)

| 구분 | 계 | 추가 구매 예산 부족 | 시범구매를 통한 수요 충족 | 제품 가격 만족도 부족 | 제품 성능 만족도 부족 | 제품 유지관리 만족도 부족 | 기타 |
|------|-------|----------------|-------------------|-----------------|-----------------|-------------------|-----|
| 제품 수 | 330 | 143 | 85 | 37 | 26 | 19 | 20 |
| 비율 | 100.0 | 43.3 | 25.8 | 11.2 | 7.9 | 5.8 | 6.0 |

주: 2025.12.31.기준임
자료: 조달청

후속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범구매 이후의 홍보, 수요기관 매칭, 구매 독려 등 사후적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달청과 각 지정기관은 혁신제품 지정 시 제품의 혁신성은 물론 시장성과 가격경쟁력, 수요기관의 후속구매 가능성 등을 사전에 내실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후속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제품이 지정 단계에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진입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지정 이후에도 지정요건 유지 여부와 시장성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간 후속구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제품을 적기에 정비할 필요도 있다.

(3) 공공구매 실적이 전무한 제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774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었으나 공공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이 892개(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효과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구매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2,774개 제품 중 조달청 시범구매 또는 수요기관 자체구매 등 구매실적이 1회 이상 있는 제품 수는 1,882개로 전체 제품 수의 67.8%에 해당된다. 공공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제품은 892개로 32.2%를 차지하였다. 2025년에 지정된 제품(494개)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범구매 또는 자체구매 실적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형 2]의 경우 공급자제안형과 수요자제안형의 제품 수

대비 구매율이 각각 74.8%, 74.3%이고, [유형 1] 제품은 구매율이 64.2%에 그치고 있어 [유형 1] 제품이 상대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지정 후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유형별)]

(단위: 개, %)

| 유형 | |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A) | 구매실적이 있는 제품 수(B) |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 수 | 구매율 (B/A) |
|-----|---------|--------------------|---------------------|------------------|--------------|
| 유형1 | | 1,815 | 1,165 | 650 | 64.2 |
| 유형2 | 공급자 제안형 | 850 | 636 | 214 | 74.8 |
| | 수요자 제안형 | 109 | 81 | 28 | 74.3 |
| 합계 | | 2,774 | 1,882 | 892 | 67.8 |

주: 1. 2019~2025년 누계 기준임

2. 시범구매 또는 본구매 중 1회 이상 구매한 경우 구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봄

자료: 조달청

이와 같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였음에도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단순한 구매 실적의 부진을 넘어 혁신제품 조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적 목표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지정 이후 상당 기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해당 제품의 혁신성이 소멸될 위험을 수반하며, 이는 곧 지정 자체의 정책적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혁신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기술적 우위 또는 차별성, 즉 혁신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데, 이러한 혁신성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이 제한적이다. 급변하는 기술 변화 추세 속에서 특정 시점에 혁신적이라고 평가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상용화 및 시장 진입이 지연될 경우 후발 기술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거나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혁신제품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서, 아직 상용화 수준이 낮고 시장 인지도가 부족하여 수요기관의 실제 수요로 이어지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혁신제품이 상당 기간 구매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술의 혁신성이 감소하여 구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들이 누적될 경우,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동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미구매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조달청과 각 부처는 혁신제품 지정 후 일정 기간 내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으나 공공시장에서 아무런 수요도 창출하지 못한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공공성·혁신성 평가가 과연 충실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정부는 혁신성·공공성·조달적합성 등 혁신제품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재검토하는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제품 지정 시 기술의 수명주기와 시장 진입 가능성을 충실하게 평가하여 적시성 있는 구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 단계에서부터 구매 계획과의 연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구매경로 비중 조정 검토 필요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① 시범구매만 ② 자체구매만 ③ 시범구매와 자체구매를 모두 실시한 경우 등 세 가지 구매경로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에 따라 구매경로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유형에 따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구매경로 비중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구매실적이 있는 1,882개 제품을 구매경로별로 분해하면 시범구매만 이루어진 제품 286개(10.3%), 자체구매만 이루어진 제품 799개(28.8%), 시범구매와 자체구매가 모두 이루어진 제품 797개(28.7%)이다. 시범구매와 자체구매 실적이 모두 있는 제품의 비중(28.7%)과 시범구매 없이 자체구매만 이루어진 제품 비중(28.8%)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혁신제품 지정 후 구매실적(2019~2025년)]

(단위: 개, %)

| 구분 | 혁신제품 지정 수 (A) | 구매실적 있음 | | | | 구매실적 없음 (A-E) | |
|-----|---------------|------------|------------|-------------|--------------|---------------|------------|
| | | 시범구매만 (B) | 자체구매만 (C) | 시범+자체구매 (D) | 소계 (E=B+C+D) | | |
| 유형1 | 1,815 | 141 (7.8) | 645 (35.5) | 379 (20.9) | 1,165 (64.2) | 650 (35.8) | |
| 유형2 | 공급자 제안형 | 850 | 125 (14.7) | 145 (17.1) | 366 (43.1) | 636 (74.8) | 214 (25.2) |
| | 수요자 제안형 | 109 | 20 (18.3) | 9 (8.3) | 52 (47.7) | 81 (74.3) | 28 (25.7) |
| 합계 | 2,774 | 286 (10.3) | 799 (28.8) | 797 (28.7) | 1,882 (67.8) | 892 (32.2) | |

- 주: 1. 시범구매만 : 조달청 지원으로 시범구매만 실시한 제품 수
 2. 자체구매만 : 수요기관이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제품 수(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사례 제외)
 3. 시범+자체구매 : 시범구매와 자체구매 실적이 동시에 있는 제품 수
 4. 괄호 안의 수치는 유형별 지정 수 대비 구매한 제품 수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유형 1]의 경우 자체구매만 이루어진 비중이 35.5%로 가장 높은 반면, 시범·자체구매가 모두 이루어진 비중은 20.9%, 시범구매만 이루어진 비중은 7.8%이다. 반면 [유형 2] 중 공급자 제안형은 시범·자체구매가 모두 이루어진 비중이 43.1%로 가장 높고, 자체구매만이 17.1%, 시범구매만이 14.7% 순으로 나타나며, 수요자 제안형은 시범·자체구매가 모두 이루어진 비중이 47.7%로 높고 시범구매만이 18.3%, 자체구매만이 8.3%이다.

[유형 2](공급자제안형+수요자제안형)의 경우 시범구매와 자체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제품이 40%를 상회한 반면, [유형 1]은 시범구매와 자체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진 제품보다 자체구매만 실시한 제품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형 1]의 경우 제품수에 비해 시범구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참여부처가 자체예산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 1]은 시범구매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범구매의 한계적 효과가 [유형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고, [유형 2] 제품에서는 시범구매가 자체구매로 이어지는 견인장치로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형 1] 제품의 경우 시범구매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각 부처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구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참여부처는 조달청 시범구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자신들이 추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자체예산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달청과 각 참여기관은 혁신제품 유형별로 구매경로에 따른 구매실적을 비교·분석하여,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각 유형에 따라 시범구매 또는 자체구매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총 구매목표액 기준으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표달성 여부를 기관별로 보면 절반 정도의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기관 유형별 편차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달성 기관을 중심으로 구매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는 각 기관별로 물품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혁신제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여, 혁신제품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 기관별로 구매목표율은 2026년도에 그 비중을 상향조정하였는데, 2026년도 기준으로 목표율은 중앙부처 1.4%, 지방정부 1.9%, 공공기관 2.2%, 지방공기업 2.8%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각 기관 유형별 연간 예산에서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년 목표달성률을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율]

(단위: %)

| 구분 | 중앙부처 | 지방정부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
| 2025년 | 1.0 | 1.5 | 1.7 | 1.2 |
| 2026년 | 1.4 | 1.9 | 2.2 | 2.8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목표 대비 구매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목표달성률이 2019년 및 2020년 113.0%, 2025년 137.5%로,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달성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19~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혁신제품 구매목표(A) | 4,173 | 5,476 | 6,853 | 6,808 | 7,698 | 7,984 |
| 혁신제품 구매실적(B) | 4,716 | 6,223 | 8,327 | 9,229 | 10,220 | 10,976 |
| 혁신제품 구매 | 1,573 | 2,452 | 4,157 | 7,615 | 9,756 | 10,068 |
| 혁신지향 구매 ¹⁾ | 2,863 | 3,247 | 3,649 | 1,072 | - | - |
| 시범구매 | 280 | 524 | 522 | 542 | 464 | 908 |
| 목표달성률(B/A) | 113.0 | 113.6 | 121.5 | 135.6 | 132.8 | 137.5 |

주: 1) 혁신지향 구매란 기술개발제품, 공공부문 R&D 결과물 등 혁신제품이 아닌 유사한 제품을 구매한 것을 말하는데, 2024년도에 폐지되었음

자료: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기준으로 달성 현황을 살펴 보면, 구매목표제 대상기관 수 대비 목표달성 기관 수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달성률을 보면, 2020년 18.8%였다가 2021년 35.5%, 2022년 46.5%, 2025년 54.7%로 상승하였으나, 대상기관 중 약 절반에 해당되는 기관만이 구매목표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혁신제품 ‘목표 구매액’을 기준으로 하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대상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목표달성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대규모 구매기관의 초과달성 금액이 다수 미달성 기관의 구매실적을 상쇄하여 총액기준으로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든 기관의 구매액을 합한 구매액 총량에서는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지만 이는 일부 기관의 대량구매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 구매목표제 대상기관 중 절반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수기관에서의 혁신제품 수요 저변 확대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기관 유형별로 목표 달성률의 편차가 상당하므로 기관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2025년의 경우 기관유형별 목표달성률을 보면, 중앙부처가 56.3%, 지방자치단체가 68.1%, 공공기관 33.7%, 지방공기업이 75.9%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중앙부처는 혁신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소속기관·산하기관의 구매를 견인해야 하는

정책적 위치에 있음에도, 스스로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에 가깝다는 것은 혁신조달에 대한 수요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목표설정 및 이행 점검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달성기관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20년 | | | 2021년 | | | 2022년 | | |
|--------|-------|-------|------|-------|-------|------|-------|-------|------|
| | 대상 기관 | 달성 기관 | 달성률 | 대상 기관 | 달성 기관 | 달성률 | 대상 기관 | 달성 기관 | 달성률 |
| 중앙부처 | 46 | 13 | 28.3 | 46 | 16 | 34.8 | 47 | 20 | 42.6 |
| 지방자치단체 | 295 | 32 | 10.8 | 295 | 119 | 40.3 | 295 | 175 | 59.3 |
| 공공기관 | 344 | 62 | 18.0 | 345 | 85 | 24.6 | 343 | 116 | 33.8 |
| 지방공기업 | 151 | 50 | 33.1 | 151 | 77 | 51.0 | 150 | 77 | 51.3 |
| 계 | 836 | 157 | 18.8 | 837 | 297 | 35.5 | 835 | 388 | 46.5 |
| 구분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대상 기관 | 달성 기관 | 달성률 | 대상 기관 | 달성 기관 | 달성률 | 대상 기관 | 달성 기관 | 달성률 |
| 중앙부처 | 47 | 26 | 55.3 | 47 | 27 | 57.4 | 48 | 27 | 56.3 |
| 지방자치단체 | 294 | 227 | 77.2 | 295 | 188 | 63.7 | 295 | 201 | 68.1 |
| 공공기관 | 356 | 125 | 35.1 | 356 | 126 | 35.4 | 353 | 119 | 33.7 |
| 지방공기업 | 151 | 107 | 70.9 | 158 | 126 | 79.7 | 158 | 120 | 75.9 |
| 계 | 848 | 485 | 57.2 | 856 | 467 | 54.6 | 854 | 467 | 54.7 |

자료: 재정경제부,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련 규정⁴⁷⁾에 따라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가 단순히 목표설정과 달성여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 미달성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차기 목표설정과 제품 지정 과정에 환류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구매목표제가 실질적인 혁신제품 확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47)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제5조(구매실적 점검) 재정경제부장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다. 혁신제품 상용화 및 확산 단계

(1) 공공성 강화 필요

혁신제품은 지정 단계에서 공공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데, 공공성이 우수한 제품들도 있지만 일부 제품들은 실증 결과 공공성이 미흡하여 공공구매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달청과 각 부처는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1차 평가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에 한하여 2차 평가인 혁신성 평가 대상이 된다.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 평가기준으로는 ‘공공적합성’과 ‘개발완성 수준’이 있다. 공공적합성은 다시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구매의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개발완성 수준의 경우 기술완성수준, 안전성, 규제 항목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평가한다.


① 공공성이 우수한 혁신제품 사례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중에는 교통안전·재활의료·재난대응·산업안전 등 국민 생활 밀접 영역의 공공현안을 해결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제품들이 있다.

[공공성이 우수한 혁신제품 사례]

| 지정기관 (지정연도)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주요 시범구매 | | | 비고 (제품의 우수성 등) |
|----------------|------------------------------|-----------|-------------------|-------------|---|
| | | 사용기관 | 사용기간 | 구매액 (억원) | |
| 조달청 (2020) | 안전이 강조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 경남 창원시 | '20.5~ '20.11. | 1.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제품 설치 5년 만에 40% 가량 보행자 교통 사고 감소 효과⁴⁸⁾ •동 제품을 최초 생산한 기업의 연매출 성장(지정전 12억원→지정후 163억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 |

| 지정기관 (사업연도)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주요 시범구매 | | | 비고 (제품의 우수성 등) |
|----------------|--|--|------------------|-------------|---|
| | | 사용기관 | 사용기간 | 구매액 (억원) | |
| |  <p>•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LED를 보행신호와 연동하여 녹색/녹색점멸/적색으로 표출</p> | 몽골 도로개발청 | '24.5~ '25.1 | 1.0 | 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2024년 기준으로 737억원 규모로 공공조달에서 거래되고, 다수기업이 활동 중 |
| 산업부 (2021) | <p>AI기반 협동로봇</p>  <p>•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스스로 인지하고 전류제어 기반의 충돌감지 기술로 사람과 안전하게 협업하는 로봇</p> | 해당없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등 로봇의 주요 핵심 부품 국산화로 로봇 도입 비용을 낮춰 중소제조업이나 F&B(음식료) 사업에 활용 용이 •OO치킨, 대구 무인커피점에서 커피제조 로봇으로 운영 중으로,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2022년 11월 코스닥 상장 |
| 중기부 (2021) | <p>포터블 엑스레이</p>  <p>•집속 엑스레이 발생기술⁴⁹⁾을 적용하여 기존 엑스레이보다 훨씬 낮은 방사량으로도 선명한 영상 촬영 가능</p> | 강원화천군 보건의료원 서울시립보라 매병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 '21.11~ '22.6 |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차폐시설이 필요치 않고 무게와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위급한 재난 현장이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함 •인도네시아 해외실증(6대)에 참여하였고, 인도 국가결핵퇴치프로그램에 대규모 공급계약(1,534대)을 체결하는 등 실제 수출연계 성과 창출 |
| | | 인도네시아 구루쿠루파 개발연구소 팔판개발회 | '24.6~ '25.4 | 2.0 | |

| 지정기관 (지정연도)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주요 시범구매 | | | 비고 (제품의 우수성 등) |
|----------------|---|--|-------------------|-------------|---|
| | | 사용기관 | 사용기간 | 구매액 (억원) | |
| 조달청 (2021) | <p>보행재활 로봇</p>  <p>•재활 전문 근력 보조 무동력 웨어러블 슈트로,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읽고 스스로 걷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보조함</p> | 전남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22.6.~ '23.4. | 2.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에 내장된 정밀센서와 AI 알고리즘으로 착용자의 엉덩이, 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는 힘의 변화를 실시간 분석 •제조기업은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하여 2024년 3월 코스닥 상장 |

주: 1) 공공구매 실적 없음: 시범구매 및 자체구매 실적이 모두 없는 경우를 의미함

1. 위 제품들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공공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골라 그 예시로 제시한 것임

자료: 혁신장터 제품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먼저 조달청이 2020년 지정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바닥에 설치된 LED를 보행신호와 연동해 녹색·녹색점멸·적색으로 표출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품이다. 동 제품 도입 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기업이 성장하였으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2024년 기준 약 737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공공현안 해결과 신시장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⁵⁰⁾

산업통상부가 2021년 지정한 'AI 기반 협동로봇'은 카메라를 통한 사물 인지와 전류제어 기반 충돌감지 기술을 통해 사람과 안전하게 협업할 수 있는 로봇으로,

48) 조달청 제출자료 및 제조업체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49) 동 기술은 엑스레이 빛을 사방으로 퍼지게 하지 않고 원하는 표면에 정밀하게 모아서 쓰는 것이다.

50) 한편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혁신제품 초기 공공성이 우수하여 수요가 많아 많은 지자체에 보급되었으나, 설치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잦은 고장과 이에 따른 위험성, 높은 유지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후반부의 '구매한 혁신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섹션을 참고하기 바람.

액추에이터·모터·감속기 등 주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로봇 도입 비용을 낮춤으로써 중소제조업과 F&B(음식료)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확보한 제품이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와 대구 무인커피점 등에서 커피제조 로봇으로 운영 중이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제조기업이 2022년 11월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산업 자립도 제고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동화 접근성 확대라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에 지정한 ‘포터블 엑스레이’는 집속 엑스레이 발생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엑스레이보다 현저히 낮은 방사량으로도 선명한 영상 촬영이 가능한 제품으로, 별도 차폐시설이 불필요하고 무게·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위급한 재난 현장이나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에서의 활용성이 뛰어나다. 인도 수출 연계 성과까지 창출하여 국내 재난·의료 대응뿐 아니라 국제 보건 공공현안 해결에도 기여하여 공공구매의 필요성·수요기관 구매 적합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조달청이 2021년에 지정한 보행재활 로봇은 재활 전문 근력 보조 무동력 웨어러블 슈트로서, 정밀센서와 AI 알고리즘을 통해 착용자의 엉덩이·무릎 관절에서 발생하는 힘의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걷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품이다. 전남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2.8억원 규모로 시범구매되었으며, 제조기업은 시범구매를 발판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하여 2024년 3월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재활의료라는 대국민 서비스 영역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사례에 해당한다.

② 공공성이 미흡한 혁신제품 사례

공공성이 우수한 혁신제품이 있는 반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가 적거나 수요기관에서 구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등 공공성이 미흡하여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제품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달청이 지정한 ‘인체통과형 공기정화시스템’은 공기정화를 위해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되었는데, 사용해 본 결과 성능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넓은 설치공간이 요구되는 등 사용환경상 제약과 효율성 측면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제품은 기술적 성능과 별개로 공공 수요기관의 실제 사용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고속철도 분석시스템’은 고속철도 차량에 탑재하여 지상 시설물 상태를 실시간 분석하고 장애를 조기진단하는 장비인데, 사용 가능한 기관이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 한정되어 수요 기반이 협소한 문제가 있다. 또한 구매단위당 구매규모가 비교적 커 새로운 제품 도입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이 높아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시범구매 실적이 없는 제품이다.

조달청이 지정한 ‘내진기초 파일’은 수평력에 강한 내진력을 확보하여 지진 등 재해 상황에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관급자재인데, 이 제품은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공공구매 실적이 전혀 없다. 이는 관급자재 시장의 경우 특허제품·우수제품 등 대체 가능한 제품이 시중에 다수 존재하여 동 제품의 차별적 경쟁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유사 기능의 기존 제품이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혁신제품 지정만으로는 구매전환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들이나 실제 실증 결과 공공성의 세부요건인 공공부문 구매의 적합성 및 필요성, 수요기관 사용환경의 적합성, 유사기능 제품의 존재 여부, 해당 제품의 조달시장 계약관행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공구매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경우 동 제품은 공공부문 구매를 통해 확산되지 못하고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각 유형별 혁신제품 주관부처는 지정된 혁신제품이 공공성 미흡으로 확산되지 못한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정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혁신성 강화 필요

기 지정된 혁신제품 중에는 기술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들이 있는 반면, 실제 실증 결과 성능이 입증되지 못하거나 활용범위가 특정 현장에 한정되는 등의 사유로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조달청과 각 부처는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혁신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 혁신제품 지정 시 혁신성 심사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은 공공성과 함께 혁신제품 지정의 양대 요건으로, 해당 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기술적 우위 및 시장 파급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이 혁신제품 지정 시 혁신성 세부 평가기준으로는 혁신적합성(제품의 신규성, 제품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시장성(시장규모, 파급성), 시범사용 수행역량이 있다.

실무적으로 혁신성은 해당 제품이 기존 제품 또는 기존 방식 대비 성능,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으며,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를 통해 경쟁 제품 대비 성능 우위를 수치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나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의 경우에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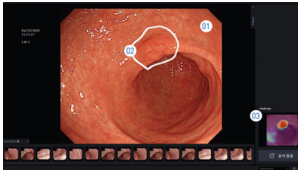
①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 사례

혁신제품 중에는 핵심기술의 독창성·해외시장 성과·국제 수상실적을 통해 혁신성을 입증한 제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보안용 카메라’는 렌즈 표면에 투명한 특수 전극 패널을 덧입혀, 센서가 오염물질을 감지하고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 이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악천후와 외부 오염으로 인한 감시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제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CES⁵¹⁾ 혁신상을 수상하여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국방부, 해수부, LH, 국내 주요기업 등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동 제품을 도입·운영 중이다.

[혁신성이 우수한 혁신제품 사례]

| 지정기관 (지정연도)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시범구매 | | | 비고 (제품의 우수성 등) |
|----------------|---------------------------|-------------|-------------------|-------------|-------------------------------|
| | | 사용기관 | 사용기간 | 구매액 (억원) | |
| 과기부 (2021) |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 적용 보안용 카메라 | 울산항만 공사, | ’23.5.~ ’23.8. | 2.3 | •악천후와 외부 오염으로 인한 감시 사각지대 문 |

51)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이다.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은 CTA가 출품 제품의 기술 혁신성, 디자인, 기능성 등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수여하는 상이다.

| 지정기관 (지정연도)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시범구매 | | | 비고 (제품의 우수성 등) |
|----------------|---|-------------------------------------|-----------------|-------------|--|
| | | 사용기관 | 사용기간 | 구매액 (억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메라 렌즈 표면에 투명한 특수 전극 패널을 덧입혀, 센서가 오염물질을 감지하고 순간적으로 전기를 보내 오염물질에 미세한 진동을 발생시켜 오염물질을 제거 | 한국해양대학교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2020~2024년 5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국방부, 해수부, 서울시, LH, 삼성, 현대 등 공공 및 민간부문 63곳에서 운영 중 |
| 조달청 (2022) | <p>촉각디스플레이 기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용 보조기기 “Dot P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인들에게 접자와 같은 텍스트 형태로만 정보 전달하던 한계를 넘어 지도, 그림 등 다양한 이미지 전달 가능⁵²⁾ | <p>인천·대전·서울·한빛맹학교, 은광학교</p> | '24.1.~'24.5. | 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스카우터)에 의해 발굴된 제품으로, 대전맹학교 등 국내 5곳, 캄보디아 1개 맹학교에서 제품 사용 •해외시장에서 성과 창출 : 미국 교육부와 300억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2023년 CES 최고혁신상 및 2026년 에디슨 어워드 금상 •동 제품 제조기업의 연 매출 성장: '22년 39억원 → '24년 131억원 |
| 조달청 (2022) | <p>위내시경 진단 보조 S/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내시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 등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 | <p>강릉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중앙보훈병원</p> | '23.11.~'24.10. | 3.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위내시경 검사 는 의료진의 숙련도에 의존해 왔음 • 인공지능 기술인 CNN 을 이용하여 이상병변 을 정확히 판별, 조기진단으로 위암 발병 예방에 기여 •조기 위암 진단 정확도가 95%로 일반 소화기 |
| | | 베트남 후에중앙병원 | '25.10.~'26.9. | 1.6 | |

| 지정기관 (지정연도)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시범구매 | | | 비고 (제품의 우수성 등) |
|----------------|-----------------|------|------|-------------|---|
| | | 사용기관 | 사용기간 | 구매액 (억원) | |
| | | | | | 내시경 전문의 평균 (76%)보다 높아, 국내 대학병원 및 검진기관 에 도입·운영 중 •2023년 CES 혁신상 수상 |

주: 위 제품들은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시 혁신성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혁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골라 그 예시로 제시한 것임
자료: 혁신장터 제품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조달청이 지정한 촉각디스플레이 기반 시각장애인 학습지원 보조기기 'Dot Pad'는 능동형 액추에이터 기술을 활용해 2,400개 점자셀이 입력 형태에 따라 돌출되도록 함으로써, 종래 점자 텍스트 전달에 국한되었던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한계를 넘어 지도·그림 등 이미지 정보까지 전달 가능하도록 한 제품이다. 민간전문가(스카우터) 발굴 제품으로, 국내 5개 맹학교 및 캄보디아 1개 맹학교에서 시범 사용되었으며, 미국 교육부와 300억원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CES 최고혁신상과 2026년 에디슨어워드 금상을 수상하였다.

조달청이 지정한 '위내시경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는 합성곱신경망(CNN)⁵³⁾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위내시경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고 위암 의심 부위와 발병 확률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써, 종래 의료진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위내시경 검사의 한계를 보완한 제품이다. 조기 위암 진단 정확도가 95%로 일반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평균 76%를 상회하여 국내·외 대학병원 및 검진기관에 도입·운영 중이며,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통해 발굴된 제품 중 글로벌 수준의 기술 혁신성을 갖춘 제품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공공부문 선도구매를 통해 우수한 혁신기술의 국내·외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2) 이 제품은 전자석을 이용하여 특정 핀에 전기를 흘려 자기장을 발생시켜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술인 “능동형 액추에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2,400개 점자셀이 입력된 형태에 따라 돌출되면서 텍스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전달이 가능하다.

53) 합성곱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술은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학습한 후 축적된 데이터의 패턴을 사용해 분류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이다.

② 혁신성이 미흡한 제품 사례

일부 혁신제품의 경우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실증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활용 범위가 특정 현장에 한정되는 등 혁신성의 세부요건(제품의 탁월성, 파급성 등)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공공구매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제품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조달청이 지정한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도심 길거리에 설치된 가로등과 같은 구조물을 활용하여 보행자가 호흡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인데, 실증 결과 실외 환경에서 유의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제품은 핵심기능인 공기 정화 성능 자체가 실외 조건에서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제품의 탁월성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잔교⁵⁴⁾’는 진공유동방지장치를 통해 부체의 운동을 감소시켜 안정성을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증 결과 진공유동방지장치의 효능이 100%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핵심기술의 성능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범사용 실패로 판정되어 제품의 탁월성이 미흡한 사례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중 예인 케이블’은 케이블을 감고 푸는 과정을 반복하더라도 케이블 꼬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그러나 적용 가능한 영역이 특정 해양 작업 현장으로 한정되어 다른 분야로의 확장이 어려움에 따라 공공구매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혁신성의 세부요건 중 파급성이 미흡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리하면, 기 지정된 혁신제품 중에는 CES 혁신상 수상 등 국내·외적으로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는 등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들이 존재하는 반면, 실증결과 기술적 성능이 미흡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등 혁신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제품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총 2,774개에 이르는데, 모든 제품이 실증결과 공공성과 혁신성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 시에는 서류심사를 위주로 공공성과 혁신성을 사전평가하기

54) 일반적으로 잔교란 항만이나 부두에서 배가 안전하게 접안하여 사람이나 화물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 나온 다리 모양의 구조물을 말한다.

때문에 실제 실증결과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시 공공성과 혁신성 요건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잠재력이 높은 제품들마저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그 성능과 활용가능성을 테스트할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

다만, 혁신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제품들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력과 시범구매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해당 제품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사실상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투입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그 성능과 파급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되는 제품이 많아질 경우 혁신제품 지정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도 존재한다.

더불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구매면책, 시범구매 등 일반 조달계약에 비해 예외적인 특례를 받는 만큼, 지정 제품의 혁신성 수준이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유형별 혁신제품 주관부처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의 혁신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규 혁신제품 지정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제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갖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정된 혁신제품이 확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 사후관리 및 환류 단계

(1)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적기 제출 및 내용의 충실성 제고 필요

첫째,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을 통해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한 기관은 시범사용 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한 후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결과보고서가 적기 공개되어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시범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후 이를 시범사용 기관에 제공하고, 각 시범사용 기관은 시범사용 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하여야 한다.⁵⁵⁾

그런데 2025년말 기준으로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현황을 보면, 보고서 제출대상 총 2,214건 중 기한 내 제출은 1,955건으로 88.3% 수준이며, 기한 후 제출이 241건(10.9%), 미제출이 18건(0.8%)이다. 특히 기한 후에 제출된 건이 2023년 11건, 2024년 97건, 2025년 133건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25년에

55)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일 시작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차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기대효과와 실제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
3. 시범사용 결과를 통한 개선 계획

제39조(시범사용결과 공개) ① 조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완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37조제1항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36조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는 18건이 당해연도말 기준으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건, %)

| 구분 ¹⁾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결과보고서 제출대상(a) | 16 | 307 | 96 | 391 | 466 | 464 | 474 | 2,214 |
| 기한 내 제출(b) | 16 | 307 | 96 | 391 | 455 | 367 | 323 | 1,955 |
| 기한 후 제출 | - | - | - | - | 11 | 97 | 133 | 241 |
| 미제출 | - | - | - | - | - | - | 18 | 18 |
| 기한 내 제출 비율(b/a) | 100.0 | 100.0 | 100.0 | 100.0 | 97.6 | 79.1 | 68.1 | 88.3 |

주: 1) 시범사용결과보고서 제출연도를 기준으로 구분함

1. 2025년 12월말 기준

2.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다수일 수 있으므로 제품수와 시범사용 기관수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조달청

물론 시범구매 계약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건수 또한 증가한 측면이 있으나, 결과보고서는 시범사용한 제품의 후속구매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기한 내 제출될 필요가 있다. 즉, 결과보고서는 시범사용 기관의 제품 만족도, 현장 적용 가능성,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환류 수단이다.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늦게 제출되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의 후속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여 동 제품을 시범사용하지 않은 다른 수요기관의 구매 시기가 지연되고 공공부문 혁신제품 확산 역시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결과보고서 제출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도래 전 시범사용 기관에게 제출기한 등을 적극 통보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차기 시범구매 참여 시 이를 반영하여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결과보고서가 기한 내 공개됨으로써 다른 수요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에 동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일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서 서로 상반된 실증 결과를 보고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 경우 다른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조달청은 실증 절차의 표준화 등을 통해 결과보고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이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는 혁신제품의 규격과 단계별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테스트 항목별 충족 여부, 효율성·실효성·편의성·안전성·혁신성에 대한 평가, 시범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성능 및 사용환경상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다른 기관에서의 활용가능성과 성능만족도에 대한 종합의견이 수록된다. 이러한 내용은 시범사용을 하지 않은 다른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자체예산으로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따라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해야 하고 최대한 일관되고 충실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수록 내용]

- 완료보고서 요약
 - 혁신제품명, 규격명, 기업명
 - 시범사용 단계별 진행사항
 - 시범사용 단계별 결과검토
- 성능 테스트 결과
 - 테스트 항목별 충족 여부
- 혁신제품의 우수성 평가
 - 제품의 효율성 및 실효성
 -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혁신성
- 시범사용 중 문제점
 - 혁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사용환경 및 조건, 편의성
 - 공급기업의 지원사항
- 종합의견
 - 향후 다수 공공기관에서의 활용가능성
 - 제품에 대한 성능 만족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일부 제품의 경우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에서 해당 제품의 성능, 향후 활용가능성, 성능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실외 미세먼

지 저감장치'는 실외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 시키기 위해 가로등과 같은 실외 구조물에 설치하여 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제품인데, 동 제품에 대한 결과보고서 3건을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시범사용한 후 A 기관, B 기관, C 기관이 2022년 또는 2023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 3건을 살펴보면, 동일 제품에 대한 성능 실증 결과가 극단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A, B 기관은 동 제품이 실외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혁신성이 없고, 다른 기관에서의 활용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성능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43점, 30점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C 기관의 경우 동 제품이 미세먼지 저감성능을 충족하며, 혁신성이 있으므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성능만족도는 90점을 부여하였다.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내용 비교]

| 구분 | A 기관 | B 기관 | C 기관 |
|-----------------|----------------------------|---|---------------------------------------|
| 시범사용 진행상황기록 | 충실함 | 충실함 | 보통 |
| 성능 테스트 | 실외에서 미세먼지 저감 zone을 형성하지 못함 | 미세먼지 저감효과 거의 없음 | 미세먼지 저감성능 충족 |
| 혁신성 평가 | 실외 미세먼지 저감효과 낮음 | 실외 저감효과 거의 없고 실내용 공기청정기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혁신성 없음 | 야외 활동이 많은 밀집지역에 설치하여 주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있음 |
| 사용환경 및 사용자 편의성 | 편의성은 높으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필요 | 우수함(시공 간편) | 우수함(시공 간편) |
| 향후 활용가능성 | 없음 | 없음 | 있음 |
| 성능만족도 (100점 만점) | 43점 | 30점 | 90점 |

자료: 각 수요기관,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사용 결과보고서」(2022, 2023)를 요약

물론 실외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특성상 테스트 환경과 시점에 따라 제품의 성능 테스트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제품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시범사용을 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에서 제품의 성능과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론을 제시할 경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제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하려는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느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한 기관은 제품을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다른 기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면, 수요기관으로서는 구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 자체를 보류하거나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험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결과보고서의 상반된 의견이 테스트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성능 테스트 방법·조건 등을 표준화하여 그 결과의 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는 수요기관에서 성능 테스트 절차가 부적절하였거나 실제보다 관대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실외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몇 개의 제품만 선별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결과보고서를 검토할 경우 이와 같이 실증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시험사용 결과보고서가 후속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 방법의 표준화와 평가결과의 검증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결과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충실히 작성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혁신제품 지정 유지 요건 관리 강화 필요

일부 부처는 지정된 혁신제품이 특허권 소멸·이전·양도 또는 해당업체의 휴업·폐업 등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점검이 부재하여,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의계약 납품 등 혁신제품 자격을 상당기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는 기술권리 유지여부, 기업존속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① 특허권 소멸 후에도 혁신제품 자격 유지 문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⁵⁶⁾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⁵⁷⁾

5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에 의하면,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1조58)에 따르면 혁신제품 지정 신청자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할 자이어야 하고, 신청대상 제품은 ①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②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 받은 신제품(NEP),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19조59)에서는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당시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⑩ 법 제27조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8)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1조(지정신청) ⑤ 신청 대상은 상용화 전 시제품으로서 신청자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할 자이어야 하고,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3.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의 기술적용 확인이 완료된 제품

59)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19조(적용기술 등 유지) ①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혁신시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특허권이 소멸·이전·양도되거나 그 전용실시권⁶⁰⁾이 종료되는 등 지정효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정기업은 그 사실을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지정기관은 이러한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지정취소 전 해당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지정 기업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은 상당기간 동안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납품 등 혁신제품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허권 소멸 등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지정기관들은 지정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⁶¹⁾ 다음은 기관별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특허권 소멸·이전 및 실시권 종료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당시 발견된 사례와 감사원 감사 이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파악한 사례를 취합하여 재작성한 것이다.

[혁신제품 적용기술의 특허권 소멸·이전 등 현황]

| 구분 | 주관기관명 ¹⁾ | 지정업체 ²⁾ | 혁신제품 지정기간 | 특허권 소멸·이전 종료 여부(일자) |
|-----|---------------------|--------------------|------------------------|---------------------|
| 유형1 | 지식재산처 | AA | 2020.10.29.~2027.7.21. | 소멸(2023.3.22.) |
| | | BB | 2021.6.1.~2028.2.21. | 소멸(2024.7.4.) |
| | | CC | 2021.12.24.~2026.9.15. | 소멸(2023.2.6.) |
| | | DD | 2021.12.24.~2026.9.15. | 소멸(2024.6.16.) |
| | | EE | 2021.6.1.~2025.5.31. | 소멸(2024.4.5.) |
| | | FF | 2022.6.29.~2025.6.28. | 소멸(2024.1.13.) |
| | | GG | 2021.6.1.~2025.5.31. | 전용실시권종료(2024.8.28.) |

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60) '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지식재산처 누리집)

61)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 2026. 3.

| 구분 | 주관기관명 ¹⁾ | 지정업체 ²⁾ | 혁신제품 지정기간 | 특허권 소멸·이전 종료 여부(일자) |
|-----|----------------------|--------------------|-------------------------|------------------------|
| 유형1 | 농림축산식품부 | HH | 2024.7.18.~2027.7.17. | 특허권 일부 소멸(2025.3.22.) |
| | | II | 2021-12-24~2024.12.23. | 특허권양도(2024.6.3.) |
| | 국토교통부 | JJ | 2020.10.29.~2026.10.28. | 소멸('25.3.28.) |
| | | KK | 2022.12.26.~2025.12.25. | 소멸('24.2.22.) |
| | | LL | 2021.12.24.~2025.12.23. | 일부이전('24.2.22.) |
| | | MM | 2021.12.24.~2025.12.23. | 전용실시권종료('25.2.25.) |
| | 산림청 | NN | 2024.12.20.~2027.12.19. | 폐업(2026.03.31.) |
| | 기후에너지 환경부 | OO | 2022.9.27.~2025.9.26. | 이전(2024.10.23.) |
| | | PP | 2021.12.24.~2025.12.23. | 이전(2025.6.30.) |
| | | QQ | 2022.12.26.~2025.12.25. | 말소(2025.5.12.) |
| 유형2 | 조달청 | RR | 2021.6.1.~2024.4.1. | 소멸(2023.11.5.) |
| | | SS | 2021.9.24.~2024.4.1. | 전부이전(2023.11.14.) |
| | | TT | 2022.6.29.~2024.4.1. | 전부이전(2023.11.7.) |
| | | UU | 2022.9.27.~2025.3.11. | 전부이전(2024.5.13.) |
| | | VV | 2023.7.31.~2025.3.11. | 전용실시권부여(2024.5.13.) |
| | | WW | 2023.7.31.~2025.5.26. | 전부이전(2024.5.27.) |
| | | XX | 2022.9.27.~2025.9.22. | 소멸(2025.1.26.) |
| | | YY | 2024.7.18.~2025.12.17. | 소멸(2025.10.15.) |
| | | ZZ | 2023.7.31.~2025.12.31. | 특허무효판결(2025.11.27.) |
| | | AAA | 2023.12.28.~2026.3.19. | 일부지분포기(2025.5.23.) |
| BBB | 2024.4.2.~2026.3.19. | 소멸(2025.6.1.) | | |

주: 1) 주관기관명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함(예를 들어, 구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표기함)

2) 지정업체는 익명처리함

자료: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2026.3.)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자료에는 특허권 소멸·이전 등 혁신제품 지정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감사원 감사 당시(2025년) 지정기관이 지정 취소 검토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직 특허권 등 지정요건 유지여부를 전수조사하지 않은 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특허권이 소멸·이전·양도되는 등 혁신제품 최초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혁신제품 지정 자격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제품들이 더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유형 2] 혁신제품은 조달청이 2024년부터 사후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유형 1]를 담당하는 각 참여부처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정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② 휴업·폐업한 업체의 혁신제품 지정 유지 문제

한편,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지정업체가 휴업·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0항이 정한 지정취소 사유 중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지정업체가 휴업·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다수의 지정기관들은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정 취소를 검토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⁶²⁾

[휴·폐업한 혁신제품 지정업체 현황]

| 구분 | 주관기관 | 지정업체 | 혁신제품 지정기간 | 휴·폐업 여부 |
|------|-------------|------|-------------------------|-----------------|
| 유형 1 | 중소벤처 기업부 | CCC | 2024.12.20.~2027.12.19. | 폐업(2024.11.30.) |
| | | DDD | 2023.7.31.~2026.7.30. | 폐업(2024.10.31.) |
| | | EEE | 2021.6.1.~2025.5.31. | 휴업(2024.12.31.) |
| | | FFF | 2021.6.1.~2025.5.31. | 폐업(2024.2.11.) |
| | | GGG | 2021.6.1.~2025.5.31. | 폐업(2024.5.13.) |
| | | HHH | 2022.6.29.~2025.6.28. | 폐업(2023.12.31.) |
| | 지식재산처 | III | 2022.12.26.~2025.12.25. | 폐업(2025.4.30.) |
| 유형 2 | 조달청 | JJJ | 2020.10.29.~2022.9.26. | 폐업(2022.6.29.) |
| | | KKK | 2021.1.29.~2024.12.19. | 폐업(2024.4.3.) |
| | | LLL | 2022.12.26.~2025.12.19. | 폐업(2024.4.26.) |

자료: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2026.3.)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 공급업체의 폐업은 계약이행 능력을 상실한 것이고 휴업은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각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즉 폐업한 기업은 더 이상 혁신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므로 수요기관이 발주하더라도 납품이 불가능하고, 휴업의 경우에도 일시적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계약상대방이 혁신제품 지정 자격만 형식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미 납품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공급업체가 휴업·폐업으로 인해 하자보수, A/S, 부품 공급 등을 이행할 수 없어, 수요기관이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62)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 2026.3.

휴업·폐업 업체가 혁신제품 지정 상태로 혁신장터에 계속 등재되어 있으면, 수요기관은 발주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나 실제로는 공급이 불가능하여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혁신제품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도 있다.

이상 특허권 소멸, 휴·폐업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해 보면, 조달청 및 지정기관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특허권 소멸,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혁신제품의 최초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정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제품의 경우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지정취소가 적정한 기간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요건에 흠결이 있는 제품이 수의계약 등의 조달상 특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혁신기업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지정요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조달청과 각 지정기관들은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허권 등 기술권리 유지여부, 기업존속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기타 조달등록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위원회는 중앙관서의 장 및 지정기업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혁신제품 사후관리 점검 사항]

| 구분 | 점검 내용 |
|-------------|--|
| 기술권리 유지여부 |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권리의 변동 내역 점검 |
| 품질유지 여부 | 법정의무 인증의 유효성 확인 |
| 기업존속 여부 | 지정기간 내 부도, 폐업, 파산, 영업정지, 휴업 등 이력 확인 |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지정기간 내 부정당 제재, 관련 소송 현황 확인 |
| 기타 | 기타 조달등록 요건(제조물품 유효기간 등) 검토, 혁신제품 사용 중 미작동, 품질·안전성 관련 민원 발생시 현장점검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혁신제품 가격 모니터링 체계 마련 필요

조달청은 공급업체가 혁신장터에 등록된 혁신제품 희망가격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별도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제품의 경우 시중가격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향후 혁신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요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그 기관에 해당 혁신제품이 필요해야 하고(수요 존재), 둘째, 구매담당자가 혁신제품의 가격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가격의 적정성)해야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즉 혁신제품 구매에 있어 제품에 대한 수요 못지 않게 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혁신제품 수요기관은 혁신조달 종합포털인 ‘혁신장터’ 누리집⁶³⁾에 접속하여 혁신제품의 사양, 공급기업, 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 혁신장터 누리집에 등록된 가격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공급업체가 희망하는 가격이다. 아래 그림은 혁신장터에서 문자인식(OCR) 제품에 대한 상품상세정보를 나타낸 것인데,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위 판매희망 가격은 견적가격이며,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혁신장터 상품정보 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product page for '한韓OCR' (Korean OCR) software. The product is described as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보안정보기술, 한韓OCR, AIOCR문자추출, 1Server'. The price is listed as 99,000,000 won. A disclaimer states: '※ 위 판매희망 가격은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6호)에 따른 견적가격(VAT 포함)이며, 혁신장터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37호) 제16조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elow the price, there is a '기본정보' (Basic Information) section with details:

- 업체명: 주식회사 한韓OCR
- 모델명: 한韓OCR
- 제조/공급: 제조
- 단위: 조
- 중기건설생제품: 아예 사이트 참조
- 사업자번호: [redacted]
- 세부품명번호: 4323269801
- 물품식별번호: 25962351
- 기업규모: 소기업

자료: 조달청, 혁신장터 누리집, 2026.5.14. 검색

63) ppi.g2b.go.kr

다음 그림은 나라장터 누리집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제품의 상품상세정보인데, 이 제품은 공급업체와 조달청 간 다수공급자계약⁶⁴이 체결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금액은 수요기관이 실제 계약할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이다.

[나라장터 상품정보 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product listing for '통신소프트웨어' (Communication Software) on the Naljangter website. The price is prominently displayed as 1,760,000 KRW. The product is categorized under '다수공급자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 '중소기업' (Small Business), and '제조' (Manufacturing). The listing includes a product number (25829633), 0 reviews, and a '다량납품할인을 확인' (Check for bulk purchase discount) button. The contract details section lists the company name as '주식회사' (Incorporated Company), contract type as '주식회사' (Incorporated Company), contract number as 'R26TA01639145-00-4', and contract area as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All regions (Jeju and remote/mountainous areas additional shipping/construction fees)).

자료: 조달청, 혁신장터 누리집, 2026.5.14. 검색

이와 같이 혁신장터에서 조회되는 혁신제품의 경우 확정된 제품가격을 표시한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제품⁶⁵과 달리 업체의 희망가격을 등록하는데, 이는 두 계약 유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상용화된 물품으로 공통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가격검토를 거쳐 공급업체와 연간 단가

64)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일반 쇼핑 사이트에서처럼 나라장터에서 해당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이다.

65) 조달청의 계약 유형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 외에도 제3자단가계약, 카달로그 계약 등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2024년 기준 전체 조달계약의 43%를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품과 혁신제품을 비교한다.

계약을 체결한 제품이므로,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나와 있는 단가대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반면 혁신제품의 경우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이므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드물고, 기존 상용품과 달리 신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표준화된 원가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혁신제품의 경우 조달청이 시범구매하거나 수요기관이 자체예산으로 구매할 경우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 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즉, 수요기관의 입장에서 혁신제품을 실제 구매하기 전까지 정확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과 혁신제품 비교]

| 구분 | 다수공급자계약(MAS) | 혁신제품 |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자를 선정(2005년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창업·기술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2019년 도입)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기술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유형1) • 상용화 이전 시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유형2) |
|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공고 → 입찰참가자격 심사 → 적격성 평가 → 가격자료 제출 → 조달청 가격조사·가격협상 → 단가계약 체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 수요기관 선택 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신청 → 서류검토 → 추천심사(각부처)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정(재정경제부) → 혁신장터 등록(희망가격 등) → 수요기관 수의계약 또는 조달청 시범구매(구매 시 가격검토) |
| 구매사이트 및 등록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g2b.go.kr) • 조달청과 협상하여 책정한 계약단가 등록 (우대가격 유지 의무: 시중 거래 가격 이하로 공급 의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장터(ppi.g2b.go.kr) 혁신제품 전용몰 • 업체 희망가격(부가세 포함) 등록 (별도의 가격협상 절차 없음, 수요기관과 개별 수의계약 시 가격 협의) |

자료: 재정경제부,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감사원은 2026년 3월 조달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서 ① MAS 의무구매제도⁶⁶⁾로 인해 수요기관이 시중가보다 고가(高價)인 나라장터 물품을 강제

구매하고 있고,⁶⁷⁾ ② 조달청의 가격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기간 중 수요기관 설문조사에서도 나라장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55.5%로, 경쟁력이 있다는 응답(32.8%)의 약 1.7배에 달했다.

먼저 고가 조달물품 의무구매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시중제품 가격 대비 고가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669개 중 표본 210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63개(30%)가 실질적으로 고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가 조달물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중 제품과 동일한 물품에 비해 최대 159% 비싸게 판매되는데도, 수요기관은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저가의 시중제품을 구매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조달제품을 구매하였다(14개 제품).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제품설치 포함 여부 등 납품조건에 차이만 있을 뿐인데 시중가 대비 최대 297% 고가로 판매된 사례도 발견되었다(28개). 또한 핵심 성능은 동일하고 디자인·길이 등 일부 규격만 달리한 채 나라장터에서 시중가 대비 최대 80% 고가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었다(21개).

[시중가 대비 고가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유형]

| 구분(수량) | 주요 내용 |
|-----------------------|---|
| 동일 물품 고가 판매(14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에 동일 사양·규격의 물품이 존재함에도 나라장터에는 시중가 대비 최소 20%~최대 159.2% 고가로만 판매 • 수요기관은 의무구매제도로 인해 저가의 시중품 구매 자체가 불가능 |
| 납품조건 차이로 과도한 고가 (28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포함 여부 등 납품조건 차이만 있을 뿐인데 시중가 대비 최소 20.6%~최대 297.2% 고가 • 실제 설치비 수준(2만~4만원)으로는 가격 차이를 합리화할 수 없는 수준 |
| 세부규격 차이로 과도한 고가 (2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성능은 동일하고 디자인·일부 길이 등 사소한 규격만 달리한 채 나라장터에 시중가 대비 최소 21.1%~최대 80% 고가로 판매 • 일부 업체는 민간시장에는 시중가로, 조달시장에는 나라장터 전용 모델을 별도로 등록하여 고가에 판매 |

자료: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2026.3.)를 요약

66) 수요기관은 의무구매제도에 따라 MAS가 체결된 물품을 민간시장에서 개별구매할 수 없고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 MAS 업체에는 시중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67) 감사원이 2019년 경기도가 고가로 지적한 438개 물품 중 표본 160개를 분석한 결과, 94개(58%)가 설치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중가 대비 최소 21%에서 최대 197% 고가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조달청 MAS 가격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관련하여 4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단가 책정 단계에서는 담당자 1인당 다수의 MAS 물품에 대하여 최저가격 반영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기 어렵고, MAS 물품가격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이 2인에 불과하여 전체 계약물품의 대부분(약 98%)에 대하여 사실상 가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대가격이 준수되는지 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은 위반 확인 실적이 미미하여 사실상 가격관리를 방치하고 있었으며, MAS 납품업체가 제조사 등을 통해 민간 쇼핑몰 판매가격을 조달단가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한 불공정 의심행위도 확인되었다.

[MAS 가격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

| 구분 | 주요 내용 |
|----------------------|--|
| 단가 책정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 다양한 민간시장 참여자가 형성하는 최저가격 반영이 곤란 • 조달청 담당자 1인당 평균 7,500여 건의 MAS 물품을 담당하고 있어 물품별 시장가격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어려움 |
| 모니터링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MAS 960개 품목(물품 수 기준 78.3만 개) 중 연평균 64개 품목(물품 수 기준 1.3만 개, 전체의 1.7%)만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 • 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고 물품별 연간 시중가 비교 횟수도 1~3회 수준으로, 전체 계약 물품의 약 98%가 가격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
| 가격비교시스템 사실상 방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가격 위반 분석시스템(2015년 구축)은 추출 사례(3년간 13,009건) 중 실제 위반 확인 비율이 0.4%(57건)에 그치며, 민간 가격비교사이트 연계 시스템(2017년, 18억원 투입)은 최근 3년간 조치 사례가 전무 |
| 시중가 인상 유도 등 불공정 의심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S 업체가 제조사 등을 통해 민간 쇼핑몰 판매가격을 조달단가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3년간 15개 업체 46개 물품에서 확인됨 • 조달청 모니터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조달청은 해당 소명자료를 수령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자료: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2026.3.) 일부를 요약

공공조달로 등록된 제품의 경우 조달청이 제품의 규격, 사양, 안전성 및 가격 등을 검토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때문에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이 조달에 등록되기까지 정부의 행정력과 비용이 투입되었으므로, 최저가를 추구하는 시중 쇼핑몰 제품보다 다소 비쌀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서와 같이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 시중가격 대비 과도하게 고가

로 판매되는 제품이 다수 발견된 것은 가격대비 우수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보급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조달의 취지에 위배된다. 더욱이 이러한 불합리한 고가 판매사례를 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다.

한편 혁신제품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달리 시중에 비교할만한 유사제품이 드물고, 혁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하여 표준원가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제품가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달청은 혁신제품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신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경우 혁신기업이 혁신제품을 개발할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혁신제품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달청의 의견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혁신제품의 가격을 사전 책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혁신제품이 보편화되었을 때, 혁신제품의 가격 또한 다수공급자계약물품처럼 적정가격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등록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혁신제품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담당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며, 공공기관별 구매목표율을 설정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구매하고 있어, 다른 조달물품에 비해 혁신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혁신제품을 개발할 동기가 유지되도록 업체의 가격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는 있겠으나, 혁신제품에 대한 특례를 고려할 때 가격수준에 대한 적정 수준의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이 2025년도에 실시한 혁신제품 만족도 조사에서도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로 제품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1.2%를 차지하였는 바, 향후 혁신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혁신제품의 가격이 혁신기술에 상응하여 적정수준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미실시 사유]

(단위: 개, %)

| 구분 | 시범구매 후 후속구매 미실시 사유 | | | | | | |
|------|--------------------|-------------|----------------|--------------|--------------|----------------|-----|
| | 계 | 추가 구매 예산 부족 | 시범구매를 통한 수요 충족 | 제품 가격 만족도 부족 | 제품 성능 만족도 부족 | 제품 유지관리 만족도 부족 | 기타 |
| 제품 수 | 330 | 143 | 85 | 37 | 26 | 19 | 20 |
| 비율 | 100.0 | 43.3 | 25.8 | 11.2 | 7.9 | 5.8 | 6.0 |

주: 2025.12.31.기준,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의 가격이 그 기술의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서 혁신기업이 혁신 제품을 개발·생산할 유인을 상실할 정도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수요기관에서 구매를 꺼리게 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희망가격을 등록한 공급업체에게도 매출액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일부 수요기관의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혁신제품을 고가로 구매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조달청은 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특정 혁신제품의 가격이 신기술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등록되더라도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달청은 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 혁신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혁신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등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기본적인 규격 외에 신기술의 가치,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혁신제품 조달제도의 주무기관인 조달청이 혁신제품 가격에 대하여 업체의 자율에만 의존하면 곤란하다. 즉 혁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설정에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은 있다. 만일 모니터링 결과 일부 혁신제품이 유사한 종류의 혁신제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타날 경우, 정부가 해당 업체에게 희망가격이 적정한지 재검토하도록 권고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혁신제품의 유형별, 종류별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 이렇게 수집된 가격정보를 향후 혁신제품 조달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시범구매 또는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한 혁신제품의 경우 원가산출 절차를 거쳐 실제 계약한 금액이 존재하는데, 현재 혁신장터에는 구매실적이 있는 이러한 혁신제품의 경우에도 희망가격 외에 원가산출내역이나 수요기관 계약금액⁶⁸⁾ 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부재하다. 따라서 구매실적이 있는 혁신제품의 경우 원가산출 내역이나 타 기관 계약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수요기관이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기 구매한 혁신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필요

첫째, 공공부문에 기 보급된 일부 혁신제품은 잦은 고장, 유지관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투입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있는바, 각 유형별 혁신제품 주관 부처는 혁신제품 구매 이후 사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였고, 지정된 제품 중 1,882개 제품이 조달청 시범구매 또는 각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를 통해 공공부문에 보급되었다.

그런데 일부 혁신제품의 경우 수요기관이 고장 등의 사유로 창고에 보관하는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투입된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달청이 2020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사이클론 집진 방식의 신발 바닥 청소기’ 제품의 경우 다수 수요기관에서 단기간 사용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⁶⁹⁾ 동 제품은 원심력을 이용해 먼지를 분리하는 사

68) 다만 특정 혁신제품에 대한 원가산출, 기존 계약금액이 있더라도, 구매하는 기관에 따라 설치비 등이 소요되는 등 환경이 상이하여 실제 계약금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69) KBS, 구매만 해놓고...외면받는 ‘혁신 시제품’, 2023.6.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03040>

이클론 집진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항균·살균기능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성능을 인정받아 2020년 10월에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었다.

이 제품은 당시 COVID-19 유행으로 △△테크노파크,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 많은 기관에 납품되었으며, 시범구매액 누계는 9,900만원, 자체구매액은 23억 1,000만원이다. 그런데 다수 수요기관에서 소음발생 및 잦은 고장으로 구매 후 1년이 되지 않아 사용을 중지하고 창고에 방치하는 사례가 보도되었다.⁷⁰⁾

사후관리가 미흡한 또 다른 혁신제품으로는 조달청이 2020년 지정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를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 보고 걷는 이른바 스몸비(Smombie)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신호등과 바닥에 설치된 LED를 연동하여 신호등을 보지 않고도 교통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동 제품은 2020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후 조달청 시범구매나 특별교부세 교부 등 국비지원을 받아 많은 지자체에서 교차로 횡단보도에 동 제품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설치된 지 수년이 경과하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내구성이 약하고 이에 따라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통해 동 제품을 설치하였으나, 노면에 설치된 제품의 특성상 비바람에 노출되고 보행자나 이륜차량 등이 접촉하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제품 설치비는 국비 지원 등을 받았으나 유지관리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고장이 발생하여도 신속하게 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LED 바닥형 신호등의 설치가 늘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 제품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도, 초등학교 횡단보도에 설치된 동 제품이 고장으로 교통신호등의 색깔과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의 색깔이 서로 다르게 표출되어 오히려 어린이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⁷¹⁾ 동 제품은

70) KBS, 구매만 해놓고...외면받는 ‘혁신 시제품’, 2023.6.19.


“△△테크노파크가 2022년 6월 9대(약 3,900만 원)를 구매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수 제품을 창고에 임시 보관하였고, ○○교육지원청은 2대 중 1대를 잦은 고장(A/S 3~4회 반복)으로, 다른 1대를 58dB에 달하는 소음을 이유로 사실상 사용을 중단하였다”

각 시·군·구가 교통 경찰과 협의하여 설치하는데, 구체적인 설치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⁷²⁾

다른 지자체에서도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가 자주 고장이 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불이 초록빛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었지만 바닥 신호등의 색깔은 붉은색으로 표출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된 LED 패널에 불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기본적인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⁷³⁾

[사후관리가 미흡한 혁신제품 사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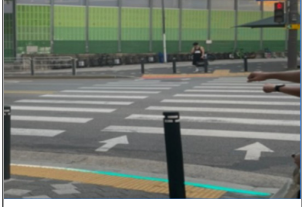
| 지정 기관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지정기간 | 구매액 | | 납품처 및 사후관리 실태 |
|------------|--|-------------------------------|------|--------|--|
| | | | 시범구매 | 자체구매 | |
| 조달청 (2020) | 사이클론 집진 방식의 신발 바닥 청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심력을 이용해 먼지를 분리하는 사이클론 집진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항균·살균기능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 2020.10. ~ 2026.10. (1·2차 연장) | 99 | 2,3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품처 : △△테크노파크,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 •가격 : 대당 약 430만원 •소음발생 및 잦은 고장으로 구매후 1년이 되지 않아, 사용을 중지하고 창고에 방치 |
| 조달청 (2020) | 안전이 강조된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 2020.10. ~ 2024.10. (1차 연장) | 228 | 44,5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품처 : 경남 창원시, 몽골 도로개발청 등 •가격 : 횡단보도 설치 시 표출부, 제어부, 설치비 등을 포함 2,000만원 내외 소요 |

71) 경인일보, “신호등 빨강·바닥은 파랑’…LED스마트신호등 관리 행감 도마’, 2024.11.11.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7957>
 “000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도내 한 초등학교 앞 스마트 신호등에서 바닥에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 반면 정차 보행 신호등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72) 한국경제신문, “스몸비族’ 보호한다는 바닥신호등, 진짜 안전한가’, 2023.4.7.
<https://news.nate.com/view/20230407n27005>

73) 전주방송, ‘특하면 '떡통'...무용지물 바닥형 신호등’, 2025.1.16.
<https://www.jtv.co.kr/2021/?c=3/45&p=298&uid=2189977>

(단위: 백만원)

| 지정 기관 | 혁신제품명 및 주요기능 | 지정기간 | 구매액 | | 납품처 및 사후관리 실태 |
|-------|---|------|------|------|--|
| | | | 시범구매 | 자체구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 LED와 신호등 색깔(적색/녹색/녹색점멸)의 불일치 (좌측 사진 참조) 등 잦은 오류와 고장 발생 •잦은 방수 불량, 결로, 하중 파손 발생 등 내구성이 낮고, 유지관리 비용이 높음 |

자료: 혁신장터 제품 정보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동안 각 유형별 혁신제품 주관부처는 혁신제품의 지정 건수를 늘리는 등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기 구매한 제품이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제품의 경우 그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후관리가 부실한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조달청의 시범구매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사례가 나타났으므로, 조달청은 이러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4년도에 일부 공공기관이 계약된 혁신제품 사용기간이 지나면 운영비 등을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반납을 희망하고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수요기관에서도 다량의 혁신제품을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되었다.⁷⁴⁾ 이러한 혁신제품 부실관리 사례가 지적되면서 조달청은 2024년 7월에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⁷⁵⁾에 혁신제품 실태점검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2024년도의 경우 2022년도 시범구매 계약건 중 소모품 등을 제외하고 1억원

74) 전자신문,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사후 관리 나선다…공공기관 대상 미사용 등 실태점검”, 2024.7.28.

<https://www.etnews.com/20240726000054>

75)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조의3(실태점검) 조달청장은 시범사용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혁신제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결과는 수요매칭 시 활용할 수 있다.

이상 388건에 대하여, 1차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을 회신하지 않거나 미사용 제품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2025년도에는 2023년 계약건 중 147건에 대하여 역시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시범구매 혁신제품 실태점검 현황(조달청)]

| 연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
| 2024 | 2022년 계약건 중 388건 (1억원 이상) | •1차 서면조사(285건 회신) •서면미회신 및 미사용 제품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
| 2025 | 2023년 계약건 중 147건 (1억원 이상) | •1차 서면조사(143건 회신) •제품하자 및 서면미회신 제품에 대하여 현장점검 실시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혁신제품 실태조사 시 사용장소의 적정성, 사용관리 상태, 태그부착 여부, 목적에 맞는 사용, 제품의 안전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평가점수의 합계에 따라 평가등급을 산정하였다. 점수합계가 90점 이상이면 우수, 89~61점이면 보통, 60점 이하면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2025년도 시범구매 혁신제품 실태점검 평가 기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20점 | 16점 | 12점 |
| 사용장소의 적정성 | 장부 내용과 실제 설치 장소가 일치 | 장부 내용과 실제 설치 장소가 불일치, 불명확 | 창고에 방치, 손망실 |
| 사용관리 상태 |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 | 부품, 소모품 교체주기 등 관리하지 않음 | 작동여부 미관리, A/S 요청 등 미조치 방치 |
| 태그부착 여부 | 태그가 정상적으로 부착 | 태그가 훼손되어 재부착 필요 | 태그 미부착 |
| 사용 목적의 적정성 | 용도에 맞게 사용 | 일반기능만 사용, 혁신성 기능은 사용하지 않음 | 사용하지 않음 |
| 제품의 안전성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경미한 사고가 발생.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조치 필요 판단 | 안전사고가 발생(기관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경우) |
| 점수합계 | 최고 100점 / 최저 60점 | | |

주: 2024년도 평가기준은 2025년도와 유사한데, 2025년도에 '제품의 안전성' 항목이 추가되었음
자료: 조달청

두 차례 시범구매 혁신제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다수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거나 평가등급이 낮게 나타났다. 먼저 제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2024년도의 경우 점검대상 388건 중 335건(86.3%)이 사용 중이고 53건(13.7%)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여전히 10건(6.8%) 존재하였다. 평가등급을 보면 2024년의 경우 미흡등급이 11건(2.8%) 있었으나 2025년에는 조사대상 중 미흡등급은 없었다.

[시범구매 혁신제품 실태점검 결과]

| 연도 | 실태점검 결과 |
|------|---|
| 20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여부) 사용 335건(86.3%), 미사용 53건(13.7%) •(평가등급) 우수 305건(78.6%), 보통 72건(18.6%), 미흡 11건(2.8%) |
| 20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여부) 사용 136건(92.5%), 미사용 10건(6.8%), 점검불가¹⁾ 1건(0.7%) •(평가등급) 우수 123건(84.2%), 보통 23건(15.8%), 미흡 0건(0%) |

주: 1) 해외 시범사업 건입(KOTRA)

자료: 조달청

실태점검 결과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2024년도의 경우 53건 중 품질불만이 26건, 유지비용 과다 11건, 사용목적 달성 7건 등이었고, 2025년 미사용 10건 가운데 유지비용 과다 3건, 현장여건 부적합 3건 등이었다.

[제품 미사용 사유]

(단위 : 건)

| 구분 | 2024년 실태점검 결과 | 2025년 실태점검 결과 |
|----------|---------------|---------------|
| 품질불만 | 26 | 1 |
| 유지비용 과다 | 11 | 3 |
| 사용목적 달성 | 7 | - |
| 손망실 | 4 | - |
| 보안관련 | 3 | - |
| 법적근거 미비 | - | 1 |
| 현장여건 부적합 | - | 3 |
| 업체사정 | 2 | 2 |
| 계 | 53 | 10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매년 시범구매 제품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혁신제품 미사용 사유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사용 제품이나 조달청에 반납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의 인수를 희망하는 기관을 조사하여 소유권 이전⁷⁶⁾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4년 및 2025년에 조달청이 실시한 실태점검은 전수점검이 아니므로 여전히 점검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1차 점검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보낸 서면에만 의존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2026년에는 2024년 계약건(446건)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평가등급 ‘보통’ 이상의 기관에서도 5%를 임의선정하는 등 현장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혁신제품 지정건수가 확대되고 실태점검 범위를 늘림에 따라 조달청 본청 단독으로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각 지방조달청과 협업을 통해 실태점검의 이행력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한편 실태점검 결과 혁신제품의 품질·성능에 대한 불만, 유지비용 과다, 손상실, 현장여건 부적합 등의 사유로 제품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조달청은 품질불만 제품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품질향상을 권고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건수는 많지 않으나 보안상 인허가 문제나 법적 요건 미비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으므로 시범사용기관 선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 두 가지 논의를 정리하면, 혁신제품은 그 발굴·지정에서부터 구매·확산 단계까지 각 주관부처에서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하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될 때 재정투입에 대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혁신제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혁신제품을 활용·확산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지 않으며, 수요기관에서 시범사용 종료 후 이를 반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혁신제품 조달 사업 참여유인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76) 조달청은 [유형 2]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한 기관이 희망할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조달청→수요기관)한다.

혁신제품은 사후관리가 미흡할 경우 투입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혁신제품의 구매·확산을 통한 기술혁신 및 기업성장 등의 정책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각 유형별 혁신제품 주관기관은 혁신제품의 구매 이후 사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후관리가 부실한 수요기관 등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5) 혁신조달 참여기업의 성장효과 검증 필요

① 기존 연구 결과의 혼재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공공부문 납품과 기술혁신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연구들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반면, 또 다른 연구들은 조건부로 효과가 존재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정책목표 중 하나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공부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부가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해당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참여기업은 공공부문 납품을 통해 양적으로 매출액을 증대시키고 질적으로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기존 국내·외 연구들은 혁신제품 조달 또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 증대 등 양적 성장과 연구개발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⁷⁷⁾

먼저 혁신제품 조달(또는 공공조달)의 기업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은 주로 공공조달 등 참여가 기업의 매출·부가가치·총요소생산성 등 외형적 성장과 자금흐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혁신조달의 경우 단순 조달실적을 넘어 부가가치 증가율 제고와 혁신성과 창출까지 이어진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다만 일부 연구는 고용 효과의 제한성, 그리고 혁신조달이 신규 연구개발(R&D) 투자를 견인하기보다 이미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음을

77) 혁신제품 조달 제도가 국내에 2019년에 도입됨에 따라, 2019년 이전에 수행한 일부 연구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아닌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조달 정책·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지적하였다. 또한 정책 효과 발생의 전제조건으로 수요기관(공공부문)의 조달 역량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고되었다. 정리하면, 이 논문들은 공공조달·혁신조달은 참여기업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하나 질적 성장(수익성·R&D 투자·고용)에 대한 효과는 조건부라고 보았다.

[혁신조달 또는 공공조달의 기업성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

| 저자(연도) | 논문명 | 주요 내용 |
|------------------------|--|--|
| 김재현 외 (2019) |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공조달 지원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이 공공조달 수요 확대가 생산·투자·R&D·총요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고용효과는 제한적 |
| 박정호 (2020) | 기업의 혁신성과에 대한 혁신공공구매(PPI)의 효과 | PPI 수혜집단에서 전반적 혁신성과를 보인 기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 이민철 외 (2021) | 공공조달 참여와 기업성장: 기업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젊은 기업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 신기훈 외 (2022) | Impact of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on firm productivity | 혁신조달 계약기업은 일반 공공조달 기업보다 계약 1년 후 부가가치 증가율이 약 7.6%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자본 투입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음 |
| 김주원 외 (2023) | 성향점수매칭(PSM)-이중차분(DID) 결합모형을 이용한 혁신조달 정책의 기업지원 효과 분석 |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비참여 유사기업보다 성장성과 고용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됨. 다만 혁신조달이 추가 R&D 투자를 직접 증가시키기보다는, 이미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효과가 큼 |
| TimoTammi et al.(2024) | Buyer's market-oriented culture, strategic procurement capability, and customer performance in the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s | 공공 부문(수요기관)의 조달 역량이 높을수록 혁신제품의 조달이 원활해지며, 결과적으로 참여기업이 고객에게 창출하는 가치가 극대화됨 |

자료: 각 논문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반면 다른 연구들은 공공조달 등의 참여가 기업 생존이나 단기 자금흐름에는 기여하더라도 중장기 생산성·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보호적 제도는 수혜기업의 연구개발 집약도를 오히려 감소시키거나 자체 기술혁신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요 파편화, 불충분한 보상, 조달기관의 위험회피적 절차와 역량 부족, 혁신 관련 평가기준 미비 등 제도적 결함이 존재할 경우 공공조달이 기업의 혁신활

등을 오히려 저해하고 기존 제품 중심 경쟁을 강화한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민간 시장 측면에서도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향상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리하면, 이 논문들은 공공조달이 제도 설계와 운영방식에 따라 기업의 혁신성과 자생적 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효과 발생은 조건부라고 판단하였다.⁷⁸⁾

[공공조달의 기업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보고한 연구]

| 저자(연도) | 논문명 | 주요 내용 |
|------------------------------|---|---|
| 장우현 (2007)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the Productivity and Survivability of SMEs | 공공조달 참여가 기업 생존에는 기여하더라도 중기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
| Elvira Uyarra et al.(2014) | Barriers to Innovation through Public Procurement | 공공수요가 혁신을 요구하더라도 수요 파편화, 불충분한 보상, 조달기관 역량부족, 위험회피 절차가 존재하면 기업은 혁신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움 |
| 김유정 외 (2017) | 공공조달 참여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공조달 참여는 매출채권 감소와 단기 자금압박 완화에는 기여하지만, 수익성 개선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
| 안승구 외 (2018) |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R&D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요인 중 하나로 제시됨 |
| 허원창 외 (2024) | 공공조달 참여와 기업의 시장가치 | 공공조달 참여가 민간시장에서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향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 Bastian Krieger et al.(2024) | Public Procurement Can Hinder Innovation | 혁신 관련 평가기준이 약한 조달은 기업의 제품·공정혁신을 낮추고 기존 제품 중심의 경쟁을 강화할 수 있음 |
| 이정환 외 (2025)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 분석 | 매출액 성장 대비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낮음. 결정적으로 R&D 집약도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우선구매제도가 수혜기업의 기술개발·혁신 노력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 |

자료: 각 논문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8) 여기에서 인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아닌 '공공조달' 사업의 효과성을 연구한 것인데, 연구대상이 다르므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혁신제품 조달 사업도 공공조달 사업의 한 종류이므로,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연구사례로 제시하였다.

②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기업성장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조달청은 2025년 수행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기업의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해당연구는 연구주체, 데이터, 연구방법, 연구범위 등에 있어 한계점이 있어 그 결과를 동 사업의 정책효과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달청은 향후 체계적인 추가연구를 통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조달연구원은 2025년도에 시범구매 사업에 대한 기업 성장효과를 시계열 분석하여 2026년 1월에 그 결과를 조달청에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구매 참여기업 730개사와 미참여 혁신기업 1,002개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범구매 참여기업이 자산·자본·매출·고용 등 주요 성장지표 전반에서 미참여기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구매사업이 참여기업의 외형적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시범구매에 참여한 기업의 자산은 5.0조원에서 7.9조원으로 58.6% 증가(미참여 23.8%)하였고, 자본 역시 46.8% 증가(미참여 29.0%)하여 참여기업이 미참여 기업에 비해 성장세가 높게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부채는 증가하였지만 부채비율은 약 125%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참여기업의 4년간 매출액은 31.7% 증가하여 미참여기업(2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고용인원도 21.2명에서 26.1명으로 23.1% 증가(CAGR⁷⁹⁾ 5.3%)한 반면 미참여기업은 오히려 △6.3% 감소하였다.

[시범구매 사업의 기업 성장효과 분석 개요]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분석 개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19~'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에 대한 시계열 분석2. 분석 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군: 시범구매 계약 기업 중 재무자료를 보유한 730개사○ 대조군: 시범구매 미참여 혁신기업 1,002개사3. 주요 분석 결과 |
|--|

79)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복합성장률)은 특정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동일한 비율로 성장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평균 성장률이다. 단순 산술평균과 달리 복리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 중 변동성을 평탄화하여 장기 성장 추세를 비교·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 자산, 부채, 자본
 - 자산 : 참여기업 자산은 5.0조원('20)→7.9조원('24)으로 58.6% 증가하여 미참여기업 (23.8%)대비 높은 성장
 - 부채 : 참여기업 부채는 2.6조원→4.4조원으로 증가했으나 부채비율 약 125%로 우려 수준은 아님
 - 자본 : 참여기업 자본은 2.4조원→3.5조원(+46.8%)으로 미참여기업(29.0%) 대비 높은 증가
- 성장성 지표 분석
 - 참여기업은 4년간 매출액이 31.7% 증가하여, 미참여기업 29.9%보다 높게 나타남
- 고용효과 분석
 - 시범구매 참여기업 평균 고용인원은 21.2명('20)에서 26.1명('24)명으로 23.1%(CAGR 5.3%) 증가, 미참여기업은 △6.3%(CAGR △1.6%)로 감소

자료: 한국조달연구원, 「2025년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용역 결과보고」, 2026. 1.

그러나 시범구매 사업이 기업의 성장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한국조달연구원의 보고서는 시범구매 참여기업과 미참여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인과추론의 엄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연구 결과를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기업 성장효과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한 데이터가 불완전하여 표본선택 편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원은 시범구매 참여기업 791개사 중 5년간 연속 재무자료를 보유한 730개사로 한정되어, 재무자료 미보유 기업 61개사(7.7%)가 분석에서 누락되었다.

둘째, 동 연구는 고용효과 분석에서 2020년 데이터(KoDATA, 한국평가데이터)와 2024년 데이터(BASA)⁸⁰⁾의 출처가 상이하여 4개년 연속 데이터 활용을 포기하고 양 끝점 단순 비교에 그치고 있어 시계열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동 연구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 전체가 아닌 조달청 주관 '시범구매' 사업에 한정된 분석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전체의 효과로 확대 해석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80) 신용보증기금(BASA) : 신용보증기금이 약 50여년 간 축적한 기업정보 DB와 기업분석 노하우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데이터 플랫폼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과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참여하는 약 130여개 기관과 별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넷째, 정책효과 평가에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은 정책 참여 여부 외 다른 조건이 동질적이어야 인과효과 식별이 가능하나, 본 연구는 두 집단의 사전적 이질성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 평균 비교에 그치고 있다. 즉 시범구매 참여기업은 혁신제품 지정·시범사용 신청 등 자발적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으로, 참여 이전부터 혁신역량·성장가능성·경영진 적극성이 미참여 기업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편의를 제거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한 한계가 있다.

정리하면, 한국조달연구원이 2025년에 기 수행한 연구는 시범구매사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일면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으나, 혁신조달 사업이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성 입증 근거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자신의 실적을 자체평가하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는 물론 객관성 확보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제3자의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종합성과 분석을 위해 올해 4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기업의 성장, 고용, 기술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도 혁신조달 종합성과분석 연구용역 개요]

- 연구용역 개요
 - (연구명) 혁신조달 종합성과분석 연구용역
 - (계약금액) 45,500,000원
 - (연구기간) 2026.4.1. - 2026.9.30.
 - (수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주요 연구 내용
 - (과업 1) 정책의 운영 구조 종합 진단 및 정책적 효과성·지속 필요성 검토
 - (과업 2) 정책의 기업 성장·고용·기술혁신 등 주요 성과 분석
 - (과업 3) 정책 수단으로서의 파급성 및 실효성 점검
 - (과업 4) 향후 제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발전적 개선 방향 제시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현재 수행중인 연구용역에서는 과거 연구에서 미흡한 점으로 제기된 부분을 보완하여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단일출처의 장기간 기업데이터를 확보하고, 표본 선택 편익(self-selection bias)을 제거하기 위한 보완적인 연구방법론⁸¹⁾을 적용함으로써 정책효과 분석의 정합성과 설명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 범위를 시범구매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혁신제품 조달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혁신제품 지정 제도 전반이 참여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은 이상과 같은 점을 유념하여 이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혁신조달 사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혁신조달 정책의 조정·재설계 등을 위한 신뢰할 만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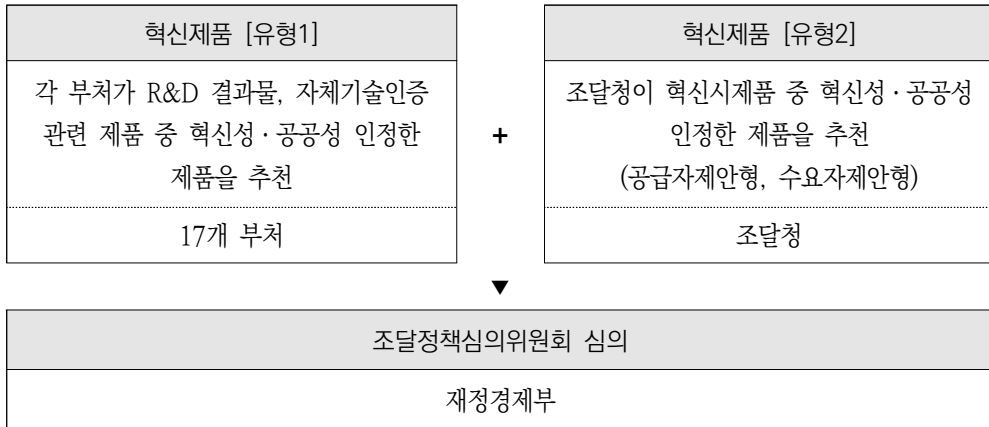
81) 예를 들어, 정책평가의 표준 방법론인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 결합 모형을 적용하여 인과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처치집단(혁신조달 참여기업)과 사전적 특성이 유사한 대조집단을 매칭하여 자기선택 편익을 제거한 후, 정책 시행 전후 양 집단의 성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순효과(net effect)를 추정하는 표준 기법이다. 다만, PSM은 관측가능한 사전 특성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관측가능한 공변량만으로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간 잠재적 이질성 완벽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질적·정성적 분석과 병행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혁신제품의 추천, 지정, 구매, 성과 확산 등을 위해 범 부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유형 1]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⁸²⁾가 혁신제품 지정대상 제품을 발굴·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조달청은 [유형 2] 혁신제품을 추천한다. 각 부처와 조달청이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제품 지정여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부처별 추진체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를 기능별로 보면 크게 제도운영 총괄 기능, 혁신제품 추천·지정, 혁신제품 구매·확산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운영과 관련된 총괄 기능(컨트롤 타워 역할)은 재정경제부가 수행한다. 재정경제부는 혁신제품 조달 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

혁신제품 추천·지정은 조달청, 과기정통부 등 17개 부처 및 재정경제부가 담당

82) 2025년말 기준,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을 제외하고, 혁신제품 [유형 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방부, 우주항공청이다.

한다. [유형 1]은 과기정통부 등 참여 부처가 소관 R&D 결과물 및 자체기술인증 관련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형 2]는 조달청이 직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각 부처 및 조달청이 추천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혁신제품의 구매 및 확산 기능은 조달청이 중심으로 수행하되, 각 부처가 참여한다. 조달청은 시범구매, 혁신장터(플랫폼) 운영, 구매목표제 시행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확산을 지원한다. 17개 부처는 조달청 주관의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여 혁신제품을 사용한 후 사용결과를 보고하며, 각 부처 자체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제품 조달 관련 부처별 주요기능]

| 구분 | 담당기관 | 주요기능 |
|------------|----------------------|---|
| 제도운영 총괄 | 재정경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조달 제도 전반을 총괄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제도 개선 등 |
| 혁신제품 추천·지정 | 과기정통부 등 17개 부처(유형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R&D 결과물 및 자체기술인증 관련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을 추천 |
| | 조달청(유형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을 직접 추천 |
| | 재정경제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 및 조달청이 추천한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혁신제품 구매·확산 | 조달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구매 지원, 혁신장터 운영, 구매목표제 시행 등을 통해 혁신제품 확산 도모 |
| | 17개 부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제품 시범사용 및 결과보고 • 각 부처 자체예산으로 구매하여 혁신제품 확산 도모 |

자료: 조달청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추진주체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

(1) 기관별 혁신제품 지침 일관성 제고 필요

[유형 1]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 기관에서 기존 상용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중복 지정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별 혁신제품 지침 등에 혁신제품 지정제의 요건이 부재하기 때문인바, 각 참여기관은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부처별 지침 정비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과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이 기성 제품의 성능 개량에만 치중하여 혁신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조달 관행을 벗어나 초기 기술기업의 판로를 지원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에 상용화되어 존재하는 제품이나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여 매출 실적이 있는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⁸³⁾

그런데 다수 혁신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성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 혁신제품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시점이 혁신제품 지정시점 보다 앞선 제품을 선별한 것이다. 이 표에 있는 혁신제품들은 혁신제품이 지정되기 전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적이 있고, 우수제품 지정기간과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상당기간 중복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모 혁신제품의 경우 2017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후 2021년말까지 267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기존 상용제품인데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 규정에 제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2025년 5월까지 270억원에 상당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납품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⁸⁴⁾

83) 혁신제품에 대하여 최소 3년간 수의계약 등 조달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혁신제품은 기성 제품이 아닌 새로운 제품이 지정되어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당위성이 있다.

84)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 2026.3., 42쪽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현황]

(단위: 억원)

| 지정기관 | 혁신제품명 | 우수제품 지정기간 | 혁신제품 지정기간 |
|-------------|-------|-------------------------|-------------------------|
| 중소벤처 기업부 | A | 2017.04.03.~2023.04.02. | 2021.06.01.~2025.05.31. |
| | B | 2015.09.21.~2021.09.20. | 2021.06.01.~2025.05.31. |
| | C | 2016.06.30.~2022.06.29. | 2022.12.26.~2025.12.25. |
| | D | 2020.07.31.~2026.07.30. | 2024.07.18.~2027.07.17. |
| | E | 2017.09.29.~2023.09.28. | 2021.12.24.~2024.12.23. |
| | F | 2018.04.02.~2023.04.01. | 2020.10.29.~2024.10.28. |
| | G | 2018.04.02.~2023.04.01. | 2021.12.24.~2024.12.23. |
| | H | 2018.06.28.~2024.06.27. | 2021.06.01.~2025.05.31. |
| | I | 2019.06.13.~2025.06.12. | 2020.10.29.~2024.10.28. |
| | J | 2019.06.13.~2025.06.12. | 2021.06.01.~2025.05.31. |
| | K | 2019.08.19.~2025.08.18. | 2020.10.29.~2024.10.28. |
| | L | 2020.04.01.~2026.03.31. | 2021.06.01.~2025.05.31. |
| 기후에너지환경부 | M | 2019.12.30.~2025.12.29. | 2020.10.29.~2024.10.28. |
| | N | 2018.10.04.~2024.10.03. | 2022.06.29.~2025.06.28. |
| 산업통상부 | O | 2020.07.31.~2026.07.30. | 2021.12.24.~2024.12.23. |
| | P | 2016.06.30.~2020.06.29. | 2021.06.01.~2024.05.31. |
| 조달청 | Q | 2018.06.28.~2024.06.27. | 2022.09.27.~2025.09.26. |
| | R | 2019.03.22.~2025.03.21. | 2020.10.29.~2024.10.28. |
| | S | 2019.03.22.~2025.03.21. | 2020.10.29.~2024.10.28. |
| | T | 2019.08.19.~2025.08.18. | 2020.10.29.~2024.10.28. |
| | U | 2019.08.19.~2025.08.18. | 2020.10.29.~2024.10.28. |
| | V | 2022.05.02.~2028.05.01. | 2022.09.27.~2025.09.26. |
| | W | 2025.04.28.~2028.04.27. | 2025.06.27.~2028.06.26. |

- 주: 1) 우수제품 지정일로부터 혁신제품 지정일까지 우수제품 나라장터 조달액
 2) 혁신제품 지정일로부터 2025년말까지 혁신제품 나라장터 조달액
 1.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과거 부처명은 2026년 5월말 기준으로 변경함
 2. 혁신제품명은 비식별처리함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새로운 혁신제품이 아닌 기존 상용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은 각 기관의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기존 상용품이나 상당한 매출액이 있는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유형 1] 사업을 주관하는 17개 부처의 경우, 일부 부처를 제외한 다수의 부처가 혁신제품 지정 시 우수제품 또는 매출액이 상당한 제품을 제외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수제품 지정제외 요건의 경우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 부처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출액 발생제한 요건의 경우에도 국토부, 농림부, 지재처를 제외한 참여부처는 관련 지침 또는 공고문 등에 해당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유형 2] 혁신제품 사업을 주관하는 조달청의 경우 자체 규정⁸⁵⁾에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과 관련해서도 혁신제품 지정 공고문 등에 원칙적으로 상업적 거래가 없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제품에 대해서만 혁신제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신청제품의 매출액이 제품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는 최초 매출 발생일이 최초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85)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기관별 혁신제품 지정 시 지정 제외기준 현황]

| 구분 | 유형 1 제품 (17개 기관) | | 유형 2 제품 (조달청) |
|-----------------|-------------------------------|--|---|
| | 적용 | 미적용 | 적용 |
| 우수제품 지정제외 요건 |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지재처, 기후부 | 행안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해경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방부, 우주청 |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세 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 매출액 발생제한 요건 | 국토부, 농림부, 지재처 |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기후부, 산림청, 해경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방부, 우주청 | 상업적 거래가 있는 경우 혁신제품 신청 제외. 다만, 신청제품의 매출액 이 제품단가의 10배 이내인 경우 또 는 최초 매출 발생일이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 가능(혁신제품 지정공 고문에 포함) |

주: 1. 기관명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변경함

2. 우주항공청은 2026년 5월 현재 혁신제품 관련 지침을 제정하지 않았음

자료: 감사원, 「조달청 정기감사 보고서」(2026.3.) 및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참여기관의 경우 각 기관이 관리하는 「혁신제품 지정지침」이나 혁신제품 지정 공고문 등에 우수제품 또는 매출액이 상당한 기존 상용품을 제외한다는 요건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재지정하는 사례가 재발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각 참여기관은 자체 지침 및 공고문을 정비하여 우수제품 또는 매출액이 상당한 기성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토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각 부처별 혁신제품 지정 지침과 공고문 등에 이러한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나. AI 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강화 필요

2026년부터 10개 부처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시제품 중 공공성 및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 각 분야의 AI 전환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⁸⁶⁾으로 AI 육성을 위해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시장을 활용해 초기 투자 위험을 일정부분 국가가 부담하여 적극적인 AI 제품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조달청은 2026년 1월 AI 분야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시장에 적극 도입하기 위해 'AI 제품 특화 트랙'을 신설하였다. 일반 제품과 AI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 시 그 기준을 살펴보면, 공공성 평가 부문에서 AI 제품은 일반 제품에 있는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기준이 삭제되었고, 안전성 대신 신뢰성을 평가한다. 혁신성 평가 부문에서는 AI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혁신적합성 및 시장성의 배점이 낮아지고, 시범사용 수행역량 대신 인공지능(AI) 모델의 적합성이 신설되었으며 그 배점도 상향되었다.

[일반제품과 AI 제품의 평가기준 비교]

| 구분 | 일반 제품 평가기준 | 인공지능(AI) 제품 평가기준 |
|-----------|----------------------|----------------------|
| 공공성 평가 | 분야적합성 | 분야적합성 |
|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 | 공공구매의 필요성 | 공공구매의 필요성 |
| |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
| | TRL | TRL |
| | 안전성 | 신뢰성 |
| | 규제 | 규제 |

86) OECD는 생성형 AI 도입 시 총요소생산성(TFP)이 연간 0.07~1.3%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2025. 11.).

| 구분 | 일반 제품 평가기준 | | 인공지능(AI) 제품 평가기준 | |
|-----------|-----------------------|----------------------|------------------------------|---|
| 혁신성 평가 | 혁신적합성 (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 혁신적합성 (4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
| | | 제품의 탁월성(20점) | | 제품의 탁월성(20점) |
|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 |
| | 시장성 (30점) | 시장규모(15점) | 시장성 (20점) | 시장규모(10점) |
| | | 파급성(15점) | | 파급성(10점) |
| | 시범사용 수행역량 (20점) | 수행역량(20점) | 인공지능(AI) 모델의 적합성 (40점) |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15점) 성능 우수성(15점)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10점) |

자료: 조달청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산업·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추진 중이다.

2026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의 과제수는 10개 부처⁸⁷⁾에 총 246개로, 신속출시 트랙인 [유형 1]이 145개, 개발고도화 트랙인 [유형 2]에 101개이다.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개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산업·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10개 부처, 246개)의 개발·상용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1: Agile(신속출시) 트랙: 1년 후 출시 목표 과제(145개) - 유형 2: Build-up(개발고도화) 트랙: 2년 내 개발 목표 과제(101개) ○ (예산) 246개 과제에 대해 '26~'27년 총 7,540억원 지원(출연·보조 6,140억원, 전용 용자 1,4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 제품 개발·출시 비용을 위한 4,735억원(출연·보조) 및 중기부(중진공) 전용 용자 1,400억원 등 총 6,135억원 지원 - 2027년 : Build-up 트랙 101개 과제 2년차 예산 1,405억원 지원 예정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술기업-도입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AI 생태계 조성 - 마중물 투자로 AX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세계 시장 선점 - 일상과 산업현장에 AI 응용제품을 확산하여 체감가능한 AX 붐 조성 |
|--|

자료: 관계부처 합동,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 2026. 3.

87)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부처는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기후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등 10개이며, 기획예산처가 사업전반을 총괄한다.

정부는 동 사업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7,5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부처별 예산을 보면 2026년의 경우 산업부가 50개 과제에 1,300억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기부 36개 과제 645억원, 국토부 25개 과제 600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관계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AX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 부처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

(단위: 억원, 개)

| 부처명 | 예산액 | 과제 수 | 부처명 | 예산액 | 과제 수 |
|-------|-------|------|------|-----|------|
| 산업부 | 1,300 | 50 | 농식품부 | 400 | 25 |
| 중기부 | 645 | 36 | 해수부 | 250 | 20 |
| 과기정통부 | 405 | 17 | 기후부 | 305 | 17 |
| 복지부 | 330 | 26 | 국방부 | 350 | 20 |
| 식약처 | 150 | 10 | 국토부 | 600 | 25 |

자료: 관계부처 합동,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 2026. 3.

AX-Sprint 사업과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정책적 지향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양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부담하고 적극적인 AI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인식이 양 사업의 공통된 출발점이다.

AX-Sprint 사업이 단기간(1~2년) 내 상용화 가능한 AI 응용제품의 개발·출시를 목표로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통해 초기 상용화 위험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시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양자는 「개발·상용화 지원 → 공공 판로 개척 →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 필요성을 반영하여 조달청은 AX-Sprint 선정 제품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신설된 AI 전용 트랙을 적용하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고, 공공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차년도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 부문 레퍼런스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X-Sprint 사업부처와 조달청 간 평가기준 협의를 거쳐 AX-Sprint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성·사업성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인정하여 혁신제품 지정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⁸⁸⁾

양 사업 간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AX-Sprint 사업에 2년간 7,540억원이 투입되어 AI 응용 제품이 다수 개발될 예정인데, 이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신속히 지정함으로써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 직후 안정적인 공공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조달청 입장에서는 AX-Sprint 단계에서 이미 부처별 전문 평가를 거친 제품이 후보군으로 유입되므로 혁신제품 지정 단계의 기술적 검증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고, 후보 제품군의 질적 수준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상용화 지원 단계와 공공구매 단계가 단절 없이 연결됨으로써 혁신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양 사업 모두에서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 간 연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AX-Sprint 선정 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평가 간소화 방안은 자칫 혁신제품 지정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AX-Sprint 단계의 평가는 상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혁신제품 지정 단계의 평가는 공공성 및 혁신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 사업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혁신제품의 지정 취지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간소화의 범위와 깊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AX-Sprint 사업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27년까지 다수의 시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달청의 AI 전용 트랙 운영체계 및 시범구매 예산 규모도 이에 맞추어 사전에 정비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로 연결되지 않으면 연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범구매가 후속구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을 경우 혁신제품으로 지정 되었으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제품군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AX-Sprint를 통해 발굴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범구매 실시 여부, 후속구매 전환 실적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성과 관리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88) 관계부처 합동,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 2026. 3.

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내실화 필요

(1)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적정 수준의 조직·인력 확보 필요

한국조달연구원은 법정 전문기관으로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 구매, 교육·홍보, 사후관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혁신제품 지정 규모의 확대, AX-Sprint 사업과의 연계 본격화,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으로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달청은 동 연구원이 증가하는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조직·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혁신조달 지원센터는 혁신조달을 통한 공공의 문제해결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기술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설립된 전문기관이다.

혁신조달 지원센터는 사실상 2021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조달청이 조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혁신조달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였다.⁸⁹⁾ 2024년 1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서 2025년에 법정기관으로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출범하였다.

혁신조달 지원센터 운영비는 조달청의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내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 혁신제품 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9억원이 최초로 편성되었고, 해마다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2025년 예산은 28억 6,5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원 수요가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사후적으로 그 지원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였다.

89) 조달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 용역사업(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용역)으로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재)한국조달연구원의 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조달연구원이 줄곧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년 ¹⁾ | 2022년 ²⁾ | 2023 | 2024 | 2025년 |
|--------------------|---------------------|---------------------|-------|-------|-------|
|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 900 | 1,480 | 2,160 | 2,265 | 2,865 |
| 스카우터 및 인큐베이팅 | - | 300 | 401 | 401 | 401 |
|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 - | 380 | 380 | 380 | 380 |
| 규격검토 | 300 | 300 | 500 | 500 | 500 |
| 원가검토 | 100 | - | 30 | 85 | 285 |
| 혁신제품평가 및 교육위탁 | 500 | 500 | 699 | 699 | 699 |
| 사업성과 측정·분석 | - | - | 100 | 100 | 100 |
| 정책연구 | - | - | 50 | 50 | 50 |
| 혁신제품 지정실태조사 | - | - | - | 50 | 50 |
| 혁신제품 해외실증 운영지원 | - | - | - | - | 200 |
| 혁신적 조달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 - | - | - | - | 200 |

주: 1) 2021년도 예산 편성시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항목은 없었으나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위탁' 과업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함

2) 2022년도 예산편성시 스카우터·인큐베이팅,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과업만이 편성되었으나, 규격검토,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위탁 등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함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2024.7.3. 시행)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한 결과 한국조달연구원이 단일 응모하였고,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동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전담조직을 갖추어야 하며⁹⁰⁾, 자

9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산 2억원 이상, 전담인력 중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전문인력 10명 이상, 최근 3년간 공공조달 분야 연구·위탁 용역 합산 실적 10억원 이상이라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⁹¹⁾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이 이러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기관(명칭: 혁신제품 지원센터)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조달연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조직구조를 보면 혁신기업지원부, 혁신판로지원부, 성과확산지원부에서 혁신제품 조달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조직도]



자료: 혁신제품지원센터

이와 같이 한국조달연구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여건은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에 해당하며, 동 지원센터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향후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동 센터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여 동 센터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행 조직 및 전문인력 등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개정 법률⁹²⁾에 따르면,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

91)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조달청고시 제2024-14호) 제3조

여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 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혁신 제품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을 2025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발굴·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 교육·홍보, 제도연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내용(2025년 기준)]

| 구분 | | 주요 업무 |
|-------|----------------------|--|
| 발굴·지정 | 스카우터 및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 (스카우터) 전문조직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 활성화 (인큐베이팅) 수요 인큐베이팅 전문조직 시범운영 및 지원 |
| | 혁신제품 규격 검토 | (규격검토) 혁신제품 규격서 규격관리 및 법정외무인증 검토 |
| | 혁신장터 등록 지원 | (혁신몰등록) 혁신제품의 혁신장터 등록지원 및 기타 민원대응 |
| | 혁신제품 지정·구매 지원 | (지정업무 지원) 혁신시제품 지정·추가·연장을 위한 제반 사항 지원 (시범구매) 시범구매 및 임차 기본계획서/수행계획서 검토 |
| 계약·구매 | 혁신제품 원가 적정성 검토 | (원가검토) 혁신제품 단기계약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 |
| | 혁신제품기업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사업 | (코디네이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ODA 지원 |

9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 ②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5.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그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분 | | 주요 업무 |
|-------|--------------------------|--|
| | 혁신제품 해외실증 운영 지원 | (해외실증)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기업선정 및 계약, 실증 관리 |
| 사후 관리 | 혁신제품 실태조사 | (실태조사) 안전한 혁신제품 공급을 위한 혁신제품 사후점검 지원 |
| | 혁신제품 및 시범구매 사업성과 측정 및 분석 | (성과측정) 혁신조달 성과 분석 및 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구매실적검토 및 기관평가 지원) 구매실적검토 및 실적평가 지원 |
| 교육·홍보 | 혁신적 조달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 (원스톱) 정부지원사업 안내, 홍보 및 혁신기업별 매칭 지원 |
| |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 | (교육·홍보)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교육, 홍보활동 (초,중,고 아이디어 공모전) 행사운영 및 홍보 등 제반 업무 지원 |
| 제도 연구 | 혁신조달 정책연구 | (정책제안) 혁신조달 중·장기 관점 정책 발전 방향 연구·결과 도출 |

자료: 혁신제품지원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지원센터의 역할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혁신제품 발굴·지정 단계에서는 스카우터를 통해 조달시장 밖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수요 인큐베이팅을 통해 기관 및 국민 혁신수요를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혁신제품 규격서 및 법정무인증을 검토하고, 혁신제품 지정·추가·연장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초·중·고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구매 단계에서는 시범구매 기본계획서와 수행계획서를 검토하며, 혁신제품 단가계약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와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 동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실태조사, 혁신제품 및 시범구매 사업성과 측정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정부지원사업 안내,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행사도 주관한다. 또한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관점의 정책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혁신제품 조달 사업 전반에 걸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동 지원센터의 업무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행 조직과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는 혁신제품 지정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혁신제

품 수 누적 5,000개를 확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을 2028년까지 2조원을 조기 달성하여 2030년까지 최대 3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지원센터의 업무량 또한 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혁신제품 조달사업과 2026년부터 추진 중인 AX-Sprint 사업과의 연계가 본격화될 경우 10개 부처에서 발굴되는 AI 응용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지원, 시범구매 연계 등 추가 업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19년에 시작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성과지표의 개선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수요도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동 센터에 향후 혁신장터에 등록된 다수 제품의 등록가격 적정성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업무가 부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업무 수요는 지원센터의 현행 조직·인력 규모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규 업무 수요에 대비한 조직 진단과 인력 보강 계획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조달연구원은 2021년 이후 위탁용역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과업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용역과업 범위에 추가하여 왔다.

그러나 동 연구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법정기관화되었고, 향후 동 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인력 등을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기적 관점에서 지원센터의 인력 구성과 조직 구조가 적정한 수준인지 사전에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결과 필요할 경우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법정 전문기관으로서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혁신제품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필요

한국조달연구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단독수행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법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최소 3년간 독점적 업무수행 권한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조달연구원은 2024년까지 조달청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혁신제품 지원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25년부터 법정기관으로 지정되어 3년간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 연구원이 법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제품 조달 지원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사실상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동 연구원은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한국조달연구원이 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법령에 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탁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물론 공공조달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경쟁이 부재한데다가 법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최소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이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까지 일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시기에 지원센터의 운영성과는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의 달성 여부 및 정량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부터 법정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조달청 고시⁹³⁾에서도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실적의 제

93)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과거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해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달연구원은 2025년부터 3년간 전문기관으로 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기관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년 후 업무 재위탁시에도 조달사업법령에 정하는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 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면, 한국조달연구원은 2025년부터 법정기관으로 전환된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독점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기관의 지위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적 측면(예를 들어, 수요기관·조달기업의 만족도 등)이나 결과지표(시범구매의 후속구매 전환율, 해외진출 성과 등)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입체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수행에 환류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재위탁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등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사업추진일정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가. 정부 성과관리 개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법제화되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이하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⁹⁴⁾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다음연도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함께 제출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다음연도 성과계획서를, 결산을 제출할 때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각 부처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는 '임무 - 비전 - 전략목표 - 프로그램 목표'로 이어지는 하향식 목표 체계를 가지며, 현재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체계에서 프로그램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핵심 분석도구가 '프로그램 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이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각 프로그램에 투입된 자원(예산, 인력 등)이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내 사업 시행)을 거쳐 어떻게 의도된 결과(단기·중기·장기 정책목표 실현)로 전환되었는지를 논리적·인과적 흐름에 따라 시각화한 도식이다.

정부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는 이유는 성과관리의 단위가 되는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환경과 외부 요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궁극적인 파급효과까지의 전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동 모형은 외부환경을 파악하고 정책수단과 정책목표와의 인과적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사전적·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도구라고 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게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통해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라 프로그램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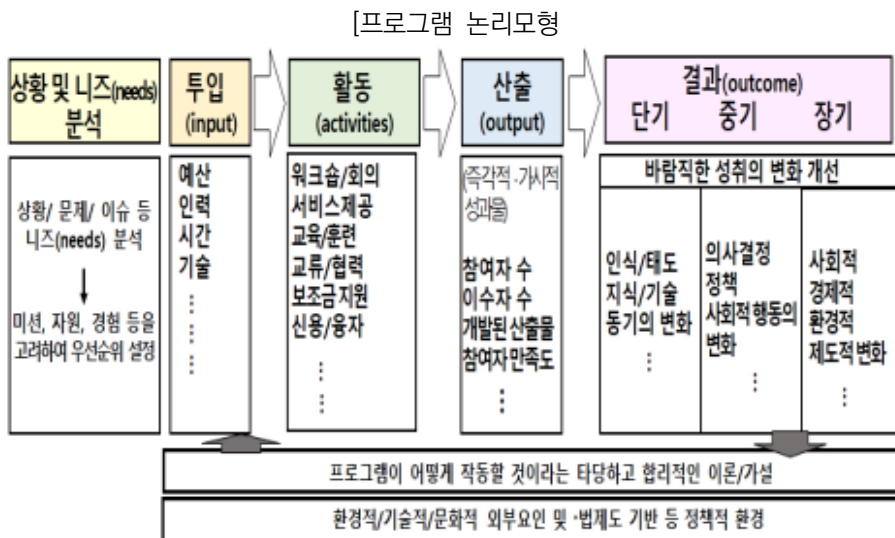
94)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일반적인 구조를 상황 및 니즈 분석, 투입, 활동, 산출, 결과의 5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는 순차적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첫 번째 단계인 상황 및 니즈(needs) 분석 단계에서는 상황, 문제, 이슈 등에 대한 니즈를 분석하고, 미션·자원·경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입(input) 단계에서는 예산, 인력, 시간, 기술 등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설정하며, 활동(activities) 단계에서는 워크숍·회의, 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교류·협력, 보조금 지원, 신용·융자 등 구체적 사업 수행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출(output) 단계에서는 활동의 즉각적·가시적 성과물로서 참여자 수, 이수자 수, 개발된 산출물, 참여자 만족도 등을 측정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결과(outcome) 단계는 단기·중기·장기의 3개 시간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단기 결과는 인식·태도, 지식·기술 등의 변화를, 중기 결과는 의사결정, 정책,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장기 결과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바람직한 성취의 변화·개선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 모형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라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론·가설을 제시할 것과, 환경적·기술적·문화적 외부요인 및 법·제도 기반 등 정책적 환경 조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2024. 9.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별 논리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연계성, 대표성, 결과지향성, 구체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다.

[프로그램 목표 설정 원칙]

| 구분 | 주요내용 |
|-------|---|
| 연계성 | 프로그램 목표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략목표와 상호 논리적으로 연계되도록 설정 |
| 대표성 | 단위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 |
| 결과지향성 |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effect) 및 결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 - 성과물이 단기중기장기에 따라 구분되거나, 프로그램의 결과(outcome)가 단기에 도출되기 어려운 경우, 단기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가능 |
| 구체성 | 목표 달성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measure)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성과지표를 통해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예산사업 추진과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과지표는 프로그램의 단순 투입 및 활동을 나타내는 투입지표(input) 또는 과정지표(activities)보다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궁극적 성과에 대한 결과지표(outcome, effect)로 설정하여야 한다.

[성과지표의 성격별 유형]

| 구분 | 개념 | 특성 |
|----------------------|---|--------------------------------|
| 투입지표 (input) |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 |
| 과정지표 (activities) |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 사업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 데 도움 |

| 구분 | 개념 | 특성 |
|---------------------------|---|--|
| 산출지표 (output) |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수 |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 |
| 결과지표 (outcome, effect) |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예시)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률 |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 |

자료: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총괄편)」를 바탕으로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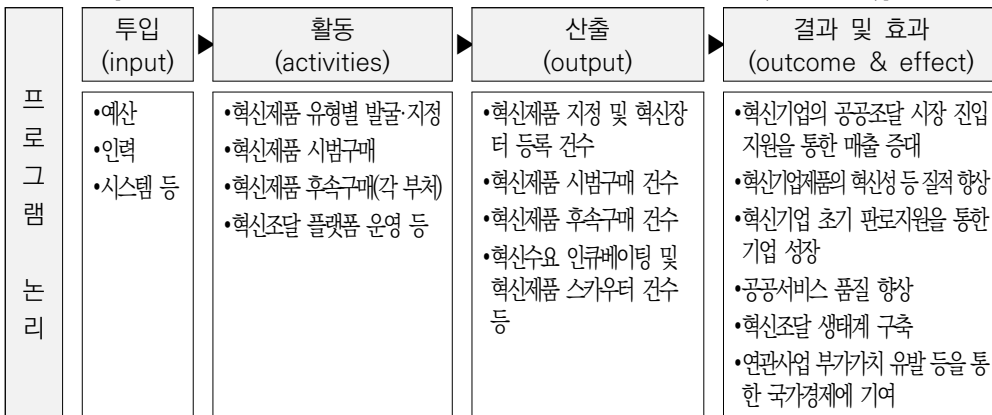
나.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 분석

① 프로그램 논리모형상 정책목표 달성 노력 필요

첫째,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은 투입(예산, 인력 등) → 활동(혁신제품 발굴·지정,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 등) → 산출(혁신제품 지정실적, 시범구매 및 후속구매 실적) → 결과 및 효과(혁신기업 성장 및 매출증대,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증대, 국가경제 기여 등)를 포함한다.

조달청은 2025년도 부처요구 예산안과 함께 「2025년도 조달청 성과계획서」를 재정당국에 제출하였고, 동 계획서는 같은 해 9월에 2025년도 예산안의 부대서류로 국회에 함께 제출되었다. 조달청은 동 계획서에서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논리모형에서 혁신제품 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재작성한 논리모형은 다음과 같다.

[조달사업운영 프로그램 중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논리모형(당초 계획)]





| | |
|----------------|--|
| 프로 그램 목표 | <p>[단기적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지원 및 공공부문 판로 확보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혁신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지원 <p>[중장기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강소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공공조달 역할 강화 |
|----------------|--|

주: 이 모형은 조달청이 작성한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에서 '혁신제품 조달'에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한 것임
 자료: 조달청 「2025년도 성과계획서」(2024. 9.)를 바탕으로 재작성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투입 단계에서는 예산, 인력, 시스템 등을 주요 자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활동 단계에서는 혁신제품 유형별 발굴·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혁신제품 후속구매(각 부처), 혁신조달 플랫폼 운영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투입 및 활동 과정을 거쳐 산출 단계에서는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건수, 혁신제품 시범구매 건수, 혁신제품 후속구매 건수,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및 혁신제품 스카우터 건수 등을 산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의 궁극적 성과인 결과 및 효과 단계에서는 혁신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혁신기업 제품의 혁신성 등 질적 향상,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혁신조달 생태계 구축, 연관사업 부가가치 유발 등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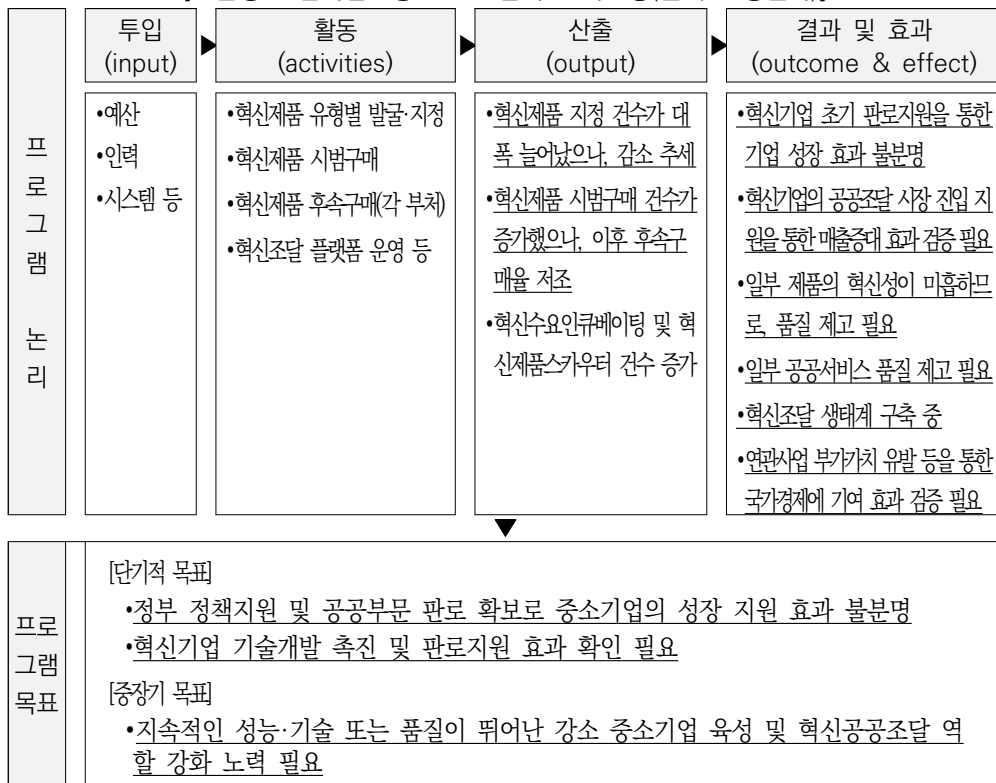
특히, 동 모형은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지원 및 공공부문 판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과 “혁신기업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지원”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강소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공공조달 역할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제품 조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는 단순한 구매실적(산출지표)이 아니라 공공수요를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지 여부(결과지표)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운영결과를 논리모형에 대입한 결과, 투입·활동은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나 산출 단계에서 혁신제품 지정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시범구매에 이은 후속구매 실적이 충분하지 못하여 향후 결과·효과 단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운영결과를 앞서 논의한 쟁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적용해 보면, 동 사업의 실제 운영결과는 당초 계획하였던 성과 계획서상의 논리모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 운영한 결과를 논리모형에 대입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모형은 당초 성과계획서에서 수립했던 논리모형과는 괴리가 있다. 투입 및 활동 단계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산출 단계부터 성과 미달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및 효과 단계에서는 정책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 단계에 해당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조달청 조달사업운영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실제 운영결과)]



주: 1. 밑줄 친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성과가 미흡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구체적으로, 산출 단계의 경우 일부 지표는 성과를 일정부분 달성하였으나, 당초계획보다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등 당초 논리모형과는 상이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2019년 66건에서 2025년 494건, 7년간 누계 2,774건으로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품 수의 경우에도 2019년 28개에서 2025년 302개, 7년간 누계 1,209개로 증가하였으나, 2019~2024년 기준 시범구매 제품 수 907개 중 후속구매로 이어진 제품 수는 629개로 후속구매 전환율은 69.3%에 그쳤다.

결과 및 효과 단계에서도 당초 기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효과는 구체적인 검증이 부재하여 그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고,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 역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 혁신성이 미흡하여 품질 제고가 필요하고, 일부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 효과인 혁신조달 생태계는 아직 구축 중으로 볼 수 있으며, 연관사업 부가가치 유발 등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 효과 역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목표의 달성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단기적 목표인 정부 정책지원 및 공공부문 판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효과는 불분명하며,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판로지원 효과 역시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중장기 목표인 강소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공공조달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합하면, 실제 운영결과를 논리모형에 대입한 결과 투입과 활동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나, 산출 단계에서 혁신제품 지정 감소 추세, 후속구매 전환율 저조라는 병목이 발생하면서 혁신제품의 확산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 공공조달 서비스의 품질 제고라는 결과 및 효과 단계로의 인과적 연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동 모형에서 설정했던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혁신기업의 성장, 제품의 혁신성 등 품질 제고, 국가경제에 기여 등과 같은 당초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결과 및 효과 단계에 해당되는 정책목표들은 산출 단계의 목표들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단계의 목표로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올해 혁신제품 조달 사

업이 8년차에 접어들어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결과 및 효과 단계에서 지향하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조달청은 성과계획서상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지표로 ‘혁신제품 매출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 지표는 혁신제품 지정건수 및 구매 예산 등의 증가에 비례하므로 순수한 정책의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사업의 추진 결과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달청의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성과지표는 ‘혁신제품 매출액’이다. 혁신제품 매출액은 혁신장터 등 조달청 통계자료와 수기 실적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동 매출액은 일정기간(1년) 동안 혁신제품 지정 효력을 보유한 제품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을 측정하여 산출하며, 목표치는 전년도 혁신제품 구매실적 또는 구매목표액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연도별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 확대에 따라 목표치를 매년 상향조정하였고, 매출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및 2023년의 목표달성도가 1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조달청은 2024년부터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였는데, 2024년 및 2025년에도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 성과지표 달성도]

| 성과지표 | 구분 | '22 | '23 | '24 | '25 | '26 | 2025목표치 산출근거 |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혁신제품 매출액 (억원) | 목표 | 2,452 | 4,285 | 7,394 | 10,000 | 12,000 | '24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 조달청 통계 시스템 및 수기 실적 |
| | 실적 | 4,157 | 7,394 | 9,755 | 10,447 | - | | |
| | 달성도 | 169.5 | 172.6 | 131.9 | 104.5 | - | | |

자료: 조달청

동 사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에서 산출목표가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건수’, ‘혁신제품 시범구매 건수’이고, 결과지표로는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혁신기업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도모’ 등이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을 고려할 때 현행 성과지표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을 설정하는 것은 일견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매출액’은 각 기관별 혁신제품 구매예산과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늘어나면 이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순수하게 동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9년부터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말 기준 누계 2,774개에 이르고 있는데, 혁신제품 지정 건수가 확대되면 구매대상 제품군이 확장되고, 이에 따라 구매액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혁신제품 매출액이 함께 증가한다. 또한 각 수요기관에서 혁신제품 구매 예산이 늘어나면 매출액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더불어 일부 소수 제품의 반복 구매나 고가 제품 구매가 확대될 경우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혁신제품의 공공성·혁신성이 공공부문 전체에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성과지표는 조달청의 효과적인 사업운영에 따른 성과도 일부 있겠으나, 혁신제품 지정 건수 및 예산 투입 규모 확대가 매출 실적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9~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합계 |
|----------------------------|-----------|-------|-------|-------|--------|--------|--------|
|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 ¹⁾ | 345 | 623 | 606 | 284 | 422 | 494 | 2,774 |
| 공공구매액 | 4,716 | 6,223 | 8,327 | 9,229 | 10,220 | 10,976 | 49,691 |

주: 1) 해당연도에 신규로 지정한 제품 수
자료: 조달청

이처럼 현행 혁신제품 매출액 지표는 혁신제품 지정 확대, 구매예산의 증가,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율 확대 등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동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목적은 구매 예

산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단순 집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초기 구매자가 되어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구매확산을 통한 시장확산, 나아가 기업의 성장 및 혁신성 향상 등 궁극적인 정책목표 실현으로 연결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조달청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프로그램 논리모형상 단순 산출지표(output)의 달성여부 보다는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포착할 수 있는 결과지표(outcome, effect)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범구매를 거친 혁신제품이 수요기관의 후속구매로 실제 전환되고 있는지, 혁신기업의 매출 성장 및 시장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과 같이 결과 단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개편될 필요가 있다.⁹⁵⁾

정리하면, 혁신제품 조달 사업은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들어 성숙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확대, 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사업 추진 등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수혜자인 기업, 수요기관, 국민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사업초기에는 혁신제품 지정 제품 수 확대, 구매예산 확충 등 양적인 투입변수가 중요하여 산출지표상 성과가 의미가 있겠으나, 사업이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정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들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정책에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혁신제품 지정 건수를 누적 5,000개까지 달성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액을 2조원 이상(2조원 + α)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혁신제품 조달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그동안 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95) 예컨대, 혁신제품 지정 후 공공구매실적이 발생한 제품 비율, 시범구매 이후 후속계약 체결률, 시범구매 예산 1억원당 후속계약 매출액,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수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니라 수요 발굴, 제품-기관 매칭, 시범사용 관리, 사후 성과분석, 본구매 유도 등 조달청의 성과관리 노력이 수반되어야 달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과체계 강화에 적합한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 공공부문 진출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후속구매를 거쳐 공공 및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데 있다. 본 보고서는 동 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각 추진단계별(추천·지정, 구매·사용, 상용화·확산, 사후관리·환류 단계) 성과, 범부처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혁신제품의 안정적·지속적 발굴과 함께 적기 지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정 단계의 사업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17개 부처가 주관하는 [유형 1] 제품의 지정 건수의 합계가 전체 혁신제품 수의 65.4%에 그치고 있고, 부처별·유형별 편차가 존재하며, 지정기간이 만료된 제품을 대체할 만큼 신규 지정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 참여 부처는 신규 지정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고 기 지정 제품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효한 혁신제품 풀(pool)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위원 수 18명, 연 4~6회 수준에 그치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빈도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 혁신제품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시범구매에서 후속구매로의 전환율을 제고하고, 혁신제품 구매목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혁신제품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범구매 체결률은 39.1%, 후속구매 전환율은 69.3%에 그치며 공공구매 실적이 전무한 제품도 32.2%에 달하는바, 조달청과 각 부처는 이러한 구매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인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매목표제가 총액기준으로는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대상기관별로는 절반 정도가 미달성 상태이므로 기관별로 달성도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혁신제품의 공공성·혁신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투입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실증 결과 공공성 또는 혁신성이 미흡하여 공공구매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혁신제품 지정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사용 결과보고서의 기한 후 제출·미제출, 특허권소멸 및 휴·폐업에 따른 지정 취소 등 필요 조치 미이행, 공공부문 보급 후 제품 방치 사례, 혁신장터 등록가격에 대한 적정성 점검 부재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동 사업의 기업성장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향후 체계적인 추가연구를 통해 참여기업의 성장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형 1]에서 기존 우수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중복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바, 조달청과 각 부처는 지정 제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부처별 지침 정비 현황을 점검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부터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양 사업 간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법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조달연구원은 향후 업무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달청은 동 연구원의 업무수행 역량을 점검하여 조직·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매출액'은 산출지표(output)로서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조달청은 궁극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outcome)로 개선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발간일 2026년 7월 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 · 2672 · 1535~6)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264-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6-002310-01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